

풍요 (豊) 융화 (和) 품격 (格) 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名品도시

군산

희망동태 군산
Dream Hub
GUNSAN

2013 알기쉬운
사회복지서비스

기러잡미



군산시

2013년 알기 쉬운

사회복지길라잡이 책자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업무 중 시민이
보편성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공공부조 수급자가 많은 복지 서비스위주로 제작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기관·단체·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장

목 차

주민생활지원과 분야

-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 3
- 사회복지 통합업무 ----- 4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복지급여대상자 신청 및 구비서류 ----- 12
- 복지급여대상자 조사절차 ----- 14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15
- 노숙인(행여환자) 처리 절차 ----- 16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 17
- 긴급복지 지원사업 ----- 18
- 생계곤란불우가정 보호금 지원사업 ----- 20
-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읍·면·동 업무 ----- 21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사업 ----- 22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 ----- 24
- 사랑의 이동목욕 차량 ----- 25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26

복지지원과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43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안내 ----- 45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사업 ----- 47

■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48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49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50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완화	51
■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52
■ 산소치료 요양비 지원사업	53
■ 수급자 출산전 진료비지원	54
■ 자활사업	55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추천	58
■ 저소득층 자활기금융자사업	59
■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60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사업	61
■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62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63
■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지원	64
■ 장애인 자립자금	65
■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66
■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	67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68
■ 장애인 연금제도	69
■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71
■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72
■ 기초노령연금	73
■ 노인일자리 사업	74
■ 노인건강진단사업	74
■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75
■ 군산 시니어클럽 운영	76
■ 매장 · 화장 · 매장신고	77

여성 아동복지과 분야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81
■ 건강가정지원사업	83
■ 아이돌봄지원사업	84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85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86
■ 보육료지원사업	87
■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운영	88
■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89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사업	90
■ 입양아동 지원사업	91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92
■ 아동급식 지원사업	93
■ 지역아동센터운영	94
■ 드림스타트 센터	95
■ 영유아통합지원 센터(시소와그네)	96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97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98
■ 여성사회대학 운영	99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00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net)운영	101
■ 청소년동반 프로그램운영	102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03
■ 청소년수련관 운영	104
■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105
■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사업	106
■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107
■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08

기타 분야

■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111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112
■ 여행이용권(여행바우처) 사업	113
■ 취약계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115
■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116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117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118

보건소 분야

■ 방문건강관리 사업	123
■ 영양플러스 사업	124
■ 평생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관리 사업	125
■ 모바일 클리닉 운영	126
■ 아토피 예방사업	127
■ 치매치료비관리비 지원사업	128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129
■ 군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131
■ 군산시 알코올상담센터	132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33
■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34
■ 국가필수예방접종 완전무료화	135
■ 산모 건강관리 사업	136
■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137
■ 여성건강 및 아동보건관리	138

상담실 및 콜센터

- 복지인터넷 상담실 ----- 145
- 보건복지 콜센터(희망의 전화129) ----- 146

자원봉사 “나눔과 동행”

- 자원봉사 안내 ----- 149
- 자원봉사 활동안내 ----- 151
- 자원봉사 일감분류 ----- 153
- 자원봉사 수요처 현황 ----- 155

1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시책/ 보건복지지부 예산 주요사업

- 2013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 및 시책 ----- 165
-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주요 사업 내역 ----- 185

사회복지 기관 시설 전화번호 및 주소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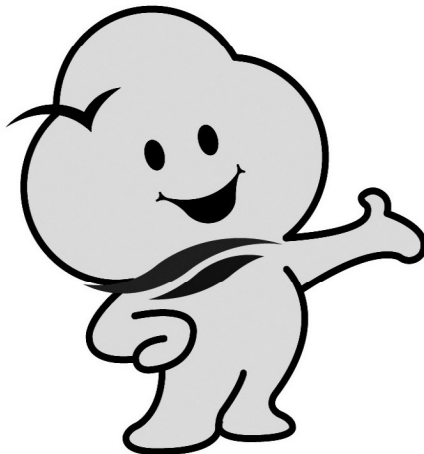
- 전화번호 및 주소록 ----- 205

2013 알기쉬운
사회복지서비스

길라잡이

사회복지 서비스

【 주민생활지원과 분야 】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구분	①통합조사 요청	② 읍·면·동 조사 후 사업팀 이송	③즉시 처리	④사례관리	⑤시·군·구 접수
대상 사업	- 기초생활보장(시설입소 포함) - 기초노령연금 -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 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 장애인연금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 바우처사업 · 노인돌봄 · 발달재활서비스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 아동인지능력향상 · 장애인활동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노인일자리사업 - 아동급식 - (일반수급자)시설 입소 신청 등	- 장애인등록 - 각종발급업무 · 증명서 · 장애인복지 카드 · 장애인차량 표지 ·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 각종 감면 등	- 중점보호대상자 사례 관리 ※ 읍면동 상담 후 · 단순사례관리 대상자인 경우 단순서비스 연계 · 복합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바로 연계 또는 ②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 후 서비스연계팀으로 분배	- 긴급복지지원 - 입양아동지원 - 청소년특별지원 등
신청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상담, 대상선정	시·군·구
↓	↓	↓	↓	↓	↓
조사	시·군·구 요청 통합조사관리팀	읍·면·동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보육료, 양육수당 별도 조사 없음	즉시처리	시·군·구 요청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관리팀 욕구사정 · 소득·재산조사 · 근로능력 판정(기초생활)	사업팀 자격확인
↓	↓	↓	↓	↓	↓
보장 결정	사업팀 결정, 통지	사업팀 결정, 통지	사업팀 결정, 통지	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계획	사업팀 결정, 통지
↓	↓	↓	↓	↓	↓
급여·서비스	사업팀 급여 지급	사업팀 서비스 제공	사업팀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 제공	사업팀 급여·서비스 제공
↓	↓	↓	↓	↓	↓
변동 관리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확인조사(기초생활)	읍·면·동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읍·면·동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 점검	통합조사관리팀 /사업팀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	↓	↓	↓	↓
보장 중지	사업팀 급여 중지	사업팀 서비스 중지	사업팀 서비스 중지	희망복지지원단 종결처리	사업팀 급여중지

* 청소년특별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요청의뢰 후 자격판단

** 긴급복지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지원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적정성판단을 위한 자산조사 요청

*** 장애인연금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장애등급 심사 실시 대상자를 조회하고 장애등급 심사는 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

문의사항

☀ 주민생활지원과 ☎ 454-3090,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통합업무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계

■ 사업목적

- 각종 복지대상자 적격여부 등 종합검토를 통해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 심층상담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욕구파악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 **신청** : 제공 가능한 급여·서비스를 확인하고 제출 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필요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해 일괄신청 접수
- **조사**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신고내용 확인 및 보장가구 구성 확정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보장결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선정기준 적합
여부 및 급여액·서비스 내용 결정
- **급여·서비스** :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반영 후 매월 15일 급여지급자료 생성
급여액을 확정하고 회계부서로 e-호조를 통해 지급의뢰 하여 지급
서비스대상자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해당서비스 실시
- **변동관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
재산 등 급여 또는 서비스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관리
- **보장중지** : 변동사항 적용결과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해서 급여 및 서비스 중지

신청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소득 : 근로·사업·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적용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50만원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75만원

문의사항

복지지원과 ☎ 454-3143,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 ,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기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13년 노인단독 830,000원, 노인부부 1,32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상시, 일용)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 가액 - 기본재산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재산의 소득환산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가액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백만원), 중소도시(6천8백만원), 농어촌(5천8백만원) 금융재산(가구당2천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5%
	기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이상 노인
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급여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13.1~13.3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20,000원 ~ 94,600원 노인 부부가구중 1인수급 : 소득인정액 따라 차등지원 20,000원 ~ 94,600원 노인부부가구 2인 수급 : 소득인정액 따라 차등지원 40,000원 ~ 151,400원 * '13.4월 변경되는 연금액은 추후 통보

문의사항

복지지원과 ☎ 454-3183, 읍·면·동 주민센터

● 영유아 보육(보육료, 양육수당)

구 분		내 용
지 원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번호가 있는 만0-5세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
신 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단,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급 여	종 류 및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수당 (만0-5세) : 100 ~ 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0-5세) : 100 ~ 200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만0-5세) : 100 ~ 200천원 영유아(만0~2세)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414천원 장애아 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394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 100천원 방과후 장애아보육료 : 197천원 다문화 보육료 : 소득·재산수준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 문의사항

● 여성아동복지과 ☎ 454-3224, 읍·면·동 주민센터

●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구 분		내 용
지 원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증장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경증(3~6급)장애인 장애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신 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증장애수당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장애아동수당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 정 기 준	소득 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부양의무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경증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기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 장애인
조 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급 여	종 류 및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증장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 및 차상위 : 월 30천원 - 보장시설입소 : 월 20천원 장애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중증 : 월 200천원 - 차상위 중증 : 월 150천원 - 보장시설입소 중증 : 월 70천원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수급경증 : 월 100천원 - 차상위 경증 : 월 100천원 - 보장시설입소 경증 : 월 20천원 </div>

문의사항

● 복지지원과 ☎ 454-3174, 읍·면·동 주민센터

장해인연금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정보동계공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13년 선정기준액 장애인단독 580,000원, 장애인부부 928,000원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4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백만원), 중소도시(6천8백만원), 농어촌(5천8백만원)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상관없이 연 5% 		
	기타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조사	조사내용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급여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따라 차등지급 20,000원 ~ 94,600원 장애인 부부중 1인 수급 : 소득인정액 따라 차등지급 20,000원 ~ 94,600원 장애인 부부중 2인 수급 : 소득인정액 따라 차등지급 40,000원 ~ 151,400원 * 부가급여(차등)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구 분	18~64세	65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재가)	8만원	17만원
		차상위 계층	7만원	7만원((14만원))
		차상위 초과자	2만원	4만원

문의사항

복지지원과 ☎ 454-3174, 읍·면·동 주민센터

● 긴급복지지원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신청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별도 없음. 단, 해산·장제·전기요금은 해당 신청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체 없이 처리
선정기준 (사후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소득 재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기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사유 등 생활실태
조사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등 위기사유 해당여부 등
급여	종류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지원 :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 (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단 위기사유 계속발생시 심의후 3개월 추가지원가능)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68.5%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지원(원칙1회지원, 위기사유 계속 발생시 심의 후 1회 추가지원가능)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사용 비용 지급(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단 위기 사유 계속 발생시 심의 후 추가로 9개월 지원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시설이용비용 지급 (1개월 단위로 3개월지급, 위기 계속 발생시 심의 후3개월 추가지원 가능)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1회 지원원칙, 위기사유 발생시 심의 후 1회 추가지원가능) 동절기연료비 : 1회 85,800원 (1개월 단위로 3개월 지원, 위기사유 발생시 심의 후3개월 추가 지원 가능) 장 제 비 : 1회 750,000원 해 산 비 : 1회 500,000원 전기요금 : 1회 500,000원

■ 문의사항

● 주민생활지원과 ☎ 454-3082,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 포함)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이하인 한부모가구
신 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선 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15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부양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조
	기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미혼모·부 가족 포함)
조 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
급 여	종류 및 지원액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양육비(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 아동 1인당 월 7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세이하 아동 양육하는 만25세 이상 미혼모·부자 가족, 조손가족은 월 50,000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000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에게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기초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24개월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활동을 하는 가구에 월1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정규고교과정을 이수시 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최저생계비 150%이하/기초수급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20만원 한도 내에서 매칭금 지원(기초수급자는 5만원 한도) *단, 2010년 가입자에 한해 지원

 문의사항

● 여성아동복지과 ☎ 454-3214,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급여대상자 신청 및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	신청서	구비서류 (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 보육(보육료지원, 양육수당) - 기초노령연금 - 아동·청소년복지 -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차상위계층지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한부모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 및 관련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정기준 참고 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첨부) - 차량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아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사실확인서 - 통장 사본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업별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입소신청서 - 해산·장제급여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서(시설입소시 해당자) - 출생 또는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 추가자료 제출서류

● 정보시스템에 확인되지 않는 자료

● 조회결과 실제 소득과 재산이 달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 정당한 이유없이 추가자료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 할 수 있음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소 득 확 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 파악
	- 월급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 퇴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소득 파악
	- 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어업소득 파악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 무료임대확인서	- 사적이전소득 파악
재 산 확 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 지출실태조사표	- 소득파악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부 채	-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신고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조사 지침에 따라 적용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계약서	- 임차보증금 파악
부 채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개인간 사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근로능력 판 정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 근로능력 판정
급여계좌 확인	- 통장사본	-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 문의사항

● 주민생활지원과 ☎ 454-3090,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급여대상자 조사(신청조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통합조사 관리계
↓		
공적자료 조 회 요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관리계
↓		
공적자료 조 회결과 반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명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자료 등록후 수정결과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신청 	통합조사 관리계
↓		
자료제출 요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자료제출 요구 -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관리계
↓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소득과약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 추정소득 부과여부 판단 ·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의뢰 	통합조사 관리계
↓		
조사결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사업부서 통보 	통합조사 관리계

문의사항

주민생활지원과 454-309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
-------------	------------------

■ 사업목적

- 시민들에게 애국애족정신을 함양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명예를 기리고자 함

■ 신청대상/ 신청장소

- 참전유공자로 군산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65세이상 거주자
 - ※ 제외대상 : 법률 제4조1항 4호(전상군경), 6호(공상군경), 7호(무공수훈자), 8호(보국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제외대상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복지기획계)

■ 제공되는 서비스

구 분	참전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시 기	매분기 다음달 20일	사망일 1년 이내 유가족 신청 지급
금 액	50,000원/월	150,000원(1회 지급)

■ 처리절차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454-3065

노숙인(행여환자) 처리 절차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

■ 사업목적

-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노숙인복지시설(신애원)에 입소보호

■ 처리기간 및 대상자

<부 랑 인>

- 노숙인(행려자) 처리기간 : 20일 이내
-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소시설에서 보호를 받기 희망하는 자
-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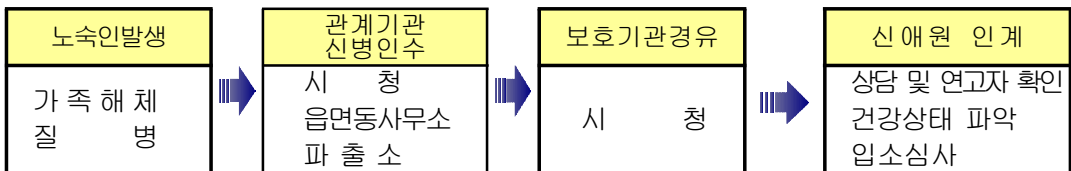
< 행려환자 >

- 병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 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

■ 구비서류

- 입소시설 보호요청서

■ 처리절차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454-306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 사업목적

- 재해·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인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족, 중병으로 입원치료 중인 자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선정기준 :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입원확인서, 진단서
(재난재해복구비) 화재증명원 혹은 관련사진

■ 지원내용

- 생계비 100만원 이내 - 국민기초수급자는 생계비 지원불가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의료기관 계좌 입금
※만성질환 진료비, 요양성질환, 성형목적의 진료비, 치과진료비, 상급병실, 제증명료 지원제외
- 화재복구비 300만원 이내
- 재난·재해복구비 개인 500만원이내/ 법인 2,000만원이내

■ 문의사항

- 주민생활지원과 ☎ 063-454-3081~3,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 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	--------------------

■ 사업목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도모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중한질병 및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전국가구별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이하 (단, 긴급생계비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 ▶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생활지원과,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 **제출서류** : 현장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의료비청구서(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소득신고서, 거래통장(3개월 정도) 등

■ 지원내용

- **지원종류** : 9종(생계/의료/주거/교육비/사회복지시설지원/기타4종)
- **생 계 비**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지원 가능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386,200	657,600	850,700	1,043,800	1,236,900	1,430,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93,200원씩 추가 지급

- **의 료 비**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300만원 범위내 지원
 - ▶ 지원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시부터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긴급의료비 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는 지원 제외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진료료 항목 지원 제외
 - ▶ 퇴원시에는 지원 불가(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 및 지원결정)
 - ▶ 지원횟수 : 1회 지원

● **주 거 비**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개월 지원 가능 (원/월)

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중 소 도 시	226,000	377,400	481,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중소도시59,97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 긴급지원 대상 가구 중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일 속한 분기 지급 단, 국가나 지자체 등 교육지원을 받는 자 제외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97,700	314,800	385,7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 지급, 3개월 지원 가능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78,100	815,400	1,055,000	1,293,500	1,533,100	1,772,700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원/회)

지원종류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85,800	500,000	750,000	500,000

※ 국민건강보험법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전기요금은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에 대해 지급

■ 지원절차



■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국번없이 전화 129번(보건복지 콜센터)

● 주민생활지원과 ☎ 454-3082

생계곤란불우가정 보호금 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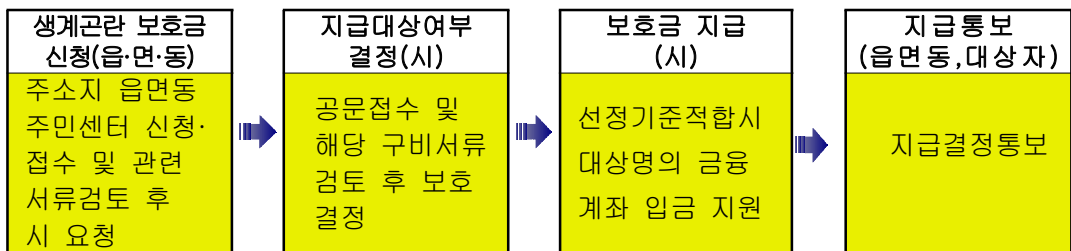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예기치 못한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의 어려움 겪는
요보호대상자에게 특별생계 보호를 행하여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이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의료비 영수증

■ 처리절차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질병치료자 중 진료비 및 의료비 비용 지출이 최근 3개월이내 10만원이상 있는 경우
 - ▶ 자연재해, 인재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를 입는 경우
 - ▶ 수도, 가스, 전기, 건보료, 월세 등 2개월이상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10만원이상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근6개월이내 탈락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 ▶ 실직, 출산, 간병,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지원액 : 적합시 가구당 200,000원 이내 /연1회

■ 궁금한 사항

- 주민생활지원과 ☎ 454-3082~4, 읍·면·동 주민센터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읍면동 업무

〈시와 읍면동 역할〉

- ▣ 시(市) : 지역주민의 복지 최점점의 전달체계로 “협력”의 원칙으로 역할분담
- ▣ 읍면동 :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과적인 대응”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살핌 활동강화”
- ▣ 읍면동 기능의 변화
 -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탈바꿈 ○ 업무변화 : 충실한 상담, 종합정보제공, 서비스
 - 복지대상자 보살핌 기능강화 : 모니터 & 케어 ○ 대상자 확대 : 소수의 취약가구 → 지역주민 대다수
 - 종합복지 상담창구,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Gate way(해결의 길을 찾아주는 창구)

기 존	읍 면 동	시
업무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안내, 신청·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 찾아가는 서비스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조사팀 : 자산조사, 자격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개 선	읍 면 동	시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기상담 및 종합복지 정보제공 ②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③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지원 ④ 자체 자원관리 ⑤ 개별상담서비스 실시 ⑥ 지역주민의 복지조직원 자원개발 기능강화 	

업무매뉴얼 (통합조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을 통한 급여 및 서비스안내 + 신청서 제출 서류안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신청서의 접수 → 제출 서류 확인 → 시 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사업부서 이관 • 급여 및 변동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정보로 읍면동이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을 처리 ☞ 미해결 내용사항 : 시 통합조사관리 담당자에게 이첩 • 복지대상자의 급여권의 보호를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변동(확인)조사관련 사통망 입력, 현장방문 등 업무 전체수행
-------------------	--	--

업무매뉴얼 (희망복지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연계 및 사례관리대상 발굴, 사례회의 참석, 사후관리, 방문형 서비스간 정보공유 • 읍면동 내에서 발생한 후원물품 분배 지원 • 읍면동 내부 복지자원 정보 지역사회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니터 및 사례관리 관련 읍면동 업무지도감독 •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실시 •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 자원개발 및 배분, 관리
--------------------	---	---

업무매뉴얼 (개별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시 개별사업 안내, 신청 및 접수 • 개별사업 대상자 관리, 현황 파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생성 및 지급 자격관리 • 행복e음의 각종 통계 및 현황자료 작성 • 타부처가 개발한 복지서비스
------------------	--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사업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 사업목적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의 실효성 제고

■ 사업개요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 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신청기간 : 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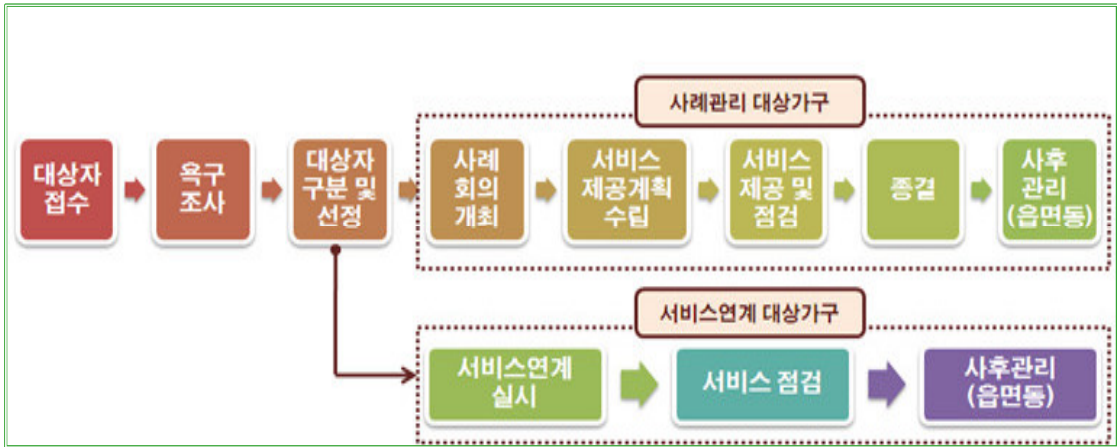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

● 관련서류 : 위기상황이 발생한 관련 서류(예 : 진단서, 휴·폐업 신고서 등), 통합사례관리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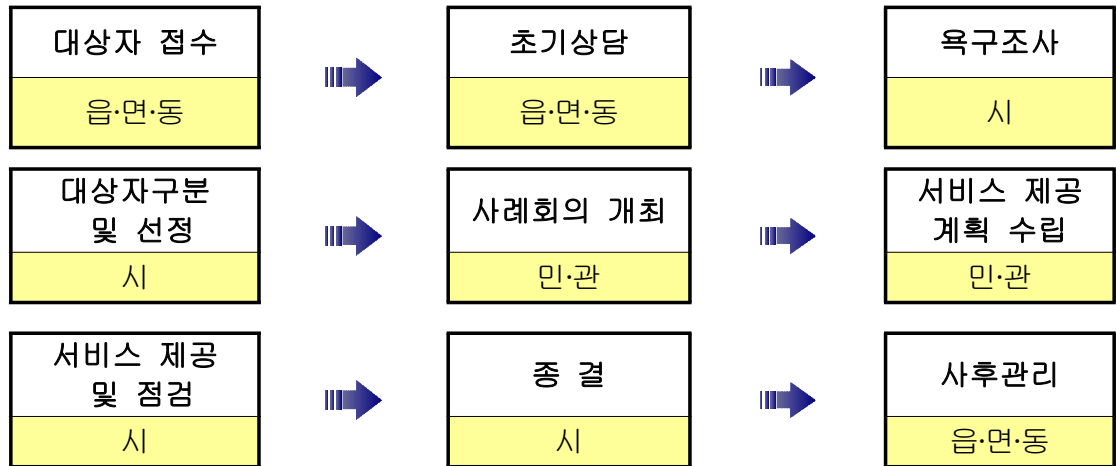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사례관리자 개입을 통한 욕구별 위기도 조사 실시
-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인·가구 또는 사회적 욕구 파악
- 문제점 해결 및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서비스(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 지원

진행절차



통합사례관리 처리절차



문의사항

-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생활지원과 ☎ 454-3082~5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계

■ 마일리지제도란

- 자원봉사자에게 동기부여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봉사자에게 유무형적 혜택을 지원 하는 제도

■ 운영내용

- 대 상 : 1회이상 센터에 봉사실적 입력된 14세 이상 자원봉사자
- 운영기간 : 연중
- 발급내용 : 마일리지통장, 자원봉사자 카드(신용, 체크, 신분증)

■ 제공되는 서비스

- 할인가맹점 이용시 5~30%이내에서 할인혜택
- 본인의 자원봉사실적 전산관리 시스템화
- 마일리지통장 이용방법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센터 등록 ➡ 활동후 센터에 실적등록 확인
➡ 통장정리(자원봉사자)
☞ 통장정리기 설치(1개소) 및 발급 : 센터 사무국
-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 전북은행 군산시청지점 내방 신청(본인)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454-3112~3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 451-1365

사랑의 이동목욕 차량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계

이동목욕이란 ?

- 군산시에서 이동목욕 차량을 구입하여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건강 증진과 청결 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목욕 및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

-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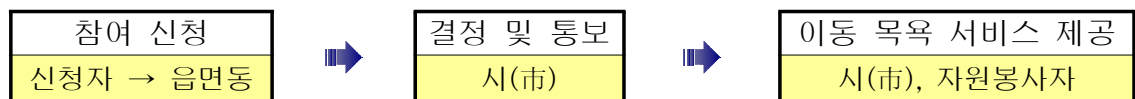
구분	일정	수혜 인원(1일)	비고
내용	월 ~ 금요일	2~3명	

- 자원봉사자 모집 :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목욕 봉사를 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 개별가정방문 이동목욕봉사
- 이·미용봉사 실시

신청절차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454-3112~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서비스계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지원의 기존 틀을 벗어난 보편적 서비스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선택시행
- 지자체 중심의 사업계획을 발굴·시행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제공

■ 사업개요

- 사업유형
 - 기본돌봄사업(가사간병, 노인돌봄)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장애아동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세대로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사업특성에 따른 자격별 지원
 - ※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150%이하 가능
- 신청기간 : 2013. 2. 1 ~ 2014. 1. 31 (12개월)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선정기준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 국가구 월평균소득(50%)	747	1,385	2,055	2,368	2,422
전 국가구 월평균소득(100%)	1,493	2,770	4,109	4,736	4,843
전 국가구 월평균소득(150%)	2,240	4,154	6,164	7,104	7,265

- 연령 및 기타자격 기준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연령 및 기타 자격 요구자
- 시행주체 : 각 사업별 지정 제공기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 업 비	금852,600천원 (국596,820<70%> 도 102,312<12%> 시153,468<18%>)						
사 업 기 간	☞ 2013. 2. 1 ~ 2014. 1. 31 (12개월)						
사 업 대 상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며 건강상태는 노인장기 요양 등급의 A, B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가구 ☞ 제외대상 ◦ 의료기관 입원중인 노인, 보장시설 입소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가구내 노인돌봄종합, 가사간병, 노인장기요양방문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						
서 비 스 내 용	☞ 재가방문형 : 월27시간 ~36시간(1회 방문시 2시간 기본)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화장실이용도움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간보호형 : 월9회 ~ 월12회(1일1회 9시간 기준)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는 재가방문형 서비스대상자에 한해서 변경신청가능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월27시간(월9회)			월36시간(월12회)	
		이용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이용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초수급자	256,500	256,500	0	342,000	337,720	8,280
	차상위계층	256,500	238,500	18,000	342,000	318,000	24,000
차상위초과	256,500	220,500	36,000	342,000	294,000	48,000	
	※ 시간당 단가 - 평일 : 9,500원 , 심야(22시 이후 - 6시 이전) : 10,220원 ※ 인정시간이상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 ※ 우리 시 2013년 월 27시간만 서비스 실시						
서 비 스 제 공 기 관	☞ 재가방문형 : 한마음지역자활센터, 군산지역자활센터, 원광노인복지센터 보은노인복지센터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

사업비	금401,816천원 (국280,830<70%> 도40,119<10%> 시80,237<20%>)						
사업기간	2013. 2. 1 ~ 2014. 1. 31 (12개월)						
사업대상 (선정기준)	20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가구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 타인이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 ◦ 중증질환자:부상.질병.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자 20 제외대상 ◦ 입원증인자(서비스이용중 입원시 해당기간 동안 서비스중지) ◦ 보장시설 입소자 ◦ 만65세 이상의 노인 ◦ 보훈처 재가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등						
서비스내용	20 월24시간 ~월27시간 (1회 방문시 2시간 기본) ◦ 신체수발지원 : 목욕,대소변,옷갈아입히기,세면,식사보조 등 ◦ 가 사 지 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 ◦ 간 병 지 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20 개인별 서비스 유효기간 : 1년(~14년1월까지)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월24시간(A형)		월27시간(B형)				
	구분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초수급자 (가형)	228,000 (9,500)	228,000 (9,500)	0	256,500 (9,500)	247,050 (9,150)	9,450 (350)
차상위계층 (나형)	228,000 (9,500)	210,480 (8,770)	17,520 (730)	256,500 (9,500)	236,790 (8,770)	19,710 (730)	
※ 시간당 단가 : 9,500원 (30분당 4,750원) ※ 인정시간이상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시간 : 1회방문시 2시간 기본, 2시간이상은 1시간단위							
서비스 제공기관	20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군산지역자활센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금639,964천원 (국447,979<70%> 도63,995<10%> 시127,990<20%>)																										
사업기간	☞ 2013. 2. 1 ~ 2014. 1. 31																										
사업대상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의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장애아동 -만6세이하 미등록 영유아는 장애로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6개월 이내)와 검사기록지 모두 첨부 -만20세이하자는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첨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초과 가정의 장애아2명이상, 부모 중 1명 중증장애인은 소득기준예외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중복장애인정)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및 이동성노년심부지원서비스(문제행동아동서비스)인 중복지정 및 이용불가																										
서비스내용	☞ 월22만원 한도내에서 서비스 이용가능(1회당치료 50분기본)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서비스 ※의료행위인 물리, 작업치료 제공 불가 ☞ 장애아동의 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으로 서비스 선택 이용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액(계)</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기초수급자(다형)</td> <td>220,000</td> <td>220,000</td> <td>0</td> </tr> <tr> <td>차상위계층(가형)</td> <td>220,000</td> <td>200,000</td> <td>20,000</td> </tr> <tr> <td>차상위계층초과~평균소득50%이하(나형)</td> <td>220,000</td> <td>180,000</td> <td>40,000</td> </tr> <tr> <td>전국가구평균소득50%초과~100%이하(라형)</td> <td>220,000</td> <td>160,000</td> <td>60,000</td> </tr> <tr> <td>전국가구평균소득100%초과~150%이하(마형)</td> <td>220,000</td> <td>140,000</td> <td>80,000</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초수급자(다형)	220,000	220,000	0	차상위계층(가형)	220,000	200,000	20,000	차상위계층초과~평균소득50%이하(나형)	220,000	180,000	40,000	전국가구평균소득50%초과~100%이하(라형)	220,000	160,000	60,000	전국가구평균소득100%초과~150%이하(마형)	220,000	140,000	80,000
구분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초수급자(다형)	220,000	220,000	0																								
차상위계층(가형)	220,000	200,000	20,000																								
차상위계층초과~평균소득50%이하(나형)	220,000	180,000	40,000																								
전국가구평균소득50%초과~100%이하(라형)	220,000	160,000	60,000																								
전국가구평균소득100%초과~150%이하(마형)	220,000	140,000	80,000																								
서비스 제공기관	☞ 군산언어심리센터,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군산언어발달연구소,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에디슨아동발달센터, 이선자언어인지치료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군산시지부,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이화아동발달조기교육원, 맑은소리언어인지발달센터, EYE전북통합상담발달연구소, 아리울 언어발달연구소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사 업 비	금9,579천원(국6,705<70%> 도958<10%> 시1,916<20%>)																						
사 업 기 간	☞ 2013. 2. 1 ~ 2014. 1. 31 (12개월)																						
사 업 대 상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모두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부모의 자녀)																						
서 비 스 내 용	☞ 월22만원 한도내에서 서비스 이용가능(1회당치료 50분기본)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 언어·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프로그램 제공 ※이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중복신청 및 이용불가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액(계)</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기초수급자(다형)</td> <td>220,000</td> <td>220,000</td> <td>0</td> </tr> <tr> <td>차상위계층(가형)</td> <td>220,000</td> <td>200,000</td> <td>20,000</td> </tr> <tr> <td>차상위계층초과~ 평균소득50%이하(나형)</td> <td>220,000</td> <td>180,000</td> <td>40,000</td> </tr> <tr> <td>전국가구평균소득50%초과 ~100%이하(라형)</td> <td>220,000</td> <td>160,000</td> <td>60,000</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초수급자(다형)	220,000	220,000	0	차상위계층(가형)	220,000	200,000	20,000	차상위계층초과~ 평균소득50%이하(나형)	220,000	180,000	40,000	전국가구평균소득50%초과 ~100%이하(라형)	220,000	160,000	60,000
구분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초수급자(다형)	220,000	220,000	0																				
차상위계층(가형)	220,000	200,000	20,000																				
차상위계층초과~ 평균소득50%이하(나형)	220,000	180,000	40,000																				
전국가구평균소득50%초과 ~100%이하(라형)	220,000	160,000	60,000																				
사 업 기 관	☞ 군산언어심리센터, 군산언어발달연구소, 초록숲인지언어심리센터, 이선지인지언어치료연구소, 아리울언어심리연구소,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맑은소리언어인지발달센터, 에디슨아동발달센터, 대교(전국사업자)																						

아동 인지능력 향상지원

항 목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발달 초기에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 도모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2세~만6세 아동 - 1등급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치료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용자 포함), 부모 모두가 장애인 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장애아동(장애아동발달재활,장애아무상보육료,장애가 예견되는아동) - 2등급 : 1등급 외 아동 <p>※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중복 불가</p>
제공기관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정교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 제 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독서지도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금 - 1등급 아동 : 1인당 월 25천원 - 2등급 아동 : 1인당 월 15천원 ※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별, 서비스 상품별 차등 적용하며 정부지원금외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 1등급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 글로벌 마인드 형성 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를 파견하여 글로벌시대에 필수인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원어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한 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확산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7세~16세 아동 																					
제공기관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외국어지도관련 민간자격증, 해당 외국어관련 학과졸업자,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 여성인력개발원, 평생교육원, 지자체에서 인증한 기타 교육기관 주관 해당 외국어강사 교육 수료생 - 결혼이민자로서 해당국 또는 한국어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35%;">정부지원금</th> <th style="width: 35%;">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td> <td>16만2천원</td> <td>1만8천원</td> </tr> <tr> <td>2등급(차상위-50%)</td> <td>14만4천원</td> <td>3만6천원</td> </tr> <tr> <td>3등급(50%~100%이내)</td> <td>12만6천원</td> <td>5만4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16만2천원	1만8천원	2등급(차상위-50%)	14만4천원	3만6천원	3등급(50%~100%이내)	12만6천원	5만4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16만2천원	1만8천원																				
2등급(차상위-50%)	14만4천원	3만6천원																				
3등급(50%~100%이내)	12만6천원	5만4천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맞춤형 외국어 교육, 자기주도학습코칭, 비전형성프로그램(학업성취도 평가, 발표회, 전시회 등)을 통한 리더십 증진 서비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15%;">서비스 횟수</th> <th style="width: 15%;">회당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 본 서 비 스</td> <td>외국어 능력 진단도구를 통한 아동의 기초학력 측정</td> <td>사전사후 1회</td> <td></td> </tr> <tr> <td>맞춤형 외국어교육 서비스 및 글로벌마인드교육 (스토리텔링, 단어게임, 부루미블, 프리토킹 주제별 외국어 학습 등)</td> <td>주2회</td> <td>A형:60분 B형:90분</td> </tr> <tr> <td rowspan="2">부 가 서 비 스</td> <td>원어민문화 및 다양한 문화체험(음식, 문화, 놀이 등) 과 정서함양 프로그램</td> <td>월1회</td> <td></td> </tr> <tr> <td>다문화체험전시회 및 성과향상대회</td> <td>연1회</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외국어 능력 진단도구를 통한 아동의 기초학력 측정 - 2단계 : 해당 가구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 3단계 : 사후 관리 및 환류(학업성취도 등에 관한 부모상담 분기 1회 이상)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외국어 능력 진단도구를 통한 아동의 기초학력 측정	사전사후 1회		맞춤형 외국어교육 서비스 및 글로벌마인드교육 (스토리텔링, 단어게임, 부루미블, 프리토킹 주제별 외국어 학습 등)	주2회	A형:60분 B형:90분	부 가 서 비 스	원어민문화 및 다양한 문화체험(음식, 문화, 놀이 등) 과 정서함양 프로그램	월1회		다문화체험전시회 및 성과향상대회	연1회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외국어 능력 진단도구를 통한 아동의 기초학력 측정	사전사후 1회																				
	맞춤형 외국어교육 서비스 및 글로벌마인드교육 (스토리텔링, 단어게임, 부루미블, 프리토킹 주제별 외국어 학습 등)	주2회	A형:60분 B형:90분																			
부 가 서 비 스	원어민문화 및 다양한 문화체험(음식, 문화, 놀이 등) 과 정서함양 프로그램	월1회																				
	다문화체험전시회 및 성과향상대회	연1회																				

멘토와 함께하는 지역사회클럽

항 목	내 용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7~23세이하 지적장애 및 지적장애 경계선의 장애 아동·청소년(추천서 첨부) 														
서비스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정부지원금</td> <td>본인부담금</td> <td>비고</td> </tr> <tr> <td>18만원</td> <td>2만원</td> <td></td> </tr> </table>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18만원	2만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18만원	2만원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임상사례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기 본 서비스</td> <td> ①1:1 멘토링(일상생활지도, 사회적응, 정서지지) -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일상생활지도 프로그램 : 옷입기, 체육활동 등을 통한 대상자의 소근육·대근육 발달을 도모 - 정서지지 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중에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관찰하여 정서적인 지지 ②문화·여가 프로그램 : 영화·연극 관람 및 참여를 통한 결여된 사회경험 증진 및 지역사회 내 참여기회 제공 ③건강 증진 프로그램 : 체육활동을 통한 대상자의 소근육·대근육 발달을 도모하는 신체프로그램 ④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 또래집단간의 통합활동(미술 활동, 작품활동 등)을 통하여 집단 성원간의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창의성 증진 ⑤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td> <td>주2회</td> <td>90분</td> </tr> <tr> <td>부 가 서비스</td> <td>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비스	①1:1 멘토링(일상생활지도, 사회적응, 정서지지) -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일상생활지도 프로그램 : 옷입기, 체육활동 등을 통한 대상자의 소근육·대근육 발달을 도모 - 정서지지 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중에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관찰하여 정서적인 지지 ②문화·여가 프로그램 : 영화·연극 관람 및 참여를 통한 결여된 사회경험 증진 및 지역사회 내 참여기회 제공 ③건강 증진 프로그램 : 체육활동을 통한 대상자의 소근육·대근육 발달을 도모하는 신체프로그램 ④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 또래집단간의 통합활동(미술 활동, 작품활동 등)을 통하여 집단 성원간의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창의성 증진 ⑤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주2회	90분	부 가 서비스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비스	①1:1 멘토링(일상생활지도, 사회적응, 정서지지) -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일상생활지도 프로그램 : 옷입기, 체육활동 등을 통한 대상자의 소근육·대근육 발달을 도모 - 정서지지 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중에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관찰하여 정서적인 지지 ②문화·여가 프로그램 : 영화·연극 관람 및 참여를 통한 결여된 사회경험 증진 및 지역사회 내 참여기회 제공 ③건강 증진 프로그램 : 체육활동을 통한 대상자의 소근육·대근육 발달을 도모하는 신체프로그램 ④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 또래집단간의 통합활동(미술 활동, 작품활동 등)을 통하여 집단 성원간의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창의성 증진 ⑤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주2회	90분											
부 가 서비스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이용자의 욕구 수준 등 상태 파악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 실시 -> 사후관리 연계 															
기타등록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 규모 : 1:1 (제가방문+집단활동)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 종료될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사회적응검사(CIS-A), 자아개념검사(SCI), K-CBCL 아동·청소년의 심리, 발달 특성, 적응기술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점 이상 향상 ② 일자리창출 : 사업예산/12개월/80만원 ③ 서비스만족도조사 : 만족도 80% 이상 ④ 일반시장창출 : 바우처매출의 5%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내일을 여는 아이)

항 목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서 비 스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7세~16세 아동 															
서 비 스 가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td> <td>12만6천원</td> <td>1만4천원</td> </tr> <tr> <td>2등급(차상위~50%)</td> <td>11만2천원</td> <td>2만8천원</td> </tr> <tr> <td>3등급(50%~100%이내)</td> <td>9만8천원</td> <td>4만2천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12만6천원	1만4천원	2등급(차상위~50%)	11만2천원	2만8천원	3등급(50%~100%이내)	9만8천원	4만2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12만6천원	1만4천원														
2등급(차상위~50%)	11만2천원	2만8천원														
3등급(50%~100%이내)	9만8천원	4만2천원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서 비 스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를 통하여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로 사회적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회로 한정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서 비 스 내 용 및 제 공 절 차	구 분	서 비 스 내 용	서 비 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주2회	90분												
		자아존중감 검사 및 부모 상담 실시	사전사후 연2회													
	부 가 서 비 스	부모교육	연2회													
기 타 등 록 조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선정된 대상자 사전 검사를 통한 프로그램 계획 작성 - 2단계 : 개별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본서비스+부가서비스) - 3단계 : 서비스 제공보고서(상담결과 안내문)발송 및 서비스 종결 사후검사 실시 ※ 재신청의 경우 신규선정자의 30%이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사후 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①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② 일자리창출 : 사업예산/12개월/80만원 ③ 서비스만족도조사 : 만족도 80% 이상 ④ 일반시장창출 : 바우처매출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 규모 : 1:12 이하 (기관방문, 집단활동 혼합)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8세이하 아동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단, 장애아동재활치료 대상은 제외(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 추천이 있는 경우 ②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 「정신보건사업 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추천서, 검사결과는 3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p>※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 중복불가</p>														
서비스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td> <td>14만4천원</td> <td>1만6천원</td> </tr> <tr> <td>2등급(차상위-50%)</td> <td>12만8천원</td> <td>3만2천원</td> </tr> <tr> <td>3등급(50%~100%이내)</td> <td>11만2천원</td> <td>4만8천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14만4천원	1만6천원	2등급(차상위-50%)	12만8천원	3만2천원	3등급(50%~100%이내)	11만2천원	4만8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14만4천원	1만6천원													
2등급(차상위-50%)	12만8천원	3만2천원													
3등급(50%~100%이내)	11만2천원	4만8천원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사전사후 1회	50분											
		심리상담(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시 10분 내외로 제공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주1회												
	부가 서비스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아동상황에 따라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항 목	내 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환경, 가족해체 증가 등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음악교육·정서순화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연 령 : 만7세~12세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 * 추천서, 검사결과는 3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border="1" data-bbox="379 833 1249 980">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td> <td>18만원</td> <td>2만원</td> </tr> <tr> <td>2등급(차상위-50%)</td> <td>16만원</td> <td>4만원</td> </tr> <tr> <td>3등급(50%~100%이내)</td> <td>14만원</td> <td>6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18만원	2만원	2등급(차상위-50%)	16만원	4만원	3등급(50%~100%이내)	14만원	6만원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18만원	2만원																
2등급(차상위-50%)	16만원	4만원																
3등급(50%~100%이내)	14만원	6만원																
서비스 내용 및 제 공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아동·청소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임상사례 제공 - 전문적 정서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치유하고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 - 정서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음악이론 및 실기수업을 제공하여 제공인력과 참여자의 멘토링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음악적 재능 발굴,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 학업성취 동기 부여 - 일반 연주회 관람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향상 음악회”를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신감 증진 및 성공경험을 통한 긍정적 자아상 설정 <table border="1" data-bbox="368 1328 1265 1736">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 본 서비스</td> <td>클래식 악기 이론 및 실기 : 1~3인</td> <td>주1회</td> <td>60분</td> </tr> <tr> <td>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1~3인 제공 원칙)</td> <td>주1회</td> <td>60분</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 전문교재 기준 연 5곡 이상 연주 - 전문 음악회 관람 (반기별 1회) - 제공인력 합동사례회의: 월1회 -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비스	클래식 악기 이론 및 실기 : 1~3인	주1회	60분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1~3인 제공 원칙)	주1회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 전문교재 기준 연 5곡 이상 연주 - 전문 음악회 관람 (반기별 1회) - 제공인력 합동사례회의: 월1회 -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비스	클래식 악기 이론 및 실기 : 1~3인	주1회	60분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1~3인 제공 원칙)	주1회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 전문교재 기준 연 5곡 이상 연주 - 전문 음악회 관람 (반기별 1회) - 제공인력 합동사례회의: 월1회 -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항 목	내 용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성 질환자 및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p>서비스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코드분류 G,M,I 및 R81, E10-15)중 제출 											
<p>제공 기관 제공 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안마사 											
<p>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13만6천원 <table border="1" data-bbox="358 1187 1243 1266"> <thead> <tr> <th data-bbox="358 1187 705 1230">정부지원금</th> <th data-bbox="705 1187 1046 1230">본인부담금</th> <th data-bbox="1046 1187 1243 12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8 1230 705 1266">12만4천원</td> <td data-bbox="705 1230 1046 1266">1만2천원</td> <td data-bbox="1046 1230 1243 126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12만4천원	1만2천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12만4천원	1만2천원											
<p>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근골격계마사지, 지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table border="1" data-bbox="344 1391 1243 1554"> <thead> <tr> <th data-bbox="344 1391 436 1452">구 분</th> <th data-bbox="436 1391 1025 1452">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025 1391 1139 1452">서비스 횟수</th> <th data-bbox="1139 1391 1243 1452">회당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4 1452 436 1554">기본 서비스</td> <td data-bbox="436 1452 1025 1554">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td> <td data-bbox="1025 1452 1139 1554">주1회</td> <td data-bbox="1139 1452 1243 1554">60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이용자의 신체 상태 파악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 실시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주1회	6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주1회	60분									

정신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

항 목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단, 정신장애인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가능 -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 - GAF척도, 대인관계변화 척도 점수가 낮은 대상자 - 정신질환의 범주의 행동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자(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 정신과병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제공 기관 제공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기관 제공인력 - "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8만원</td> <td>2만원</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2회 연장 가능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18만원	2만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18만원	2만원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 대상자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① 심리정서상담서비스 ② 자기관리 및 일상생활 향상서비스 ③ 약물증상 관리 ④ 위기상황 개입 ⑤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td> <td>주1회</td> <td>60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이용자의 욕구 수준 등 상태 파악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 실시 -> 사후관리 연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① 심리정서상담서비스 ② 자기관리 및 일상생활 향상서비스 ③ 약물증상 관리 ④ 위기상황 개입 ⑤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주1회	6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① 심리정서상담서비스 ② 자기관리 및 일상생활 향상서비스 ③ 약물증상 관리 ④ 위기상황 개입 ⑤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주1회	60분								

도담도담(청소년 통합발달 맞춤형 사례관리 재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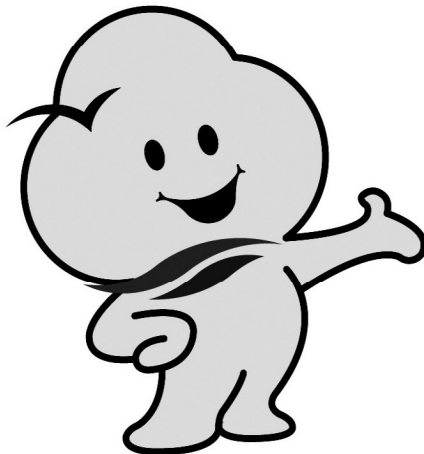
항 목	내 용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심리정서발달, 인지발달, 영양발달, 신체발달, 직업탐색, 여가관리 6차원의 청소년 통합발달 맞춤형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건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서 비 스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연 령 : 만7세~18세 																			
서 비 스 가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서 비 스 제 공 기 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정부지원금</th> <th>본인부담금</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td> <td>18만원</td> <td>2만원</td> <td></td> </tr> <tr> <td>2등급(차상위-50%)</td> <td>16만원</td> <td>4만원</td> <td></td> </tr> <tr> <td>3등급(50%~100%이내)</td> <td>14만원</td> <td>6만원</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18만원	2만원		2등급(차상위-50%)	16만원	4만원		3등급(50%~100%이내)	14만원	6만원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18만원	2만원																		
2등급(차상위-50%)	16만원	4만원																		
3등급(50%~100%이내)	14만원	6만원																		
서 비 스 내 용 및 제 공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별 제공기간 : 12개월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기 발달에 필요한 6가지 영역(1. 심리정서 2. 인지 3. 영양 4. 신체 5. 여가 6. 직업탐색)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재가방문 사례관리 서비스, 매월 이용자 10%이내 슈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기 본 서비스</td> <td>발달 6 영역(심리정서, 인지, 영양, 신체, 여가, 직업탐색)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재가방문 사례관리 서비스 - 매월 이용자 슈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td> <td>주2회</td> <td>90분</td> </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비스	발달 6 영역(심리정서, 인지, 영양, 신체, 여가, 직업탐색)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재가방문 사례관리 서비스 - 매월 이용자 슈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	주2회	9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비스	발달 6 영역(심리정서, 인지, 영양, 신체, 여가, 직업탐색)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재가방문 사례관리 서비스 - 매월 이용자 슈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	주2회	90분																	
기 타 등 록 건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제공기관 등록·개별상담·부모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단계 : 개인요구 파악 후 사전평가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3단계 : 청소년 통합발달지원서비스 실시 4단계 : 월별 프로그램 관리자 슈퍼비전 제공 및 모니터링 사례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 6단계 : 사후평가 및 평가보고 사전·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실시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 통합발달지원서비스 측정도구 (인구사회학적, 자기유능감,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기술, 사회성, 진로성숙도 척도) 및 신체발달(인바디 종합검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사전사후 검사 ② 일자리 창출 : 사업예산/12개월/80만원 ③ 서비스만족도조사 : 만족도 80% 이상 ④ 일반시장 창출 : 바우처매출의 5% 집단 규모 : 1:1 (재가방문)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청소년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 																			

2013 알기쉬운
사회복지서비스

길라잡이

사회복지 서비스

【 복지지원과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 사업목적

- 저소득층의 각종 급여지원을 통해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복지사회 구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 급여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 ▶ 지급방식 :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 산정기준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
 - ▶ 지급일 :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 지급기준 : 가구 단위 지급, 급여 신청일이 급여개시일

● 주거급여

- ▶ 지급원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 지급방식 :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
- ▶ 현물급여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가가구 등의 주거 현금급여액 중 일부를 재원으로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하여 직접 서비스를 지원

● 교육급여

- ▶ 급여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 ▶ 급여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등
- ▶ 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 학비지원 대상자
- ▶ 지급방법 : 매 분기별로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로 직접 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학비는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

● 해산급여

- ▶ 급여내용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 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 급여액 : 1인당 5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지급)
- ▶ 지급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그 가구주 또는 가구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

● 장제급여

- ▶ 급여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 ▶ 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 급여액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75만원 지급
- ▶ 지급방법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통장으로 지급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4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급여명	급여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생계·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 가능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초, 중,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교과서대(고): 1인당 125.9천원(연1회) - 학용품비(중, 고): 1인당 51천원(학당 25.5천원) - 부교재비(초, 중): 1인당 37.5천원(연회) 지급	- 중학생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500천원	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 무능력세대 : 1종 - 근로 능력세대 : 2종	

※ 타제도 지원내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비 고
<input type="checkbox"/>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사·군·구에서 일괄 면제
<input type="checkbox"/>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할인 (월8천원한도 정액할인)	한국전력공사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input type="checkbox"/>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지 원 내 용	비 고
<input type="checkbox"/>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5천원 기본할인:초과 50%할인,정액기준)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u>교통안전공단(1577-0990)</u>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 기타 복지서비스

지 원 내 용	비 고
<input type="checkbox"/>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input type="checkbox"/> 법률구조제도 (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input type="checkbox"/>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input type="checkbox"/>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궁금한 사항**

 문의처 : 복지지원과 ☎ 454-3141~3144,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	----------------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서민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복지수급 가구로서 정부양곡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자
 -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보호대상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차상위장애인 수급자(수당,연금)가구
 -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대상가구

● 공급가격 : '12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1포대(20kg) 21,500원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5인 이상 가구 : 2포대(40kg)로 제한)

● 공급방식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배달

● 양곡대금지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에서 차감 지급
- 차상위계층 등 : 본인 부담금 납부

【양곡대금 43,040원 (본인부담금 21,500원 예산지원금 21,540원)】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41~3144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학업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중, 중·고등학생
- 지원기간 : 년 1회(12월)

■ 처리절차

- 학교장,읍·면·동장 추천 → (市)심의위원회 선정 → (市)개인별계좌입금

■ 지원내용

- 일반장학생 20만원, 특별장학생 30만원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41~4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 사업목적

- 수급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노인·장애인 세대에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1만원이하인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65세이상 세대원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지원기간 : 연중

■ 처리절차

-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공단) → 적격여부 조사 제출(읍면동) → 조사결과 통보(시) → 지원금 신청(공단) → 지원금 지급(시)

■ 지원내용

- 매월/세대당 10,000원이하 보험료 전액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41~4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 사업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사용해야 할 급여일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상한일수 초과시 급여일수 연장과 조건부 승인을 통해 초과일수에 해당되는 자부담 의료비 발생부담 완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기준
 - ▶ 107개 희귀난치질환 및 11개 고시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의료급여일수 사용 가능, 이후 초과일수 1회 연장신청
 - ▶ 기타질환
 - 희귀·고시 외의 나머지 질환을 합산하여 연간 365일 의료급여일수 사용 가능, 이후 초과일수 2회 연장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사용급여일수 통보(건강보험공단) ⇒ 상한일수 초과된 주 질환 진료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 읍면동사무소 제출 ⇒ 본청(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 연장일수 등록·승인
(공단전송) ⇒ 승인 통보

■ 지원내용

- 107개 희귀난치질환 · 11개 고시질환
 - ▶ 각 질환별 상한일수 초과시 90일 연장신청 및 조건부(선택병의원 지정) 승인
- 기타질환
 - ▶ 희귀·고시질환 외의 합산질환 상한일수 초과시 90일씩 2회 연장신청 및 조건부(선택병의원 지정) 승인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의료급여센터 ☎450-6229, 451-1400~1410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	----------------

■ 사업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비의 본인 부담 완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기준
 - ▶ 본인부담 보상금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상금 : 30일간 본인부담금 1종 2만원, 2종 20만원 이상 납부 시 초과된 금액의 50% 보상
 - 상한제 : 1종 30일간 5만원, 2종 6개월간 60만원 초과 시 초과금 전액 보상
 - ▶ 본인부담금 환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과다 본인부담금 및 입양아동 본인부담금 환급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금액 개별 계좌지급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상한제
 - ▶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상한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기간, 기준금액 초과 시 초과금에 대한 보상
- 본인부담금 환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본인부담 환급금 전액 환급 및 입양아동 본인부담금 환급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의료급여센터 ☎450-6229, 451-1400~1410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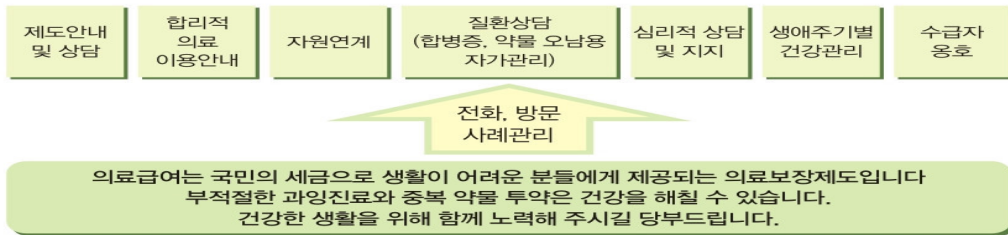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 사업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별 해당 질환에 대한 맞춤형 의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방법 : 서신·전화·방문상담 및 집합교육(자체 선정이나 본인의 신청도 가능)
- 수행인력 : 의료급여관리사(종합병원 경력간호사) 8명
- 이용절차



■ 지원내용

- 신규수급자 중심 관리
 - ▶ 의료급여수급권 최초 취득 후 제도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해서 의료급여 이용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신규수급자에게 제도 및 질환상담 서비스 지원
- 외래 과다이용자 및 장기입원자 관리
 - ▶ 만성 · 희귀질환 및 기타질환에 대한 질병관리의 이해부족으로 의료 및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제도 및 질환상담 서비스 지원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의료급여센터 ☎ 450-6229, 451-1400~1410

산소치료 영양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	----------------

■ 사업목적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중 90일 동안 내과적 치료 후 별도의 검사 후 동맥혈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복지지원과
- **신청서류** : 영양비 지급청구서, 표준계약서, 세금계약서
- **신청접수 및 지급절차**



■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 120,000원/월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 102,000원/월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41~4

수급자 출산전 진료비지원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 사업목적

- 임신이 확진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 고취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신청장소 :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계, 보험공단
 -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KB국민은행 영업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시청 복지지원과
 -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15일까지
- 신청대상 :
 -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만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서비스시간 : 연 320시간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
- 서비스비용 : 무료
- 구비서류 : 출산전 진료비 신청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40만원 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12년 4월 부터 50만원 지원예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 30만원 한도 가상계좌에 적립
- 가족대상서비스 : 가족휴식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사업내용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41~4,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국민은행 콜센터 1599-7900

자 활 사 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자활복지계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자립의지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내용
 - ▶ 市 운영 : 근로유지, 읍면동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파견도우미
 - ▶ 위탁운영 :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 ※ 위탁기관 : 2개소(군산지역자활센터, 한마음지역자활센터)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시(市) 운영 자활근로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근무시간/ 임금
근로유지형	노동 강도가 낮은 대상자로 소득기회제공 및 자활의욕 고취 ⇒ 지역환경정비 시설물 관리	▶ 주/4일, 1일5시간 ▶ 1일 23,340원 ▶ 월평균 528천원
읍 면 동 복지도우미 (시장진입형)	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업무보조 ⇒ 수급자관리, 자활대상자관리 등 사무보조업무	▶ 주/5일, 1일8시간 ▶ 1일 34,560원 ▶ 월평균 820천원
사회복지시설 파견 도우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 파견 도우미	▶ 주/5일, 1일8시간 ▶ 1일 31,210원 ▶ 월평균 733천원

지역자활센터 현황

센터명	모법인	소재지
군산지역자활센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군산지부	해망로 24 한국빌딩4층
한마음지역자활센터	군산 YMCA	대학로 248

위탁운영 자활사업(지역자활센터2개소)


구분		사업내용	근무시간/ 임금
위탁자활 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 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주/5일, 1일8시간 ▶ 1일 31,210원 ▶ 월평균 733천원
	시장 진입형	투입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3년)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주/5일, 1일8시간 ▶ 1일 34,560원 ▶ 월평균 820천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자가 및 전체 무료임대 수급자가구를 대상으로 3년에 1회 주거환경개선(도배장판, 지붕, 보일러, 내부수리 등)	▶ 가구당 210만원한도 ▶ 1가구 평균수리비 : 1,650천원

위탁사업현황(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계	19개사업단		
군산 지역 자활 센터	소 계		
	사회적 일자리형	장애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인욕구 지원
		원피스공부방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및 보육서비스 제공
		아름다운 동행	환자 병원 동행 및 장애인 학생 등교 서비스
		누리보듬	장례 서비스 및 장례용품 제작 판매
		클린 119	가정이나 사업장 해충제거 및 예방소득, 청소

구분	사업명		사 업 내 용
군산 지역 자활 센터	시범사업	인큐베이팅	교육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 지원
		외식, 식품가공	두부, 박대 전문 향토음식점 운영
		쌍쌍세차장	물, 스팀세차 및 실내 크리닝
	시 장 진입형	주거복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수산물가공	조기, 박대, 꽃게장 등 가공 판매
		자활도우미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한 마음 지역 자활 센터	사회적 일자리형	복지간병	저소득층의 병원입원환자 무료 간병
		한마음공부방	저소득 초등학생의 방과 후 생활, 학습지도
		온누리공부방	방과후 아동 지도프로그램 운영
		울외 짱아찌	울외 짱아찌 가공 판매
		인큐베이팅	개별 적합한 자활경로 설정 및 지원
	시 장 진입형	로컬푸드	농수산물 유통, 판매 및 양곡배달 사업 추진
		깨끗한 환경	공동주택 및 사무실 청소
		서로좋은가게	지역자활센터 자활 생산품 판매
		자활도우미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공동체	드림환경	입주청소, 건물준공, 청소용품 판매

궁금한 사항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61~4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추천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자활복지계
------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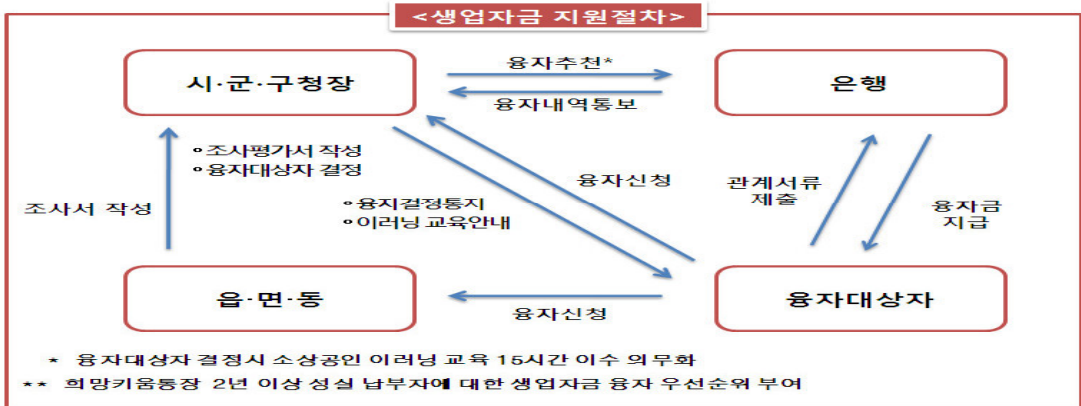
- 저소득층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로 경제적 자활·자립 유도

■ 용자조건

- **용자은행** : 농협 중앙회
- **용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 재산기준 : 재산 1억원 이하
- **용자규모** : 무보증 - 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
- **대출이자** : 고정금리 연 3%
- **상환기간** : 5년거치 5년상환
- **용자재원** : 보건복지부 저소득 용자금

■ 용자절차

- **시·군·구** : 대상자 접수 및 사업계획서 심사·용자 추천
- **금융기관** : 대출 심사 및 실행



- 신청·접수(읍면동)→소득 및 재산조사(시)→용자 심사 및 금융기관 추천(시)
→대출심사 및 대출(금융기관)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61~4

저소득층 자활기금 용자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자활복지계

■ 사업목적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 용자조건

- 용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내)
- 용자조건
 - ▶ 생활안정자금 : 3,000천원 이내
 - ▶ 자조자립자금 : 20,000천원이내
- 보증인 : 용자 10,000천원 이하 - 재산세 납부액 1만이상 1인
용자 20,000천원 이하 - 재산세 납부액 3만원이상 1인
- 대출이자 :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자조자립자금 연 2%
- 연체이자 : 생활안정자금 연체 시 3% 및 자조자립자금 연체시 3%
- 상환기간 : 생활안정자금 1년거치 3년상환, 자조자립자금 3년거치 5년상환
- 용자재원 : 군산시 자활기금(도비, 시비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등)

■ 용자절차

- 읍·면·동 : 대상자 접수 및 사업계획서 심사 · 용자 추천
- 시 : 대출 심사 및 대출
-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 및 재산조사, 용자 추천(읍면동) → 대출심사 및 대출(시)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61~4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자활복지계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자가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전체무료임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사업기간 : '13. 3. 20 ~ 12. 18

● 사업계획

- ▶ 대상가구 파악 및 전수조사 : '13. 1. 25 ~ '13. 2. 20
- ▶ 해당 가구 실사 및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 '13. 2. 22 ~ 3. 20
- ▶ 자활후견기관 위탁 계약후 사업추진 : '13. 3. 20 ~ 3. 25

■ 지원내용

- 가구당 210만원(사업비 초과시 자부담으로 시행)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61~4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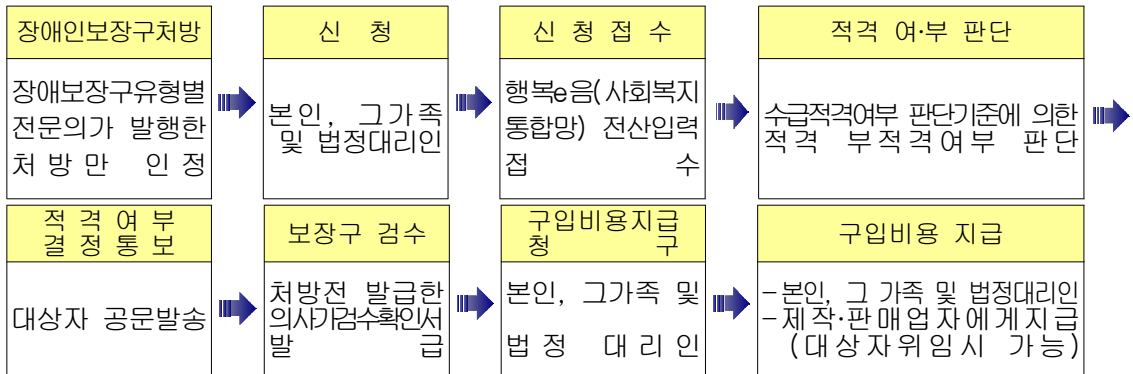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	----------------

■ 사업목적

- 장애인보장구 적정지급을 통한 알맞은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복지지원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접수 및 지급절차



※ 사후관리 : 구입비 지원 후 적절한 사용여부 사후 점검

■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 지원 기준액 100%
-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 지원 기준액 85%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41~4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 ▶ 경증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중 경증장애인(3~6급)
 -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 지원내용

- 장 애 수 당(18세이상 장애인)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1인 3만원/월
 - ▶ 보장시설 입소자 : 1인 2만원/월
- 장애아동수당(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중증 - 1인 20만원/월, 경증 - 1인 10만원/월
 - ▶ 차상위계층 : 중증 - 1인 15만원/월, 경증 - 1인 10만원/월
 - ※ 중증장애인 : 1~2급(3급 중복장애 포함), 경증장애인 : 3~6급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454-3171~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 지원품목

지 원 대 상	지 원 품 목
지체, 뇌병변 1,2급	욕창방지매트, 자세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시각장애인	음향신호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휴대용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심장장애	욕창방지용 매트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454-3171~4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영아를 양육함으로써 생계유지에 이중고를 겪는 장애인 가정에 영아양육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영아의 건강한 성장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2007. 1월생부터 ~ 2013. 12월생 까지)
 - ▶ 2013년도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의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가정의 7세 미만의 영아
 - 모가 없는 부자가정으로 부가 장애인인 가정의 7세 미만의 영아
 - 부가 없는 모자가정으로 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7세 미만의 영아
- ※ 지원제외 :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으로 부모중 1인만 장애인인 가정

■ 지원내용

- 영아 1인당 월 50천원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454-3171~4

장애인 자립자금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	----------------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사업개요

- **대여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본인(월소득인정액 4인기준 373만원 이하)
 - ※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등
 -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 생업자금 용자대상인 장애인 중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 대여조건

한 도 액	이 율	용자기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가구당 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처리절차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454-3171~4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 사업목적

-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 보급하여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 촉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신청기간 : 읍·면·동주민센터(장애인행정도우미), 위탁된 민간기관(장애인복지일자리)
- 신청장소 : 사회복지과(장애인행정도우미), 위탁된 민간기관(장애인복지일자리)
- 신청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재산세증명원, 관련자격증 사본 각1부.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일자리(2010년 장애인연합회 위탁)
 - ▶ 사업기간 : 1월 ~ 12월(12개월)
 - ▶ 근무시간 : 주14시간, 월56시간을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가능
 - ▶ 사업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지도, 관공서청소도우미사업, 장애인주차단속
- 장애인행정도우미
 - ▶ 사업기간 : 1월 ~ 12월(12개월)
 - ▶ 근무시간 : 월~금[1일, 8시간(09:00-18:00)], 1주 근무시간 40시간
 - ▶ 사업내용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행정정보조업무수행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454-3171~4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 사업목적

-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을 제한을 받으면서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130% 이하 장애인 가구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제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 가구의 중·고등학생
 -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장애인자녀교육비
 - ▶ 학비(입학금·수업료) : 고등학생(특수고 포함), 분기별 지원
 - ▶ 교과서대 : 고등학생(연 1회 지급)
 - ▶ 부교재비 : 초·중학생(연 1회 지급)
 -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연 2회 지급)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454-3171~4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선정기준
 - ▶ 장애유형에 따라 : 1~6급 등록장애인(15종)
 - ▶ 생활정도에 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 자가 유무에 따라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 신청기간 : 3월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지원제외
 -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 ▶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 상기 장애인들의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 ▶ 지붕개량보수는 안전, 거주곤란 등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조가능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454-3171~4

장애인연금제도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51천원, 부부가구 881천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급액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4천원 지급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8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7만원 추가 지급
- 일반(18~64세) : 4만원 부가급여 지급
- 일반(65세이상) : 2만원 부가급여 지급
 - ※ 부부가 대상자인 경우 감액(20%)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구비
-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454-3171~4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급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 사업목적

-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생활안정도모

■ 사업개요

- 지원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지원대상 : 부(1급~4급), 모(1급~6급) 지원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신생아의 모(母)가 장애인 인 경우
 - 등급 1급~2급 : 150만원 이내 - 등급 3급~4급 : 100만원 이내
 - 등급 5급~6급 : 70만원 이내
- 신생아의 부(父)가 장애인 인 경우
 - 장애등급 1급 내지 2급 : 100만원 이내
 - 장애등급 3급 내지 4급 : 70만원 이내
- 쌍생아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

■ 지원대상 / 처리절차

- 대 상 자 : 출생신고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읍·면·동 : 지급대상 여부 확인후 신청서 시 송부
- 시(市) : 지원여부 결정 후 지급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454-3171~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 사업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 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2급 장애인

■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등)
- 기본급여 : 성인, 아동 동일함

성인 . 아동	
활동지원등급	급여액(시간)
1등급	86만원(약103시간)
2등급	69만원(약83시간)
3등급	52만원(약62시간)
4등급	35만원(약42시간)

- 추가급여 : 생활환경에 따라 10 ~ 80시간 추가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구비서류 : 본인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454-3171~4

기 초 노 령 연 금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계

■ 사업목적

- 자녀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 소득인정액 기준 이내인 자
- 선정기준
 - ▶ 노인 단독 : 소득인정액 83만원 이하
 - ▶ 노인 부부 : 소득인정액 1,328천원 이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매월 25일 지급
- 지원액(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급)
 - ▶ 1인 수급자 : 20,000원 ~ 94,600원
 - ▶ 부부 수급자 : 40,000원 ~ 151,400원
- ※ 4월 지급액 변경 예정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81~3184

노인일자리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계

■ 사업목적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3. 2월 ~ 11월 (혹서기 8월 휴무, 9개월)
- 사업대상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참여 가능한 자
(만 60세 이상 예외적 허용)
- 사업유형 : 사회공헌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진입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 근무조건 : 월 20만원 이내, 1일 3~4시간, 공익형(월 36~40시간), 교육형(20시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사업 수행기관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81~3184

노인건강진단사업

■ 사업목적

-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 도모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희망자
- 사업기간 : '13. 3 ~ 9월
- 진료과목
 - ▶ 1차 검진항목 : 기본진료, 혈액검사, 기타(요검사, 안검사 등)
 - ▶ 2차 검진항목 : 1차검진 결과 유질환 항목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81~4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계

사업목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사업개요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 무료 경로식당

급식장소	주소	운영횟수	비고
군산경로식당	중앙로 44-7(대명동)	주 7회	휴무 7일 (신정1일, 설·추석 6일)
군산노인종합복지관내	둔배미길 29(중앙로2가)	주 5~6회 (토 1,3주 운영)	
나운종합사회복지관내	문화로 36(나운동)	주 5회	
해신동 희망경로당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장계1길 11-8(해망동)	주 5회	이동배식

-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읍면동

급식단가

- ▶ 무료 경로식당 : 1식 2,500원/인·일
- ▶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 : 1식 2,500원/인·일

- 지원방법 : 무료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 배달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복지지원과 ☎454-3181~3184

군산 시니어클럽운영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계

■ 사업목적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기회 확대
- 노인인력의 창조적 활용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고령사회기반 구축
-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고, 근로활동 및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서비스 대상 : 상담이 필요한 노인
- 제공되는 서비스 : 일대일 맞춤형 상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군산시니어클럽 ☎732-6065)

■ 주요사업

- 공공분야(사회공헌형)
 - ▶ 공익형 - EM(유효미생물)활용 공공환경개선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 ▶ 교육형 - 보육교사도우미 사업
 - ▶ 복지형 - 다문화가정 독서지원 사업
- 민간분야(시장진입형)
 - ▶ 시장형 - 웰빙참맛사업, 은빛실타래사업, 은빛보부상사업
 - ▶ 인력파견형 - 은빛인력뱅크
- 고유사업
 - ▶ 학교청소사업단, 종합도우미

■ 문의처 : 군산시니어클럽 ☎ 732-6065 복지지원과 ☎454-3181~3184

매장 · 화장 · 개장신고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복지시설계
-------------	----------------

■ 신청(이용)안내

- 신청 : 가족 분께서 직접신청(신분증지참)
- 신청장소 : 읍 · 면 · 동주민센터
- 매장 및 화장은 사전에 예약(전화 또는 방문)하셔야 하며,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 하여야 매장 및 화장이 가능합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승화원(화장장), 추모관(납골당)
 -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자 또는 본적이 군산인 자
 - 화장인 경우 인접지역(서천군) 거주자 가능

■ 구비서류

신청자	가족 (신청자 신분증 지참)
매장	신청서,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화장	신청서,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납골	화장필증(화장장발급), 신고인 신분증
개장	신청서, 분묘에 안치된 자와 신고인과의 관계증명, 신고인 신분증

■ 이용요금

- 공원묘지사용요금

구분	계	사용료	관리료
1묘당(단위:원)	500,000	445,000	55,000

● 승화원 사용요금

기 준	구 분	금 액 (원)			비 고
		관내(군산시)	관 외(도내)	도 외	
1건당	15세 이상	60,000	300,000	500,000	
	15세 미만	45,000	150,000	300,000	
	개장유골	30,000	150,000	300,000	
	사산오물	15,000	70,000	150,000	
1kg 당	적출물	1,500	5,000	10,000	

※ 다만, 서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에 한하여 도내요금을 적용한다.

● 추모관 사용요금

기 준	계	사용료	관리 수수료	비 고
1건당(단위:원)	100,000	73,000	27,000	

■ 궁금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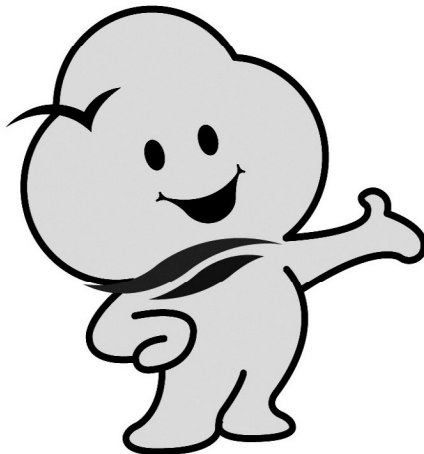
- 문의처 : 복지지원과 ☎ 454-6159, 6160
군산시 승화원 ☎ 453-4055

2013 알기쉬운
사회복지서비스

길라잡이

사회복지 서비스

【 여성아동복지과 분야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
------	------------------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모 또는 부, 조부모 등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13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충족한 자
- 사업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선정절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절차와 동일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 한부모 가정중 12세 미만의 아동('01. 1. 1이후 출생한 아동)
 - ▶ 지원금액 : 1인당 7만원/월
- 추가 아동양육비
 - ▶ 저소득 조손가정, 만 25세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이하 아동
 -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월
- 복지자금 대여
 - ▶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
 - ▶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연 이율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자립자금 대여
 - ▶ 자립금 : 자영업자에게 사업비 지원 2,000천원/세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 ▶ 모자보호시설 : 1개소(신광모자원)
 - ▶ 자립원시설 : 1개소(자립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국민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월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7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8만원만 지급)
* 단, 국민기초수급권자가구의 아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중·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년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수급자 제외)
- ▶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월

■ **처리절차**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0-3214, 450-3214

건강가정지원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
------	------------------

■ 사업목적

- 가정의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향상시키기 위해 가족단위 상담 및 교육, 문화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화롭고 양성평등한 가정문화 조성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군산시민 누구나
- 이용시간 : 매주 월 ~ 금, 09:00 ~ 18:00
- 장 소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구 수송동사무소)

■ 사업내용

- 가족상담사업
 - ▶ 개인상담, 협의이혼상담, 위기가정가족상담, 생애주기별 집단상담 등
- 가족교육사업
 - ▶ 찾아가는 남성대상교육, 어린이경제교육, 청소년가족친화력증진교육,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교육, 예비부부학교, 중년기부부교육, 영유아기 자녀양육교실 등
- 가족문화사업
 - ▶ 가족사랑의날, 보호관찰청소년문화치유프로그램, 찾아가는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과학교실 등
- 가족돌봄나눔사업
 - ▶ 모두가족봉사단, 아버지와자녀토요돌봄, 초등학생비전찾기프로그램 등
- 다양한가족지원사업
 - ▶ 장애가정지원서비스, 군인가족지원서비스, 수용자가족지원서비스 등
- 지역사회연계사업
 - ▶ 사업보고대회, 지역사회협의체, 복지평생학습엑스포, 청소년성문화축제 등

■ **궁금한 사항** : 여성아동복지과 ☎454-3213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443-5300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
-------------	------------------

■ 사업목적

-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부담 경감 지원

■ 사업개요

- 신청기간/ 이용대상 : 연중, 0세(3개월) ~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
- 신청장소 :
 - 정부지원대상자(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나,다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정부미지원가정(본인부담가정, 시간제“라”형) :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제출서류 :
 - 읍면동주민센터(정부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정부지원자격판정증빙자료(취업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지원내용

구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대상	만3개월 ~ 만 12세 아동	만3개월 ~ 12개월 이하 영아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 보육시설 및 학교 등 · 하원 서비스 등	·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정부 지원 요건	아동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가구소득, 자녀 양육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충족시 정부지원 가능, (미충족시 시간제 라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청 이용)	아동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가구소득, 자녀양육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충족시 정부지원 가능, 미충족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불가																																																		
지원 시간	한부모·맞벌이·다자녀가정·기타양육공백가정 정부지원 연간 480시간 이내	한부모·맞벌이·다자녀가정·기타양육공백가정 정부지원 월 120시간 ~ 200시간 지원																																																		
이용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유형</th> <th>가형</th> <th>나형</th> <th>다형</th> <th>라형</th> </tr> <tr> <td>지원기준 (4인 기준)</td> <td>~237만원</td> <td>237만원 ~332만원</td> <td>332만원 ~474만원</td> <td>474만원 초과</td> </tr> <tr> <td>이용요금</td> <td colspan="4">시간당 5천원</td> </tr> <tr> <td>정부지원</td> <td>4천원</td> <td>2천원</td> <td>1천원</td> <td>-</td> </tr> <tr> <td>본인부담</td> <td>1천원</td> <td>3천원</td> <td>4천원</td> <td>5천원</td> </tr> </table>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지원기준 (4인 기준)	~237만원	237만원 ~332만원	332만원 ~474만원	474만원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4천원	2천원	1천원	-	본인부담	1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유형</th> <th>가형</th> <th>나형</th> <th>다형</th> <th>라형</th> </tr> <tr> <td>지원기준 (4인 기준)</td> <td>~237만원</td> <td>237만원 ~332만원</td> <td>332만원 ~474만원</td> <td>474만원 초과</td> </tr> <tr> <td>이용요금</td> <td colspan="4">월 100만원</td> </tr> <tr> <td>정부지원</td> <td>70만원</td> <td>60만원</td> <td>50만원</td> <td>40만원</td> </tr> <tr> <td>본인부담</td> <td>30만원</td> <td>40만원</td> <td>50만원</td> <td>60만원</td> </tr> </table>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지원기준 (4인 기준)	~237만원	237만원 ~332만원	332만원 ~474만원	474만원 초과	이용요금	월 100만원				정부지원	7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본인부담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지원기준 (4인 기준)	~237만원	237만원 ~332만원	332만원 ~474만원	474만원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4천원	2천원	1천원	-																																															
본인부담	1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지원기준 (4인 기준)	~237만원	237만원 ~332만원	332만원 ~474만원	474만원 초과																																																
이용요금	월 100만원																																																			
정부지원	70만원	60만원	50만원	40만원																																																
본인부담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1시간기준(1회 2시간이상 가능)				200시간 기준(1일 최소 6시간이상 가능)																																															
유의 사항	※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평일 9시~17시) 및 유치원 이용시간(평일 9~14시)/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정부지원 불가				※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포함), 유아학비, 보육료, 시간제아이돌봄 정부지원받는 아동 종일제돌봄 정부 지원 중복 불가																																															

궁금한 사항 : 여성아동복지과 ☎ 454-3213,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443-2513~4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

■ 사업목적

- 어린이집·유치원을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이용하지 않는 만0 ~ 5세 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지원기간 : 수당 신청일 현재 만5세이하 취학전 아동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관련자료

■ 지원내용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 ▶ 지원금액 : 연령에 따른 차등지원 10만원~20만원/1인,월
 - ▶ 지원일자 : 매월 25일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4-3224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
------	------------------

■ 사업목적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약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포함) 이용하지않는 취약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등록 장애아동(장애아동과 장애등급은 무관)
- 지원기간 : 수당 신청일 현재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관련자료

■ 지원내용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지원금액 : 1인 10만원~20만원/월
 - ▶ 지원일자 : 매월 25일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4-3224

보육료 지원 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0~5세 : 소득수준 무관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지원기준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13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기 준 일 자
만 0세아	'12. 01. 01 이후 출생
만 1세아	'11. 01. 01 ~ '11. 12. 31
만 2세아	'10. 01. 01 ~ '10. 12. 31
만 3세아	'09. 01. 01 ~ '09. 12. 31
만 4세아	'08. 01. 01 ~ '08. 12. 31
만 5세아	'07. 01. 01 ~ '0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06. 01. 01 ~ '06. 12. 31

- 보육료 지원금액

연령	정부지원단가	지원기준	지원시기
만0세	394,000	소득수준 무관	2013 3. 1부터
만1세	347,000		
만2세	286,000		
만3세	220,000		
만4세	220,000		
만5세	220,000		

궁금한 사항 여성아동복지과 ☎454-3222~3225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운영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
------	------------------

■ 사업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기존보육시간(07:30~19:30)내에 귀가 할수 없는 아동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부부 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함

■ 사업개요

- 지정현황 : 시간연장 보육시설 32개소 지정 (불임 사회복지시설현황 참조)
- 이용대상 : 주간보육시설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이용기준 : 기존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토요일, 15:30~24:00)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기준 : 시간연장 운영시설 인건비 - 교사1인당 120만원/월

■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단가 : 최대 1시간당 2,700원, 매월 최대 60시간 162,000원 지원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4~3224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
------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다문화 가구는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4-3222~3225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계

■ 사업목적

-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에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안정적인 생활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지원금(부가급여) : 월 12만원/인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월 12만원/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비
 - ▶ 김장비 : 10만원/년(10월)
 - ▶ 장류비 : 7만원/년(4월)
 - ▶ 방과후 간식비 (인/1000원) - 180일 기준
 - ▶ 제수비 : 10만원(부모사망에 따른 기일이 있는 달 지급)/년
 - ▶ 대학입학금 : 1회 2백만원(대학입학과 동시에 지원)/인
 - ▶ 현장체험활동 : 2회/초등학교 3만원, 중학교 4만원, 고등학교 5만원/인
-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 : 1회 30만원/인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4-3232/3233

입양 아동 지원 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계

■ 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여성복지과 아동복지계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입양사실확인서(입양전문기관 발급), 통장(양부모)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지원대상 : 13세이전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
 - ▶ 지원금액 : 월 15만원/인
- 입양가정 양육비
 - ▶ 지원대상 : 입양가정아동으로 '05년 이후 입양한 아동
 -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입양 신청일로부터 3년간)/인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 ▶ 지원대상 : 장애등록이 되어 있거나 선천적 요인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가정
 - ▶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아동 (1-2급) - 월 627천원/인
경증(3~6급) 및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월 551,000원/인
 -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 본인 부담한 의료비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4-3232/3233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계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마련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8세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CDA 적립금 사용계획서, 신분증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0 ~ 만 18세 미만까지
- 지원내용
 - ▶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며 국가가 매칭펀드로 월 3만원 내에서 지원
 - ▶ 기본 매칭 3만원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7만원(연간 564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 추가 적립액에 대하여는 국가 매칭은 없음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4-3232/3233

아 동 급 식 지 원 사 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계

■ 사업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 제공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정 아동
 - ▶ 보호자가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가출 등으로 보호자 부재한 가구의 아동
 -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아동

● 급식전달 방법

-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
- ▶ 우리시의 경우 아동급식 위원회의 심의회를 통하여 일괄 부식지원

●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기준

- ▶ 교육청에서 각급학교 담임교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 ▶ 지자체에서는 급식필요아동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1인 1식 3,000원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4-3232/3233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아동

○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 주 대상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②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③ 기타 지자체장 및 지역사회(학교장 추천)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공되는 서비스

○ 급식제공, 학습지도,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 및 아동상담 등

이용절차

전화(방문) 상담 후 이용 신청
신청인 → 지역아동센터



적격 심사/서비스 제공
지역 아동센터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4-3232

드림스타트 센터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계

■ 사업목적

- 공적 전달체계로 취약지역 집중관리체계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 복지, 보육 협력·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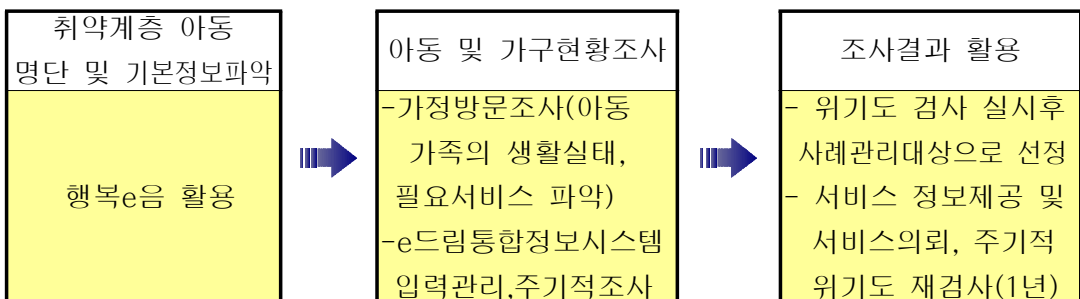
■ 신청대상/ 신청장소

- 취약지역 (나운2, 수송, 삼학, 신평동)에 거주하는 0세 (임산부 포함) ~ 만12세 미만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 신청장소 : 군산시 드림스타트센터

■ 제공되는 서비스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아동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실시
- 필수 서비스 : 건강검진 및 예방, 기초학습, 사회정서, 심리행동, 보호, 부모교육, 부모지원서비스(총 7종)
- 선택 서비스 : 건강관리, 학습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가족지원 등

■ 처리절차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 450-4341, 드림스타트센터 ☎ 468-5591 / 5592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시소와그네)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계

■ 사업목적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군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건강·복지·교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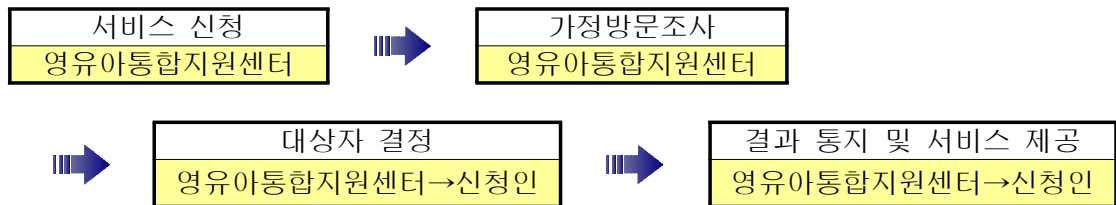
■ 신청대상/ 신청장소

- 군산시의 도움이 필요한 0세부터 만5세까지의 저소득층 영유아
- 신청장소 : 군산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 제공되는 서비스

- 영유아사업 : 건강증진, 발달단계별지도, 취학준비, 위기개입/사례관리
장남감대여, 문화체험
- 가족사업 : 양육지원, 부모교육, 고용·자활연계, 주거환경개선
위기가정 맞춤형지원, 사례관리
- 지역사회조직사업 : 거점기관 구축 및 통합지원, 자원개발, 지역사회복지
자원홍보 등

■ 처리절차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군산영유아통합지원센터(시소와 그네) ☎445-5640 / 5641
여성아동복지과 ☎ 450-4341, 드림스타트센터 ☎468-5591 / 5592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운영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교육계

■ 사업목적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보호시설 · 의료·법률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방지 도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상 담 료 : 무료
- 이용방법 : 전화상담, 상담소 방문
- 이용대상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 여성 및 가족

■ 지원내용

-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 지원
 - ▶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상담 지원
 - ▶ 가정폭력피해자 법적연계지원, 가족문제 상담 서비스 제공(부부, 자녀문제 등)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운영
 - ▶ 의료지원,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심신캠프 운영 등
-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운영현황 및 문의(5개소)

구분	상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상담내용
가정 폭력	가정 법률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중앙로1가12-7	442-1560	- 가정폭력 - 이혼, 부부갈등 - 법률상담 - 보호시설연계 등
	군산 여성의 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월명동18-14	445-2285	
	한국 가정폭력상담소	조촌동878-8	452-4600	
성폭력	군산 성폭력상담소	월명동18-14	442-1570	- 성폭력(성희롱) - 법률상담 - 보호시설연계 등
	로템성폭력상담소	개복동 12-12	445-9192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0-6578, 6579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교육계
------	------------------

■ 사업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도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대상 :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가족
- 이용경로
 - ▶ 본인입소 희망 및 동의하는 경우
 - ▶ 전화 1366 또는 경찰서등과의 연계 입소 등
- 사업내용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 지원, 자활자립 지원

■ 지원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운영
 - ▶ 의료지원,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심신캠프 운영 등
 -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 및 취업 정보의 제공

■ 보호시설 : 2개소 (가정폭력 1, 성폭력)

구분	시설명	보호기간	비 고
가정폭력	성가정의집	- 단기보호 - 임시보호	
성폭력	은혜의 쉼터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0-6578, 6579

여성 사회 대학 운영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여성교육계
-------------	------------------

■ 사업목적

- 자격증취득, 직업훈련, 정보화, 건강, 교양, 한글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이용방법 : 여성교육장 방문 및 전화접수
- 이용대상 : 일반여성 중 교육 희망자

■ 교육일정

- 교육일정 및 내용

구 분	상 반 기	방 학 특 강	하 반 기
교육 일정	매년 3월 ~ 7월(4개월간)	여름 7월 ~ 8월(1개월간) 겨울 11월 ~ 12월(1개월간)	매년 9월 ~ 12월(4개월간)
교육 내용	자격증취득, 직업훈련, 정보화, 건강, 교양 (5개과정 30여개 과목)		

※ 일정과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42-1203, 450-6578, 657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

■ 사업목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으로서 긴급 구조, 자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찾아가는 상담(청소년 동반자)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상 담 료 : 무료
- 이용방법 : 전화상담, 상담소 방문, 찾아가는 상담
- 위 치 : 군산시 동리2길 7(삼학동)
- 이용대상 : 군산시 청소년 및 학부모

■ 지원내용

- 상 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
- 각종 심리검사 : 성격유형, MMPI(다면적 인성검사), 진로탐색, 학습유형 SCT(문장완성검사), 인터넷 중독자가 진단검사 등
-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 ▶ 인터넷 사용근절, 부모교육, 비행예방교육, 품성계발 ,또래상담프로그램 등
-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8-2870/2878
여성아동복지과 ☎450-3241/324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서비스 대상 :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 제공되는 서비스 : 일대일 맞춤형 상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CYS-Net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8-2870, 2878)
- 운영주체 :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CYS-Net 서비스 단계

- 위기청소년 발견 및 의뢰
 - ▶ 청소년전화 1388 및 연계 기관으로부터 의뢰 등을 통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 위기정도 판정, 맞춤서비스 계획
 - ▶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의 위기 정도 평가 적절한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 연계망을 통해 서비스 제공



[CYS-Net 서비스 전달 체계]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8-2870 / 2878
여성아동복지과 ☎454-3241 / 324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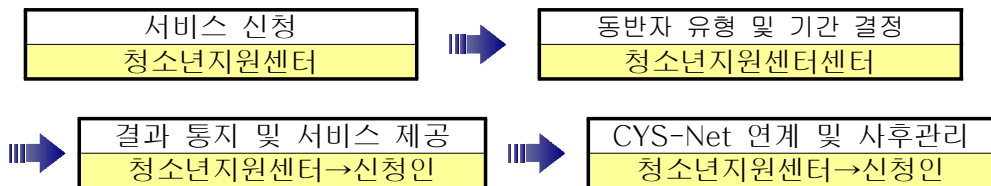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청소년 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문제유형 및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자원연계 및 지원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업개요

- 서비스 대상 : 위기청소년
 - ▶ 위기청소년이란? 일련의 개인·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
- 제공되는 서비스 : 일대일 상담 및 필요 시 CYS-Net과 연계하여 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8-2870, 2878)
- 운영주체 :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비스절차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8-2870 / 2878
여성아동복지과 ☎454-3241 / 324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

■ 사업목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청소년동아리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시 양안로 133(조촌동)
- 이용대상 : 청소년(9세~24세) 및 시민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주체 : 군산YMCA

■ 이용시설

● 이용시설

층 별	시 설 내 역
지상1층	사무실/관장실, 조촌작은도서관 - 191㎡(58평)
지상2층	다목적/영화관람실, 동아리실, 노래연습실, 영상창작실, 다용도활용실, 소회의실, 샤워실
옥 상	휴게시설
야 외	풋살장

- 프로그램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동아리 활동, 문화교육프로그램, 청소년 축제, 청소년 문화공간 지원 등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청소년문화의집 ☎451-7941/7942
여성아동복지과 ☎454-3241/3242

청소년수련관 운영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

■ 사업목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각종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청소년동아리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위 치 :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75(송풍동)
- 이용대상 : 청소년(9세~24세) 및 시민
- 이용시간 : 연중
- 운영주체 : 군산YMCA

■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 이용시설 : 식당, 체육관, 디스코텍, 숙소, 강당, 음악감상실, 강의실, 세미나실, 헬스장, 연회장, 정보검색실, 실내골프연습장, 동아리실 등
- 주요프로그램 : 교양문화프로그램,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동아리 운영
- H·C(Holostic Creative) 자연학교
 - ▶ 위탁교육 : · 초,중,고등학생 H·C(Holostic Creative)자연학교
· 창의적 자율활동 일일체험학습, 녹색문화해설교육, 전문강사초청(특강)
 - ▶ 자체교육 : 대학생 O.T 및 M.T/단체 및 기업체 세미나/간부수련, 기타 기관 및 단체행사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청소년수련관 ☎ 461-4166
여성아동복지과 ☎ 454-3241 / 3242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 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75(송풍동) 청소년수련관 내
- 이용대상 : 유치원, 초중고생, 사회복지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부모, 교사, 전문가
- 이 용 료 : 무료
- 이용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이용방법 : 시설견학은 수시, 체험관 프로그램은 예약 후 이용가능

■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 이용시설 : 자궁방, 몸 이미지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 프로그램
 - ▶ 체험관성교육 : 대상별 성교육, 교사 및 전문가 성교육,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성교육
 - ▶ 찾아가는 성교육 : 학교방문, 기관방문, 이동 성교육체험부스운영 등
 - ▶ 특별기획 프로그램 : 테마가 있는 성교육, 또래성교육전문가 양성 등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청소년성문화센터 ☎463-1230
여성아동복지과 ☎454-3241/3242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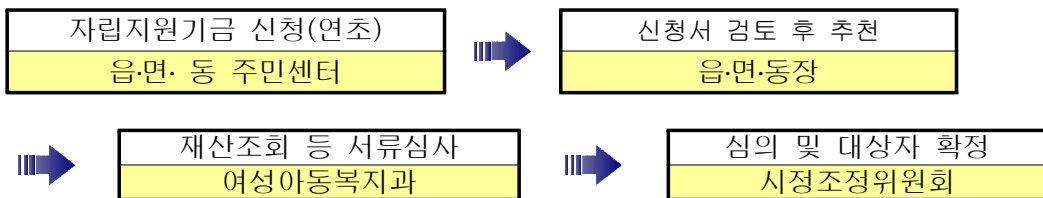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불우가정 및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불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의 청소년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청소년
- 지원종류 : 학비(진학) 지원금, 직업훈련 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 지원액
 - ▶ 학자(진학)지원금 : 중·고등학교 입학금과 공납금(수업료 등) 전액 또는 그 일부
 - ▶ 직업훈련지원 : 노동부 직업훈련원 또는 관인 직업훈련원에서 기술 습득 및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사설학원 수강료 전액 또는 그 일부
 - ▶ 자립정착 지원금 : 1인당 100만원이내의 사업비

■ 처리절차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 454-3241/3242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다문화정책계
------	-------------------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 통·번역지원사업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지원내용

● 기본 교육

▶ 한국어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 5단계 수준별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
- 집합교육 : 첫걸음반부터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까지 운영

▶ 가족통합교육 : 가족교육, 배우자/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다문화이해교육

▶ 홍보 및 운영 : 다문화봉사단,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교육

▶ 취·창업지원, 개인 및 가족상담 등

- 마을학당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 그룹 및 개별 교육 진행
- 방문교육서비스 :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지도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언어평가, 언어교육, 상담 및 부모교육
- 맞춤형 자녀교육 서비스 : 부모 역량 강화, 자녀 이중 언어 교육, 부모와 자녀의 상호 작용 증진 지원
- 통·번역지원서비스 : 입국초기 상담, 기관 이용 시 통번역 지원 등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 454-3253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43-0053

자녀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담당부서

여성아동복지과
다문화정책계

■ 사업목적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장려 일환으로 시민들에 대한 출산의 중요성 동기 부여

■ 사업개요

- 대 상 : 군산시에서 출생신고한 가정
- 내 용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금액	10만원	30만원	100만원	300만원

※ 단, 넷째아 이상에 대하여 장려금 50%는 신청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이 되는 달 지급하며, 이후 지원대상에 제외될 때는 잔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대상기준/처리절차

- 지원 기준
 - ▶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 2013. 1. 1일 이후 출생아
 - ▶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 됨.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시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신청서, 부, 모 또는 본인명의로 통장사본
- 신청기한 : 출생신고시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 신청

■ 궁금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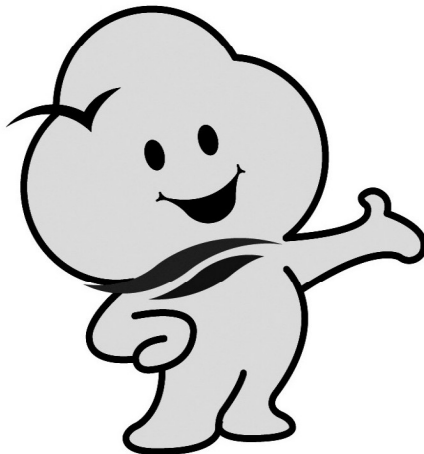
- 문의처 : 여성아동복지과 ☎454-3252

2013 알기쉬운
사회복지서비스

길라잡이

사회복지 서비스

【 기타분야 】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예술진흥계

■ 사업목적

-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향유 기회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3년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
- 사업기간 : 2013년 3월 ~ 2014년 1월말
- 사업내용 : 저소득층 문화공연, 영화, 음반, 전시 관람료 지원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문화카드 선착순 발급 (1인당 연간 5만원)
 - (기본)가구당 1매, - (추가)청소년(만10세~19세)개인카드 발급
- ※만 10~19세(1994. 1. 1~2003. 12. 31 출생자/2013년 기준)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추가)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카드 발급(미신고시설 제외)

■ 신청방법

- 재충전(2013년 3월4일부터 선착순) - 각 주민센터(신청서제출 및 본인확인)
- 신규발급(2013년3월18일부터 선착순) 각 주민센터 및
- 온라인신청(www.문화이용권.kr)

■ 문의사항

- 문화체육과 ☎063-454-3283, 각 읍·면·동 주민센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구 명칭: 스포츠강좌 바우처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계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 내 유소년 및 청소년 **만 5~19세**
(1994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규 신청자 우선 순위
- 신청기간 : 2013. 1. 7 ~ 1. 11 (매년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수급권자 및 차상위의 만7세~만19세 자녀) 명의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기간 동안 신청

■ 지원내용

- 월단위 수강 형태의 스포츠강좌 월 최대 70,000원 ('11년 대비 1만원 인상) 지원
※ 스포츠용품바우처는 '12년부터 폐지됨
- 제한사항
 - 생활·문화강좌 사용 제외
(예) 영어, 음악, 서예, 한자, 풍물, 레고 등의 강좌
 - 일일 스포츠입장 지원 불가
 - 한 달에 **1인 1강좌 수강 원칙**(1인 2개 강좌 지원 불가)

■ 문의사항

- 문화체육과 ☎063-454-3294, 각 읍·면·동주민센터

여행이용권(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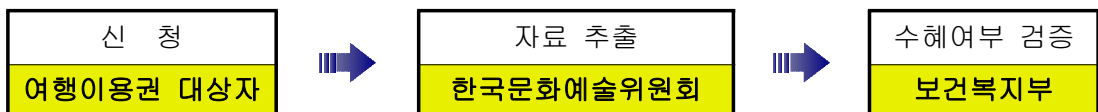
■ 사업목적

-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 신청기간
 - 개별, 단체 : 2013. 3. 4 ~ 3. 22 (19일간)
 - 1차 기 획 : 2013. 5월중 (별도 공고)
 - 2차 기 획 : 2013. 12월중 (11.30기준 여행이용권 잔여분)
- 신청장소
 - 개별 : 여행이용권 홈페이지 (www.tvoucher.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 단체 : 여행이용권 홈페이지 (www.tvoucher.kr)
- 신청서류
 - 개별 : 본인부담경감증명서 (대상자인 경우) → 읍면동 제출
 - 단체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본인부담경감증명서 (대상자인 경우) → 파일업로드

■ 처리절차





지원내용

● 지원금

- 개별 : 1인당 15만원 (가족동반시 최대 30만원)
- 단체 : 1인당 15만원 (승인된 인원수에 따라)

● 카드사용처

- 여행사 연계시 : 신한카드에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 판매상품
- 개별 여행시 : 여객선, 고속버스, 렌터카, 국립자원휴양림, 숙박업소,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이용 (신한카드 가맹점)

※ 구체적인 사항은 여행이용권 홈페이지상 상단메뉴 (여행상품안내/여행이용권사용처) 참고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 2012년 여행이용권(개별, 복지시설, 기획)을 이용한자 신청불가

※ 신청후 미사용자도 신청불가

● 문화이용권, 스포츠이용권 수혜자도 신청가능

문의사항

- 시 관광진흥과 (☎063-454-3334), 콜센터(☎1544-3412), 읍·면·동 주민센터

취약계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계

■ 사업목적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가스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노후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리모델링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1월 ~ 3월
- 대 상 자 : **534세대** [국민기초,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1급~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본인부담경감자]
- 사업기간 : 3월 ~ 12월

■ 사업내용

-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개보수 지원
 - 개선내용 : LPG 호스를 금속배관 교체, 퓨즈콕 교체, 안전점검 실시

■ 궁금한 사항 : 지역경제과 454-2712

저 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에너지계
------	---------------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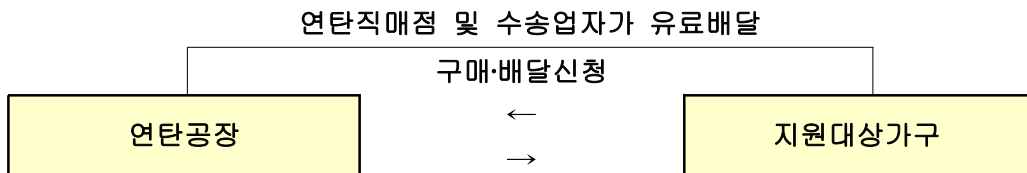
- 연탄쿠폰지원을 통해 가격인상에 대한 차액분 지원으로 저소득층 부담 경감
- 저소득층 연탄지원의 체계적 수행 및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동절기 연탄수요가 있는 9월~12월
-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쿠폰지급

■ 연탄구매 및 배달시스템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소외계층가구 : 연탄직매점 및 연탄 수송업자가 배달료를 받고 배달



■ 궁금한 사항 : 지역경제과 454-2712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담당부서	건 축 과 주거환경개선계
------	------------------

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으로 LH공사 소유주택

신청접수 : 2013. 1 ~ 12월 (년중)

지원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무주택자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계약자 및 예정자
- ◆ 도조례 시행(2010.12.31)전에 기존 장기임대주택입주자 또는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기간

- ◆ 지원기간은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함 (최대 6년)

지원금액 : 호당 20,000천원 한도로 한다.

접수장소 : 군산시청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2층)

신청자수가 공급물량 초과시 대상자 선정기준

- 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면적 (평)	14㎡ (4.2)	26㎡ (7.8)	36㎡ (10.8)	43㎡ (13.0)	46㎡ (13.9)	55㎡ (16.6)

- ② 장애인 가구 :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 ③ 다자녀 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3명이상 자녀

궁금한 사항 : 건축과 454 - 3733~4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담당부서

건축과
주택관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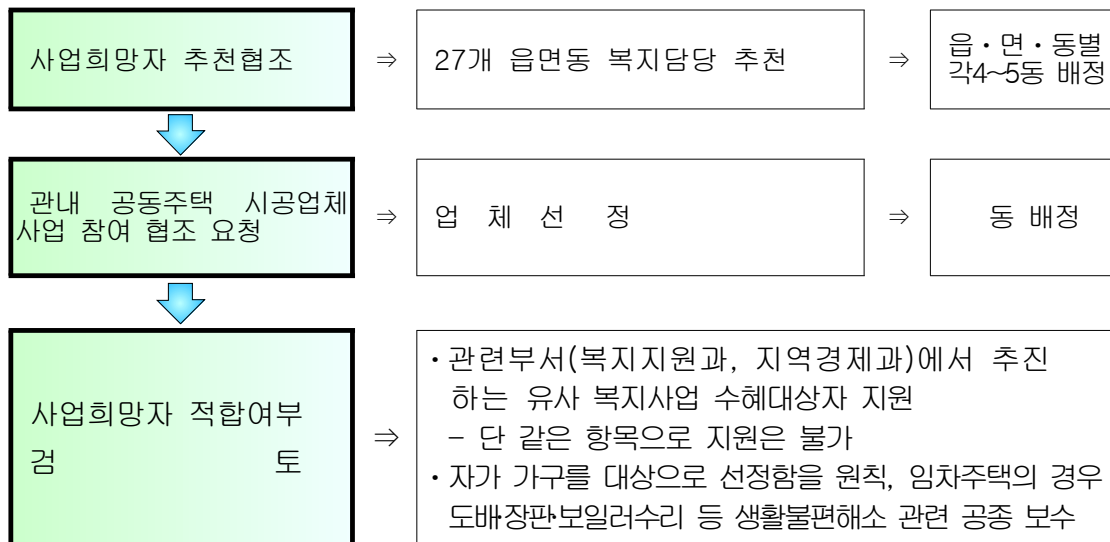
■ 사업목적

불량한 주거환경에서 어렵게 거주하고 있는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택개량으로 주거안정 기여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지붕개량, 벽체부약화장살창호 개보수, 도배장판 등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계층
 - 시행방법 : 관내 건설중인 공동주택 시공업체 위탁시행
- ※ 동당 300만원 한도 지원으로 추가비용은 시공업체 지원시행

■ 추진절차





사업 참여 시공업체
현장소장 간담회 개최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재 및 인력 활용
- 시공현장 부실시공 방지 및 현장안전관리 철저
- 사업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 일정 및 조사방법 등 협의

현장조사 및 주택
실태 파악

⇒

- 현지조사반 운영 : 시공업체 담당자, 건축과, 읍면동 복지담당자
- 대상자 면담, 자기주택 여부, 시공성 등 종합 판단 보수범위결정
- 주택 실태파악으로 우선순위 결정
- 사업대상주택 확정(140동) /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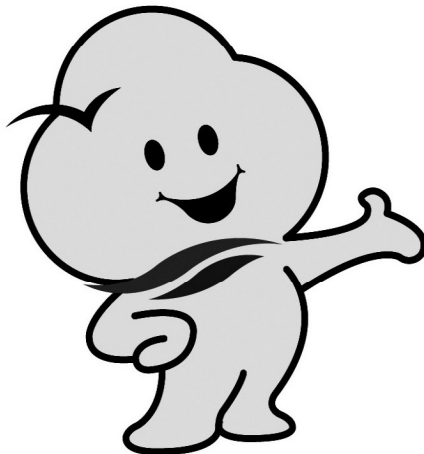
공사착수

2013 알기쉬운
사회복지서비스

길라잡이

보건 서비스

【 보건소 분야 】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부서	보건소 방문보건계
------	--------------

■ 사업목적

-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재활, 영양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관리, 합병증예방, 건강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운영형태** : 방문 추진인력 : **46명**(1인 1동 지역담당제)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신청서류**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지원내용

- **맞춤형 건강관리(가구별 ·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등)**
 - ▶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 영유아, 임산부, 성인, 노인 에 대한 정기적 건강관리
 - ▶ 만성질환자관리 :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재활, 재가암환자 등 건강관리
 - ▶ 방문간호서비스 : 혈압·혈당·콜레스테롤측정, 투약·식이·운동관리, 만성질환교육 등
 - ▶ 집단시설 방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 ▶ 지역사회 자원과 필요한 서비스연계
(목욕, 밀반찬지원, 이미용,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계 ☎460-3286, 3274~3277, 3287~3291.

영양 플러스사업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계

■ 사업목적

- 영양적 측면의 취약 대상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지속적인 영양관리로 평생건강의 기초 마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 선정기준
 - ▶ 생리학적 기준(임산부 및 영유아)
 - ▶ 소득기준(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 ▶ 영양위험기준(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 ※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만 대상자로 선정
- 신청기간 : 상 하반기 2회(대상자 퇴락시 추가선정)
단, 재등록은 퇴락후 12개월 경과, 1회에 한해 가능함.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계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임산부수첩(임산부),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직장가입자)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 지원내용

- 보충식품 공급
 - ▶ 대상자 패키지별(6종) 보충식품 월 2회 지원
 - ▶ 최저생계비 120% ~ 200% 대상자(지원 보충식품비의 10%자부담 적용)
-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및 상담
 - ▶ 영유아·임산부, 출산·수유부 특성에 맞는 월 1회 의무교육실시 및 조리실습, 개인상담, 가정방문
 - ※ 자격기간 중 3번 이상 교육 불참 시 퇴락 처리
(단 연락 없이 연속 2회 교육 불참 시는 바로 퇴락 처리)
- 사업대상자 평가 : 사업 전 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보건소 ☎460-3280, 450-3281

평생치아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계

■ 사업목적

-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 제공으로 구강건강 형평성 확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사회복지(보육, 양로)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1-3급),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임산부, 영유아
- 사업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계
- 신청서류 : 관련신분증(의료급여증 또는 주민등록증 지참)

■ 지원내용

-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 : 초등학교 1-3학년
- 어르신 무료 틀니사업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 5개교
- 사회복지시설(양로· 보육 · 장애시설)구강보건사업 : 15개소
- 장애인(1-3급)·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지역아동센터 구강보건사업 : 무료진료
- 불소용액양치사업 : 전시민 무료배부
- 치카푸카 양치체험교실 : 전시민, 매주금요일 14~15시, 16~17시
- 임산부 : 임신2기(13~26주)자 무료스켈링사업
- 유아 불소도포사업 : 만3~6세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계 ☎460-3242 460-3264

모바일 클리닉 운영

담당부서	보 건 소 이동진료업무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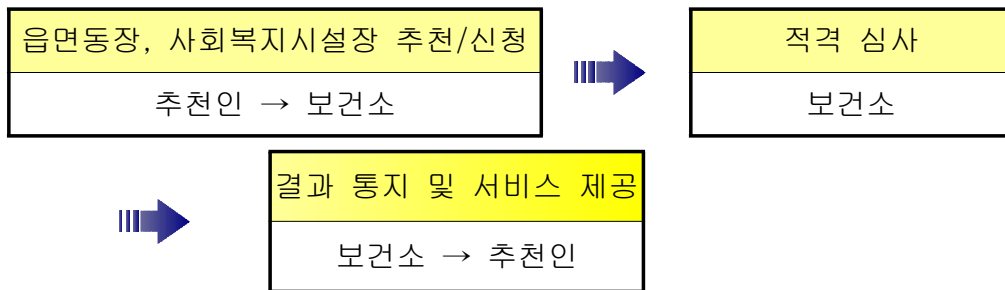
■ 사업목적

시민이 다수 참여하는 대형 행사와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내용

- 대형 · 국제 주요행사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취약지역 내과·한방 및 치과 진료
- 농촌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1~3학년)
- 사회복지시설: 정다운 요양원, 성모 양로원

■ 신청절차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보건소 이동진료업무팀 ☎460-3238

아토피 예방사업

담당부서	보건소 이동진료업무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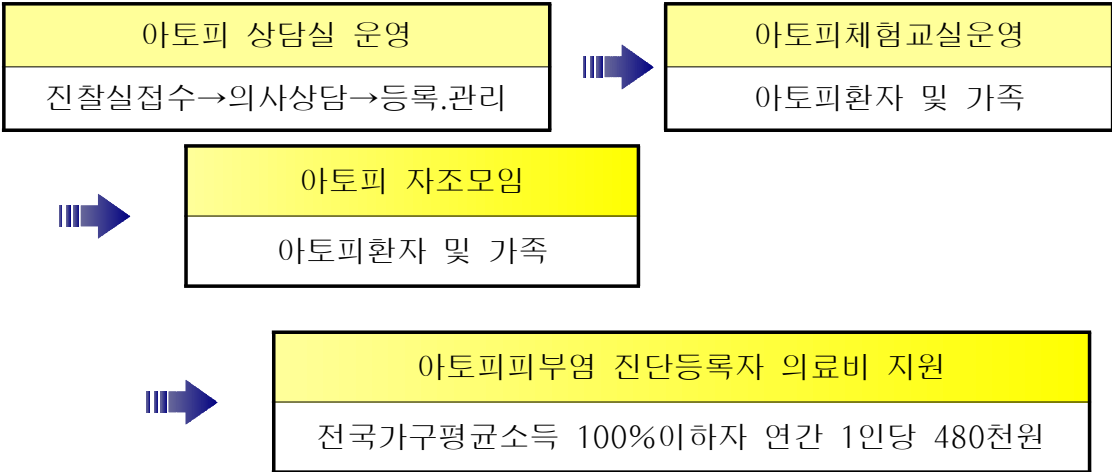
■ 사업목적

아토피 극복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 및 미래의 사회, 경제적 부담 감소

■ 사업내용

- 아토피 무료 상담실 운영
- 아토피 체험교실 운영
- 아토피 치료비 지원
- 아토피 자조 모임 및 홍보 교육

■ 신청절차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보건소 이동검진팀 ☎460-323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보건소
방문보건계

■ 사업목적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노인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100%이하)
- 사업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보건계
- 신청서류 : 치매진단서, 건강보험카드, 통장(환자, 보호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치매 치료관리를 위해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지원수준
 - ▶ 30,000원 이내/월, 360,000원/년
- '13년에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를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분기별 지급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계 ☎460-3211, 460-3236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보건소 방문보건계
------	--------------

■ 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수시접수)
-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지원대상 :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만성신부전등 134종)에 해당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포함)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 되고 있지 않은 36종의 질환에 해당하는 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유코다당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젠축적병(품폐병 등), 샤르코-마리-투스병, 길랑-바레증후군 등
 - ▶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대여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유코다당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젠축적병(품폐병),샤르코-마리-투스 병, 길랑바레증후군 등 환자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 선정기준
 -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신청서류

- ▶ 건강보험료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의무자포함)
- ▶ 소득·재산관계서류(전, 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 ▶ 자동차등록증
- ▶ 신청자의 통장
- ▶ 대출, 부채 증명서류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의료비

-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유코다당증·부신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젠 축적병(포페병 등), 샤르코-마리-투스 병, 길랑-바레 증후군환자
-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 ▶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 지원 제외 항목

-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계 ☎460-3236

군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담당부서

보 건 소
방문보건계

■ 사업목적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연계체계구축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군산시민이 정신건강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한다

■ 사업대상

- 군산시에 거주하는 급·만성정신장애인과 가족
- 지역내외 정신보건관련 요원
- 군산시민 (우울, 스트레스, 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담)

■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직업재활 연계
-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위기·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지역주민 및 관련요원 정신건강교육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조기검진사업 및 조기중재사업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사업
-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군산시보건소 ☎ 460-3237, 마음건강클리닉 ☎ 445-9191
군산시정신보건센터 ☎ 451-0363, 451-0361

군산시 알코올상담센터

담당부서

보건소
방문보건계

■ 사업목적

- 인구 20만 이상 지역(시·구)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 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알코올질환자 관리체제와 음주폐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주 5일 (월~금,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이 용 료 : 무료
- 이용방법 : 전화상담, 센터 방문, 가정방문
- 위 치 : 군산시 지곡동 557-7 2층
- 이용대상 : 지역내 알코올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지원내용

- 상 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
- 각종 심리검사 : MMPI, MBTI, HTP, K-WISK, 사회성숙도검사 등
- 알코올중독자관리사업 : 사례관리,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 자원환자관리
- 알코올중독자가족지원사업 :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사례관리, 위기관리, 가족모임
-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아동청소년, 직장인 음주폐해,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 지역법무연계·협력, 자원봉사관리·운영, 응급지원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군산시 보건소 ☎ 460-3237
군산시알코올상담센터 464-0061~3, 010-6618-0061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보건팀
------	--------------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간의 서비스 이용 가능
 - ▶ 단태아 12일, 쌍태아 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24일
- 본인부담금
 - ▶ 희망 이용 업체별 상이(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 나형 구분)
- 서비스 내용
 - ▶ 산모의 영양관리(식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 신생아 건강관리,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등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팀 ☎460-3244, 460-3245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보건계

■ 사업목적

-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 치료율 제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18세미만의 소아암환자
- 선정기준 :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이상 전체 암환자
 - ▶ 건강보험가입자 중 '13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5대암)
 - ▶ 폐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부과기준 적합자
 - ▶ 18세미만의 소아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및 재산기준이내에 속하는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계
- 제출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암검진 결과통보서(해당자), 보험료 납입확인서(해당자),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해당자)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18세 이상 암환자)
 - ▶ 의료기관 치료비 중 요양급여의 환자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원
 - ▶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 진료비 중 요양급여의 환자부담금 : 연간 최대 200만원
- 폐암 환자(원발암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100만원 정액지원, 비급여항목 의료비 100만원
 - ▶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100만원 정액지원
- 소아암 환자(18세미만의 소아암환자)
 -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계 ☎460-3268, 3239

국가 필수예방접종 완전 무료화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보건팀

■ 사업목적

- 국가 필수 예방접종 완전 무료화를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접종률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가계부담 감소와 질병예방을 도모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거주 만 12세 이하 아동('00.1.1.이후 출생자)
- 지원범위 : 필수예방접종 11종 접종비용 전액지원('13년도 3월 이후 Hib추가)
- 준비물 : 아기수첩, 주민등록등본(의료기관 처음 방문 시 필요)

■ 지원내용

- 지원백신 11종 : BCG(피내용), B형간염,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뇌수막염)

※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백신(결핵 BCG경피용, 일본뇌염생백신, Hib, 폐구균,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등)은 전액 본인부담

- 지정의료기관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군산시보건소 (<http://health.gunsan.go.kr>)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팀 ☎460-3244,3245

산모 건강관리 사업

담당부서

보건소
모자보건팀

■ 사업목적

-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를 지급하여 임신 중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충족시켜 조산·유산 예방함은 물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을 증진 시키기 위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건소 임신부 등록자
- 지원범위 : 엽산제(만35세 이상), 철분제, 영양제 지급
- 지원장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상담실
- 준비물 : 산모수첩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만 35세 이상 임신부 엽산제 지원(임신 확인 후 3개월까지)
- 철분제 지원 : 임신 20주~ 출산시 까지 철분제지원
- 영양제 지원 : 등록된 임신부에 한해 분만후 2개월까지 지원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팀 ☎ 460-3244, 3245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

■ 사업목적

-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 난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 계층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임신·출산 동기 부여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등 보조 생식술
- 사업량 : 370명
- 지원액 및 횟수
 - ▶ 체외수정 : 1회당 180만원/1~4회
 - ▶ 인공수정 : 1회당 50만원/3회

■ 대상기준/신청서류

- 지원대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
- 제출서류 : 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① 난임 진단서 원본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및 영수증 첨부)
 - ④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궁금한 사항

- 문의처 : 보건소 ☎460-3239, 460-3268

여성건강 및 아동보건관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

■ 사업목적

- 임신, 출산지원, 임신부·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장애발생 예방 및 모유수유율 제고 등을 통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 ▶ 임신부 아동건강관리
 - ▶ 유축기사업
 - ▶ 임신부·수유부 교실 운영

■ 대상기준/처리절차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50% 이하
 - ※ 셋째아 이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 미 숙 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 출생아 보건소장·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 출생아 등 특별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기능장애로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 대상질병 : 주요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
- 출생 후 신생아로 즉시 수술 및 치료 못하면 사망 및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은 질환(선천성이상아)
①식도폐쇄증 ②장폐색증 ③항문직장기형 ④선천성황격막
⑤제대기저부탈장
- 그 외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요한 자

▶ 지원금액

- 미숙아 : 출생시 체중에 따라 1인당 최고 5백만원~10백만원 차등 지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백만원

●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채혈기관 : 보건소, 산·소아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채혈지 공급 : 인구보건복지협회→보건소→채혈기관 또는 검사기관

▶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결과

- 검사기관에서는 1차 검사결과 이상소견 발견시 유선 통보
⇒ 의뢰기관(채혈기관) 및 보호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

▶ 환아지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연 276천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 조제분유 지원

● 유축기 대여사업

▶ 지원대상 : 관내 모유수유중인 수유부 및 임산부

▶ 대여기간

- 모유수유와 관련한 상담 및 유축기 대여 : 2개월 대여

● **임산부 육아교실 및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 기 간 : 2013. 2월 ~ 11월
- ▶ 교육대상 : 관내거주 임산부 및 수유부(기당 20명내외)
- ▶ 교육방법 : 외래강사 및 자체강사
- ▶ 운영횟수 : 총 10기 30회
 - 임산부 출산 육아 교실 : 월2회 4시간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월1회 2시간
- ▶ 임산부 출산 육아교실 교육내용

교육단계	교육내용	강사
1일째	○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소개 ○ 임산부 분만대처법, 영양, 성생활, 구강관리	자체강사 외래강사
2일째	○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필요성 ○ 분만후 바른 건강회복과 모유수유 장려 ○ 유축기 대여	자체강사 외래강사
제공 서비스	○ 임산부 등록 및 영양제공급(철분제) ○ 모자보건수첩 및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 제공 ○ 실습용 수유쿠션 제공	자체강사

- ▶ 신청방법
 - 매월 20일 전까지 방문 및 전화접수(☎460-3244, 3245)
 - 보건소·보건지소 등록 관리시 예약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 조기진단)**

- ▶ 대 상 : 군산시에 주소지를 둔 차상위계층 이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수급권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200% 이하)
- ▶ 신청기간 : 출산 전·후 1개월 이내

▶ 지원방법

- 검사전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쿠폰 수령후 출생 1개월 이내에 지정검사병원에서 검사

▶ 지원기준 : 검사비 1인당 1회 지원

- 자동 유발 이음향방사검사(AOAE) : 10,000원
-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AABR) : 27,000원

▶ 지정 의료기관 : 6개소

▶ 재검 및 재활이 필요한 신생아 연계구축

-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이 나온 경우 : 3월 이내 확진검사 권유
난청 확진시 전문 의료기관 재활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 임신부·아동 건강관리

▶ 지원내용

- 임신부 엽산제·철분제·영양제 지원: 임신후 ~ 출산후 2개월까지

▶ 지원방법

- 모자보건 수첩 지참 후 방문시 임신부 등록 후 지급
- 약전 등에 따른 복용법 및 주의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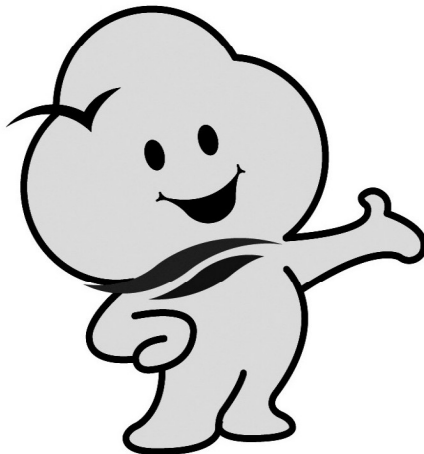
궁금한 사항 : 보건소 ☎460-3244, 460-3245

2013 알기쉬운
사회복지서비스

길라잡이

사회복지 서비스

【 사회복지 상담실 및 콜센터 】



복지인터넷 상담실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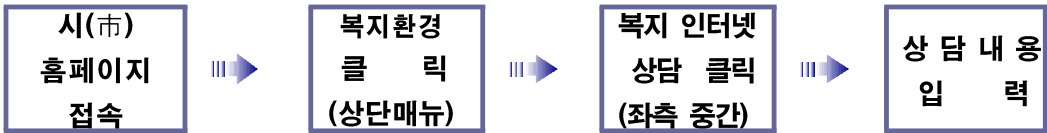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다양한 시민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신속한 상담제공으로 복지만족도 향상
- 저소득층 세대 시민 관심유도와 위기에 처한 시민을 신속한 발굴과 지원연계로 만성적 빈곤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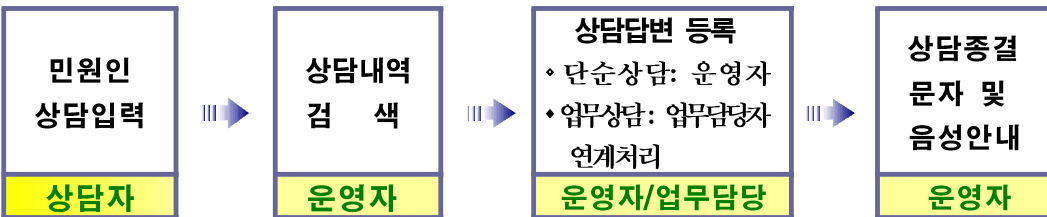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 중
- 상담내용 :
 - ▶ 사회복지 전 분야 관련 문의사항 답변
 - ▶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상담 및 지원연계
 - ▶ 기타 복지시책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 접수
- 상담시간 : 제한없음

■ 접속방법



■ 처리절차



■ 문의사항

- 주민생활지원과 ☎ 454-3063

보건복지 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번)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 사업목적

- 보건복지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 2 9번으로 전화하시면 필요한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상담내용 및 개요

- 상담기간 : 연 중
- 대표전화 : 1 2 9 번
- 상담시간 : 09:00~ 18:00
 - ▶ 학대, 자살, 응급의료 관련 신고상담은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
 - ▶ 휴일에는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 가능한 시간에 전화해 드림
 - ▶ 업무시간 이후에 상담예약을 하시면 상담원 근무가 시작되는 평일 오전 9시 이후에 예약하신 번호로 연락 드림

▶ 민생안정지원

일자리지원, 자영업자생업지원, 실직자지원, 저소득층생계지원, 교육보육지원, 주거지원 등

▶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국민연금, 자활사업, 의사상자, 노숙인 등

▶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법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서비스(바우처), 장애인복지, 아동 복지, 보육정책, 푸드뱅크 등

▶ 건강생활

노인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사, 암환자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한방정책, 혈액정책, 생명윤리, 공공보건, 구강보건,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보건의료인 시험, 의료분쟁, 금연, 영양, 예방접종, 건강보험제도 등

▶ 긴급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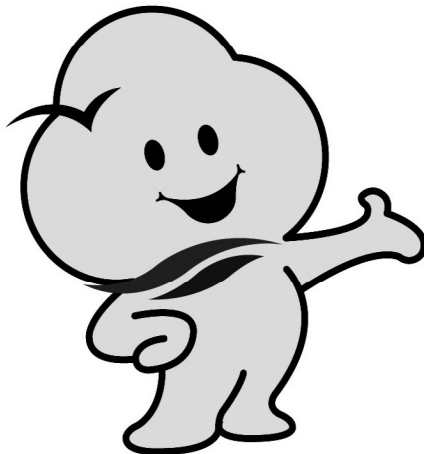
긴급복지 지원(야간/휴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알콜, 응급의료 등

2013 알기쉬운
사회복지서비스

기러잡미

사회복지 서비스

【 자원봉사 ‘나눔과 동행’ 】



자원봉사자 안내

■ ‘자원봉사활동’이란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자아실현을 통해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무보수성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활동입니다.

즉 “자원봉사”는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 이외의 개인이나 공동체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재능·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이다.

■ 자원봉사의 원칙 (특성)

- 무보수성 ○ 자발성 ○ 공익성
- 비영리성 ○ 비정파성 ○ 비종파성

■ 자원봉사의 자세

- 관심있는 일과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활동에 한계를 그어야 한다
- 활동을 점검 및 기록하자
- 알게된 비밀은 반드시 보장한다

■ 자원봉사가 주는 특별한 혜택

-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과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된다.
- 건전한 인격 형성과 숨은 잠재력을 개발 할 수 있고 자기성장의 기회가 된다.
-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 발전 시킬수 있다.
- 새로운 경험을 통해 즐거움과 배움을 얻을 수 있다.
-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의식, 연대의식을 키울 수 있다.

■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역할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수요처 관리
-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 자원봉사자 지원 (보험가입,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

■ 재능나눔 안내

- 참가대상 : 재능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
 - 접 수 처 : (사) 군산시자원봉사센터 (☎451-1365)
- ※ 내가 가진 아주 조그마한 재능이나 지식, 경험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쓰이며 도움을 줄 수 있음.

⇒ 각각의 소중한 재능을 나눔으로써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함

■ 자원봉사 문의 및 연락처

- 문 의 처 :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451-1365), Fax 451-6365
- 홈페이지
 - 군산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 <http://nanum.gunsan.go.kr>
 -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 www.1365.go.kr

자원봉사활동 안내

■ 처음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면

《지정 수요처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1. www.1365.go.kr ⇒ 봉사자 회원가입 ⇒ www.1365.go.kr 에서 원하는 일감을 찾아 자원봉사 신청 ⇒ 수요처에서 봉사자에게 연락 ⇒ 자원봉사 활동
2. www.1365.go.kr ⇒ 봉사자 회원가입 ⇒ <http://nanum.gunsan.go.kr> 자원봉사모집에서 원하는 일감찾기 ⇒ 유선으로 봉사활동 신청 ⇒ 자원봉사 활동

《지정 수요처가 아닌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1. www.1365.go.kr ⇒ 봉사자로 회원가입
2. 자원봉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 제출 ⇒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계획서 확인(수정 등) ⇒ 자원봉사활동 ⇒ 활동후 자원봉사자가 활동결과보고서(사진포함)를 센터에 제출

■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정 수요처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1. www.1365.go.kr 로그인후 원하는 일감을 찾아 자원봉사 신청 ⇒ 수요처에서 봉사자에게 연락 ⇒ 자원봉사활동
2. www.1365.go.kr 로그인후 ⇒ <http://nanum.gunsan.go.kr> 에서 자원봉사모집에서 원하는 일감찾기 ⇒ 유선으로 봉사활동 신청 ⇒ 자원봉사활동

《지정 수요처가 아닌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1. 자원봉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 제출
⇒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계획서 확인(수정 등) ⇒ 자원봉사활동
⇒ 활동후 자원봉사자가 활동결과보고서(사진포함)를 센터에 제출

자원봉사 일감 분류체계

대민분야 유형

분류	유형	내용
생활편의 지원	활동보조	장애인, 노인 등 이동이 힘든 분들의 외출, 나들이 활동, 심부름을 보조
	이동지원	장애인, 노인, 재가 환자 등의 이동을 위한 차량 봉사
	청결지원	청소, 빨래, 목욕, 이미용 봉사활동 등의 자원봉사
	급식지원	급식소 지원을 위한 조리, 배식, 설거지 등의 봉사 활동 등
	식사·반찬지원	도시락, 밑반찬, 음식 등의 조리 및 배송
주거환경	주거개선	취약계층 대상 집짓기, 집수리 자원봉사 활동 (전기, 보일러, 도배, 도색 등)
	마을공동체활동	소규모 마을 공동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활동 (꽃길 가꾸기, 마을 시설물 보수활동,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등)
교육	방과후 교육	학교수업 종료 후 특기, 예체능 교육 지도(보조) 활동
	학습지도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학습여건이 열악한 청소년 대상 학습지도 활동
	특수교육	장애인 등 특수교육 관련 지도활동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련 지도활동
	전문교육	안전운전, 재해 및 안전관련 교육 등 전문영역 관련 지도활동
상담	말벗·상담	장애인, 노인 대상 여가지원 말벗, 상담 봉사활동
	전문상담	법률, 세무, 가족문제, 성폭력 등 특수·전문 분야 면접, 전화, 인터넷 상담 활동
	멘토링	멘토링 사업 참가자 활동
보건의료	간호·간병	의료수발, 식사보조 및 호스피스 활동 등
	의료지원	의료봉사(양/방), 물리치료 및 민간치료 활동 지원
	헌혈	헌혈 활동
농어촌봉사	일손지원	농어촌 방문 봉사활동, 일손지원

■ 사회분야 유형

분 류	유 형	내 용
문화행사	행사보조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및 지역 행사 지원 활동
	공연활동	문화, 예술 등의 공연 봉사 활동
	캠페인	시민 의식개선, 계몽, 소비자 보호, 환경 등 사회분야 캠페인 활동
	관광안내	문화/관광 가이드 및 해설 활동, 문화예술 시설 안내 등
환경보호	환경정화	환경정화 활동, 불법 홍보물 제거 등
	환경감시	수변, 산림 등 자연환경 위해 감시
행정보조	사무지원	행정, 전산, 조사/연구 등 사무 행정 지원
	업무보조	작업보조, 정리 및 민원 안내 지원 등
안전·방법	지역방법	야간방법, 유해환경 추방 등 범죄 예방 활동
	교통안전	교통정리, 주정차 안내 등의 교통안전 활동
	어린이 안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등하교 안전 지도 등
	청소년 안전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및 정화활동 등
	취약계층 안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안전생활 모니터링
인권·공익	인권개선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아동, 여성 등의 인권 개선·평등을 위한 지원 활동
	공익보호	소비자 보호, 부패방지 모니터링 활동 등
재해·재난·응급	피해복구	재난·재해 지역 피해복구 지원 및 구호 활동
	응급구조	위급 상황 응급 구조 활동
국제협력·해외봉사	해외봉사	국외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국제행사·단체 지원	국제기구·단체, 국제 행사 지원
	통·번역	국제행사 및 행사 개최를 위한 통·번역 활동

자원봉사 수요처 현황

연번	구분	기관명	소재지	봉사요청사항	전화
1	평생교육기관	우리배움터 한글학교	금광동	성인문해교육 교사	461-6481
2	평생교육기관	시민교육센터	중앙로1가	수업지도(문예.검정고시.한글)	466-4617
3	평생교육기관	군산오성문화대학	대야면	급식도우미	011-657-2178
4	특수교육대상자관련기관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미원동	프로그램진행도우미 등	466-2543
5	청소년시설	군산청소년수련관	송풍동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참여지원	461-4166
6	청소년시설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조촌동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참여지원	451-7942
7	지역아동센터	우리 지역아동센터	문화동	학습지도, 프로그램보조교사, 예체능	464-7939
8	지역아동센터	신나는 지역아동센터	중앙로1가	학습지도, 예능지도, 간식도우미	443-3229
9	지역아동센터	늘빛 지역아동센터	해망동	학습지도, 급식도우미	442-6958
10	지역아동센터	옥서 지역아동센터	옥서면	급식도우미, 교사보조, 목욕 및 체육교사	471-0649
11	지역아동센터	아가페 지역아동센터	삼학동	학습지도, 프로그램지도, 식당도우미	461-0650
12	지역아동센터	꿈꾸는세상 지역아동센터	미룡동	학습지도(수학), 주방도우미, 안전보호해주실분	471-0834
13	지역아동센터	주성지역아동센터	미룡동	학습지도, 인성교육, 동요부르기, 이미용	471-0852
14	지역아동센터	세움터 지역아동센터	중앙로1가	활동지도, 예체능	446-4123
15	지역아동센터	대야 지역아동센터	대야면	학습지도	451-8028
16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아동복지센터	미룡동	학습지도, 프로그램지도(미술, 음악)	468-2227
17	지역아동센터	흥남 지역아동센터	서흥남동	저학년지도, 급식도우미, 체육, 독서지도	446-9555
18	지역아동센터	군산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신창동	학습지도, 예능, 한자, 독서지도	446-9544
19	지역아동센터	한우리 지역아동센터	소룡동	학습지도, 급식도우미, 예체능, 영어지도	465-1205
20	지역아동센터	발산 지역아동센터	개정면	초, 중학생 학습지도, 요가, 업무보조, 예능지도	451-0909
21	지역아동센터	백두산 지역아동센터	나운1동	학습지도, 급식봉사, 레크레이션지도	463-6273

연번	구분	기 관 명	소재지	봉사요청사항	전 화
22	지역아동센터	YWCA 지역아동센터	삼학동	학습지도, 프로그램지도	462-4492
23	지역아동센터	중미 지역아동센터	미원동	학습(영어,음악,미술)지도, 프로그램보조	442-4598
24	지역아동센터	경암 지역아동센터	경암동	학습지도(특수아동지도), 예능지도, 독서도우미	445-0170
25	지역아동센터	군산엘림 지역아동센터	조촌동	학습지도, 예체능지도, 논술, 독서지도	442-1002
26	지역아동센터	열린학교 지역아동센터	미원동	학습지도(수학,영어), 목욕	442-7634
27	지역아동센터	제일 지역아동센터	미원동	초등생 학습지도	465-7444
28	지역아동센터	꽃동산 지역아동센터	조촌동	초등생 학습지도	452-1324
29	지역아동센터	1318 happy zone 행복스케치	해망동	중고생 학습지도(청소년경험자), 방과후 교실	442-1318
30	지역아동센터	서수지역아동센터	서수면	초등생 학습지도	453-7691
31	지역아동센터	보은지역아동센터	임피면	초등생 학습지도, 목욕차량지원	453-9948
32	지역아동센터	구암지역아동센터	구암동	학습지도(영어,수학), 예체능지도(악기,운동)	442-0968
33	지역아동센터	옥구지역아동센터	옥구읍	학습지도, 특기적성	466-3888
34	지역아동센터	풍성한 지역아동센터	나운1동	학습지도, 체육지도	468-9153
35	지역아동센터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	경암동	영어학습, 특기적성, 예체능지도	442-0190
36	지역아동센터	한일 지역아동센터	나운1동	체육활동, 학습지도, 취미교육(색종이접기)	070-8250 -3666
37	지역아동센터	비전 지역아동센터	서흥남동	학습지도 및 체육활동	461-5917
38	지역아동센터	씨앗 지역아동센터	서수면	학습지도 및 특별교육 (교통, 성교육)	453-3474
39	지역아동센터	임마누엘 지역아동센터	나운1동	학습 및 생활지도	466-3116
40	지역아동센터	회현 지역아동센터	회현면	급식도우미	070-7750 -9400
41	지역아동센터	사랑의지팡이 지역아동센터	나운3동	상담, 독서지도, 한자학습	910-6064
42	지역아동센터	생명샘 지역아동센터	조촌동	초·중생 학습지도, 주방보조 및 청소	443-9008
43	지역아동센터	꿈터 지역아동센터	동흥남동	기초학습보조	464-4582
44	지역아동센터	유레카 지역아동센터	문화동	영어지도	446-1218
45	지역아동센터	금암 지역아동센터	서수면	학습보조	453-3063

연번	구분	기 관 명	소재지	봉사요청사항	전 화
46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수송동	학습지도, 특기활동지도	467-1695
47	지역아동센터	푸른초장 지역아동센터	소룡동	학습지도, 급식봉사	462-8599
48	지역아동센터	비전스쿨 지역아동센터	나포면	학습지도	453-9906
49	지역아동센터	나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구암동	교육·학습도우미, 환경·급식도우미	445-3458
50	지역아동센터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산북동	학습지도, 프로그램강사	070-4085 -2050
51	지역아동센터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소룡동	학습지도 등	070-8845 -7690
52	지역아동센터	개정 지역아동센터	개정동	학습지도 등	451-3738
53	지역아동센터	예품 지역아동센터	삼학동	학습지도	070-4307 -8721
54	지역아동센터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중앙로1가	프로그램진행 (종이접기, 폼아트등)	445-7963
55	주간보호시설	큰빛노인복지센터	문화동	프로그램강사(노래, 체조, 미술등) 어르신케어	468-1143
56	주간보호시설	군산노인복지센터	중앙로2가		445-7545
57	재활	전북시각장애인협회 군산지회	명산동	녹음봉사, 시각장애인보행교육, 주방보조	445-6361
58	재활	전북시체장애인협회 군산지회	소룡동	컴퓨터보조, 주방보조	467-9081
59	재활	구세군 군산목양원	회현면	주변정리, 이.미용, 레크레이션, 병원의료진, 목욕차량	466-6088
60	재활	사)전북농아인협회 군산지부	영화동	수화를배워서행사때통역, 수화교육파견, 프로그램진행	462-0221
61	재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군산지부	삼학동	청소, 수영도우미, 방과후교실선생님	468-6032
62	재활	규란복지재단 정신보건가족협회	금동	프로그램보조, 청소	445-6452
63	재활	신체장애인협회	사정동	식사도우미, 청소	453-5348
64	재활	군산시정신보건센터	대야면	컴퓨터교사, 수영도우미, 급식도우미, 음악미술교사	451-0363
65	재사용나눔	아름다운가게군산명산점	명산동	판매봉사, 수선봉사, 물품수거	445-1204
66	재사용나눔	아름다운가게군산나운점	나운동	옷정리등	468-1201
67	재가복지센터	대야노인복지센터	대야면	미용, 목욕	451-8023
68	재가복지센터	보은노인복지센터	임피면	이미용, 목욕, 도시락배달, 노력봉사	453-9998

연번	구분	기 관 명	소재지	봉사요청사항	전 화
69	재가복지센터	한울타리재가복지센터	대야면	가정방문	451-7757
70	재가복지센터	동부노인복지센터	나포면	이·미용	453-9903
71	재가복지센터	군산원광노인복지센터	중앙로2가	밀반찬서비스및배달	442-4226
72	재가복지센터	늘사랑재가노인 복지센터	나운동		468-0027
73	장애전담 보육시설	빈첸시오어린이집	옥산면	장애아동활동도우미, 행사·환경도우미	464-8215
74	장애인 생활시설	나눔의 집	옥구읍	목욕, 텃밭가꾸기, 환경정리, 운전봉사	464-9944
75	장애인 생활시설	나포길벗공동체	나포면	프로그램진행및보조 등	453-3993
76	장애인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대야면	작업, 주방, 청소, 문화, 여가, 수영교실, 훈련프로그램 도우미	452-0911
77	장애인	군산장애인복지회자립 생활지원센터	대야면	이·미용	451-5118 464-5018
78	장애인	희망나눔주간보호센터	나운2동	프로그램진행	468-6032
79	장애인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	금동	장애인활동보조	463-1180
80	자활센터	군산지역자활센터	장미동	초등생 학습지도	463-9731
81	자활센터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나운1동	공부방지도, 가사도우미(40~50대)	446-4125
82	요양원	군산행복한집	소룡동	청소, 목욕, 이·미용	462-7214
83	요양원	정다운요양원	개정동	청소, 목욕, 이미용	452-9747
84	요양원	보은의 집	서수면	미용, 목욕, 산책, 말벗, 청소, 외식	451-8778
85	요양원	베데스다 요양원	서수면	목욕봉사(넷째주토요일), 청소	453-9023
86	요양원	사랑의 집	회현면	목욕, 주변청소, 텃밭가꾸기	466-5911
87	요양원	나눔노인요양원	옥산면	청소, 목욕, 땀감준비	465-9915~6
88	요양원	만유의 집	서수면	목욕, 청소	453-6382
89	요양원	군산소망요양원	나포면	목욕, 이미용, 청소, 식사보조, 놀아드리기	452-9958
90	요양원	시온의 집	임피면	수발도움(정기적), 청소, 식당보조, 목욕, 이미용	453-2044
91	요양원	성모전문요양원	서수면	목욕, 원내청소, 식사도우미	453-7501
92	요양원	보현노인전문요양원 (은적사)	소룡동	목욕, 청소, 식사, 말벗도우미	463-3600

연번	구분	기 관 명	소재지	봉사요청사항	전 화
93	요양원	에덴의집	개정면	청소, 빨래, 노인생활보조, 프로그램	451-9496
94	요양원	지극히작은자의 집	대야면	목욕,이미용,청소,종이접기, 오락프로그램진행	451-1346
95	요양원	대광노인요양원	수송동	이미용, 목욕, 청소	461-6679
96	요양원	사랑마을	나포면	목욕,이미용,청소	453-9902
97	요양원	수성의료재단행복한 노인요양병원	옥구읍	이미용,목욕,레크레이션	464-7171
98	요양원	우리들너서흠	조촌동	레크레이션, 동화구연, 미술 및 음악치료	442-7907
99	요양원	로템요양원	소룡동	이·미용, 차량봉사, 이동목욕봉사	467-8046
100	요양원	봉정요양원	개정동	목욕봉사, 마사지, 프로그램 등	450-3902
101	요양원	효도의집	서수면	이·미용봉사	451-0881
102	요양원	행복의집	옥산면	이·미용,목욕,청소,의료	465-3330
103	요양병원	구암재단 군산한방요양 병원	나운동	식사,목욕봉사, 이미용	460-3464
104	요양병원	봉정요양병원	개정동	목욕, 프로그램 진행, 안내봉사,생활진행봉사	450-3947
105	요양병원	한마음요양병원	산복동	목욕, 간병, 이미용	461-3053
106	양로시설	성모양로원	서수면	프로그램진행,청소, 어르신말벗, 청소	453-8400
107	아동복지시설	SB7-시소와그네	선양동	아동교육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	445-5640~1
108	아동복지시설	평화의집	소룡동	아동보호사, 반찬지원	468-2283
109	아동복지시설	행복의뜰	삼학동	학습지도 및 특별활동지도	461-7344
110	아동복지시설	열린터어린이집	지곡동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 통합교육보조활동	465-8215
111	아동	일맥원	문화동	학습지도(예체능), 환경정리	462-2385
112	아동	모세스영아원	개정동	짜장면만들기 요리사봉사, 놀이, 청소	452-4075
113	아동	삼성애육원	신창동	청소, 학습지도	445-5947
114	아동	구세군군산후생원	신흥동	공부방 예능학습지도, 현장학습	445-9331
115	시민단체	군산YMCA	명산동	프로그램운영도우미	446-4122

연번	구분	기 관 명	소재지	봉사요청사항	전 화
116	부랑인	신애원	구암동	영농(버섯재배), 원내청소, 프로그램 보조 진행	445-1782
117	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산북동	푸드뱅크, 도시락배달, 학습지도, 독거노인방문, 청소	461-6555
118	복지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나운동	무료급식, 장애아동보조, 방과후교실	462-7261
119	복지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중앙로2가	무료급식, 프로그램진행보조, 전산보조	442-4227
120	복지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산북동	방과후미술지도, 통증치료실, 보조, 청소, 학습지도, 이미용	466-7981
121	병원	군산의료원	지곡동	사무보조, 민원봉사	472-5686
122	병원	동군산병원	조촌동	안내봉사, 이미용, 말벗	440-0679
123	병원	군산예수병원	장미동	목욕봉사, 식사보조	440-3123
124	민간기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전북서부지부	경장동		461-1102
125	민간기관	(사)청소년성장연구소	장미동		471-0696
126	문화시설	사)백토문화예술원	명산동	위문연주회 등	471-4628
127	문화시설	진포문화예술원	나운동		465-9909
128	모자	신광모자원	나운3동	목욕봉사, 야간공부방, 다도	462-7749
129	모자	신광모자자립원	나운3동	설비점검(전기, 보일러), 퇴사시이사도우미, 환경정리	461-2572
130	대안교육기관	발달장애대안학교 산돌학교	월명동	아동생활지도 도우미	446-4460
131	대안교육기관	군산가온누리대안학교	해망동	중고생학습지도, 캠프 등 다양한 행사보조	070-8738-1318
132	노인복지시설	군산서수노인복지회	서수면	노인대학참가자공공서비스, 아동센터교사및특별활동	453-3576
133	노인	사)군산사랑의지팡이	나운동	목욕, 병원동행, 식생활전달	462-6063
134	노인	우리집요양방문센터	회현면	이미용, 청소, 목욕, 차량봉사 등	070-7755-8242
135	기타	주택관리공단 나운4관리소	나운2동	목욕, 이미용봉사, 주변정리	465-8264
136	기타	고령자인재은행	중앙로2가	행정보조	446-7575
137	기타	군산시경로식당	대명동	식사도우미	442-5323
138	기타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송동	상담,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보조	443-5300
139	기타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군산지회	영화동	보조강사, 사무보조	443-3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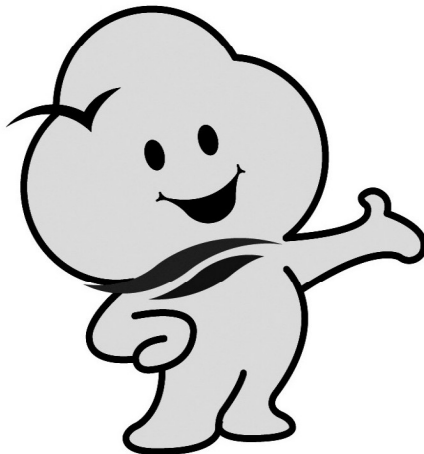
연번	구분	기 관 명	소재지	봉사요청사항	전 화
140	기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문화동	행사진행보조	471-5331
141	기타	(사)군산여성의전화	월명동	행사도우미	445-2286
142	기타	군산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산북동	한글지도	471-0078
143	기타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수송동	아이돌보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도우미	443-0053
144	기타	군산사전거타기생활화 운동본부	소룡동	교통안전교실도우미, 사전거 타기 교육 보조	463-0350
145	기타	군산성폭력상담소	월명동	인형극,전산보조,성교육	445-1366 442-1570
146	기타	사)한국해비타트군산 지회	개정면	건축	452-3106
147	기타	간치말정보화마을	성산면	농촌일손돕기, 경로봉사, IT봉 사	453-6186
148	기타	군산시여성자원봉사회	문화동	이·미용, 차량봉사, 이동목욕 봉사	450-6593
149	기타	군산시알코올상담센터	지곡동	가정방문동행	464-0061
150	기타	사)우리는	조촌동	학습지도 등	465-2354
151	기타	사)전국실업단체연대 군산지부	장미동	프로그램도우미 등	465-5822
152	기타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군산지부	문화동	사무보조,청소등	471-8988
153	공공기관	옥산면주민센터	옥산면	재가봉사 등	464-4301
154	공공기관	경암동주민센터	경암동	재가봉사 등	446-7316
155	공공기관	조촌동주민센터	조촌동	재가봉사 등	452-7315
156	공공기관	서수면주민센터	서수면	재가봉사 등	453-3301, 3011
157	공공기관	군산시드림스타트센터	수송동	각종프로그램및행사지원	468-5591
158	공공기관	나운2동주민센터	나운동	재가봉사 등	461-6630
159	공공기관	소룡동주민센터	소룡동	재가봉사 등	462-7321
160	공공기관	군산시립도서관	수송동	프로그램운영도우미	450-6575
161	공공기관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송풍동	성교육및상담	463-1230
162	공공기관	군산교육지원청Wee센터	조촌동	청소년상담(멘토)	450-2681

연번	구분	기 관 명	소재지	봉사요청사항	전 화
163	공공기관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삼학동	학습지도, 행정보조, 멘토지원 등	468-2870
164	공공기관	신평동주민센터	문화동	재가봉사 등	462-7305
165	공공기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동	체험안내및주변관리	450-4541
166	공공기관	흥남동주민센터	미원동	가사(세탁및반찬지원), 정서(말벗및문화체험)	446-7314
167	공공기관	군산시 작은도서관	수송동	서가정리및환경정비등	450-6276
168	공공기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군산고용센터	조촌동	행정업무	450-0653
169	공공기관	예술의전당관리과	나운동		462-9308
170	공공기관	군산명화학교	나운1동	환경정리, 1.1 학습지도, 산행보조	462-2159
171	공공기관	신흥초등학교	나운2동	학습지도, 예절지도(다도)	466-4501
172	공공기관	군산산북초등학교	산북동	학습지도, 예절지도(다도)	465-2331
173	공공기관	군산남초등학교	미원동	학생활동 지원 프로그램 보조	465-2549
174	공공기관	구암초등학교	경암동	부진아지도, 다도, 이·미용	445-2405
175	공공기관	월명초등학교	송풍동	보육교실, 학습지도	465-9248
176	공공기관	소룡초등학교	소룡동	방과후학습지도	468-9103
177	공공기관	군산제일중학교	조촌동	학습지도	730-3189
178	공공기관	군산산북중학교	산북동	놀토프로그램	468-0222
179	공공기관	군산문화초등학교	문화동	프로그램운영도우미	465-0906
180	공공기관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송풍동	교육봉사활동	460-1216
181	공공기관	군산월명중학교	소룡동	학습지도및멘토	462-3334
182	공공기관	군산중학교	송풍동	문화체험봉사등	465-5956
183	공공기관	군산중앙초등학교	중앙로2가	청결지도 및 문화체험 행사보조도우미	070-4272-0608
184	NGO	기아대책전북총남서부	신창동	목욕봉사, 반찬배달, 가게도우미	446-3065

2013 알기쉬운
사회복지서비스

길라잡이

2013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 및 시책
보건복지부 예산 주요사업 내역



2013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 및 시책

1. 기초생활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063-454-3091~9)

①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확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063-454-3091~3099)

- (재산의 소득환산률 완화)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자가,임차보증금)을 분리하여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월 1.04%로 적용
※ 일반재산은 월4.17%유지
- (부양의무자 기본공제)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조정(중위소득 가구 자산보유수준 참조)하여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으나 살고 있는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어 재산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 보호
* 대도시 133백만원→228백만원, 중소도시 108.5백만원→136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116백만원

② 보장성 강화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063-454-3143)

- (시설생계비 기준 조정) 소규모 시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에 소규모 시설기준(30인 미만 시설)을 신설하고 급여수준 인상
* 30인 미만 시설생계급여 : ('12년) 100인미만 시설생계비 149,015원 지원 → ('13년) 30인 미만 시설생계급여 기준 신설 163,147원 지원(9.5%)
* 그 외 시설은 최저생계비 인상률 3.4% 반영 인상
- (장제급여 인상) 물가인상을 및 실제 장제비용 일부반영(50 → 75만원)

③ 근로유인 및 탈수급 지원

(복지지원과 자활복지계 ☎063-454-3162)

- (근로소득공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유지를 통한 생활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일용소득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 (이행급여 확대) 이행급여 특례대상을 전체 상시취업자로 확대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수급시 지원 강화
* 의료급여, 교육급여 2년간 지원(생계, 주거, 해산장제, 자활급여는 미지급)

④ 긴급지원 확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계 ☎063-454-3082)

-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 적용)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적용하여 지원
- (지원금액 증액) 생계·주거·시설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의 지원금액을 '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3.4%)을 적용하여 일괄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063-454-3091~9)

■ 2012. 12.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등 근로능력판정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
-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

<근로능력판정제도 추진경과>

- 1961.
 - 생활보호법 제정
- 1999.9.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 2000.1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자활사업 실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근로능력평가 근거 마련)
 -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 2012. 06. 1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 의뢰 근거 마련)
- 2012. 12. 01.
 -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3차 개정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 의학적 평가 기준 개선 및 활동능력평가 세분화)
 - 근로능력평가사업 국민연금공단 위탁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063-454-3162)

▣ 우수한 자활생산품에 전북자활공동브랜드 “희망이온”을 인증, 상품의 이미지를 향상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액을 신장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전북도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억(도비 100%)
- 사업대상 : 20개소 (도내 자활기업)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기업 특산물 활성화 20개소(도내 93개소 공모)
- 사업내용 : 자활상품에 공동 브랜드 “희망이온” 부착, 자활생산품 품질 인증 기술 지원, 유통선진화 시스템 구축 등
- 추진체계 : 도 →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 자활기업(공동체)

<전북자활공동브랜드 “희망이온” 의미 >



- ① 도형의 의미 : 희망이 늘 함께하여 사랑의 새싹을 키우는 자활
- ② 네임
 - ‘희망’과오다의 ‘온’ 우리말 합성어
 - ‘희망이 늘 켜져 있다는’ ‘ON’의 우리말, 영문 합성어
- ③ 상징
 - 늘 켜져 있음을 상징하는 온오프 스위치의 아이콘의 변형
 - 온오프의 상징에 희망의 싹을 틔우는 새싹 이미지 형상화
 - 새싹이 자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트의 형상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107개→144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063-454-3144)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107개 → 144개)하여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내년부터는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44개로 확대
- 단, 2종 수급가구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가구 전체에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하는 현행방식 개편 검토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 ▶ 추진배경 :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불일치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간 보장성차이 발생 및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혼선유발
- ▶ 주요내용
 - 중증질환수급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추가, 해당 환자의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 면제
 - 107개 → 144개
 - 2종수급자 가구원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의료필요 정도와 무관하게 가구 전체에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하는 현행방식 개편 검토
- ▶ 적용시기 : 2013. 1. 1

(참고1) 2013년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다재내성결핵 광범위 약재내성 결핵	U88.0, U88.1	여린X증후군	Q99.2
지중해 빈혈	D56	뼈의 파궤병[변형성 골염]	M88
용혈-요독증후군	D59.3	덴디-위커 증후군	Q03.1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D64.4	무뇌회증	Q04.3
활동성 구루병	E55.0	분열뇌증	Q04.6
레쉬-니한 증후군	E79.1	단일심실	Q20.4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무설증	Q38.3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G40.4	방광외반	Q64.1
발작수면 및 허탈 발작	G47.4	골화석증	Q78.2
색소망막염, 스타르가르트병	H35.51, H35.58	내연골종증	Q78.4
아이젠멘저 복합증후군, 아이젠멘저 결손	I27.8, Q21.8	필레증후군	Q78.5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다발선천외골증	Q78.6
폐포단백질증	J84.0	포이즈-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소토스증후군	Q87.3
반흔성 유사천포창	L12.1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M05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제한 및 장기입원에서 외래전환시 추가지원

복지지원과 기초생활계 (☎063-454-3144)

- 수급자가 장기입원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삭감하며, 장기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1종수급자 외래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자가 장기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 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
- 장기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5만원추가 지원
- 외래 과다이용자 건강생활유지비 소액 환급으로 인한 행정낭비 개선을 위해 외래 이용시 건강생활유지비 우선차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 ▶ 추진배경 : 예방적 사례관리 미흡 등 수급자의 사전 예방적 관리가 어려워 합병증으로 인한 불필요 입원 늘어날 가능성 상존
- ▶ 주요내용
 - 1종수급자 장기 입원시 건강생활유지비 삭감
 - 장기입원 경우 그 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
 - 장기 입원자가 자발적 퇴원 후 외래로 전환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5만원 추가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소액 환급으로 행정낭비 개선 위해 외래이용시 건강생활유지비 우선차감
- ▶ 적용시기 : 2013. 1. 1

2. 출산 분야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여성아동복지과 다문화정책계 (☎063-454-3252)

▣ 2013년 자녀 출산장려금이 확대 지원됩니다.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 ▶ 추진배경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 2013. 1.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 지원내용 :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지원금액	1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3,000,000원

- 지원기간 : 연중
- ▶ 적용시기 : 2013. 1. 1

3. 보육 분야

2013년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 (☎063-454-3221~5)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 지원합니다.

- 시설이용 부모에게 **보육료** 지원 변경
- ('12년) 만 3~4세 : 소득하위 70%(4인가족 524만원소득) → ('13년) 전 계층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취학전 아동 중 시설 이용아동
 -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필수
- 지원내용
 - 시설이용보육료 (만0세 1인당 755천원/월, 만3세이상 1인당 220천원/월)

▶ 적용시기 : 2013. 1. 1일 부터

※ 연령별 출생년도 적용기준

- | | |
|---------------------------------|---------------------------------|
| - 만0세 : '12.1.1이후 출생 | - 만1세 : '11. 1. 1 ~ '11. 12. 31 |
| - 만2세 : '10. 1. 1 ~ '10. 12. 31 | - 만3세 : '09. 1. 1 ~ '09. 12. 31 |
| - 만4세 : '08. 1. 1 ~ '08. 12. 31 | - 만5세 : '07. 1. 1 ~ '07. 12. 31 |

※ 2013년 취학전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내용을 별도 고지예정

2013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 (☎063-454-3221~5)

▣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간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합니다.

-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 ('12년) 차상위(4인가족 180만원소득) → ('13년) 전계층 (※소득무관)

<취학전 가정양육수당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취학전 아동중 시설 미이용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급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필수

• 지원내용

- 가정양육수당 (만0세 1인당 200천원/월, 만1세 1인당 150천원/월
만2~5세 1인당 100천원/월)

▶ 적용시기 : 2013. 3. 1

※ 연령별 출생년도 적용기준

- 만0세 : '12.1.1이후 출생

- 만1세 : '11. 1. 1 ~ '11. 12. 31

- 만2세 : '10. 1. 1 ~ '10. 12. 31

- 만3세 : '09. 1. 1 ~ '09. 12. 31

- 만4세 : '08. 1. 1 ~ '08. 12. 31

- 만5세 : '07. 1. 1 ~ '07. 12. 31

4. 여성·아동 분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 (☎063-450-4342)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12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인상 합니다.

- 지원금액 : ('12년) 5만원 → ('13년) 7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7만원/월
- ▶ 적용시기 : 2013. 1.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 (☎063-450-4342)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자립정착금을 인상 합니다.

- 지원금액 : ('12년) 2백만원 → ('13년) 3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모자보호시설에 2년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3백만원
- ▶ 적용시기 : 2013. 1. 1.부터 적용

5. 노인 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복지지원과 경로복지계 (☎063-454-3182)

■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기간이 연장됩니다.

-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연장 : 7개월 → 9개월
- 노(老)-노(老)케어사업 연중일자리(시범사업) : 7개월 → 12개월
※ 전주, 군산, 김제 등 3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함. 월 급여는 동일하며 참여기간을 연중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 ▶ 추진배경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 ▶ 주요내용
 - 사업유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 참여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
 - 자격 :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 참여 가능
 - 선발방법 :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 근로조건 : 월 200천원, 1일 3~4시간, 주 3~4일 근무
- ▶ 적용시기 : 2013년

6 . 장애인 분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성년후견인 지원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063-454-3172)

■ 2013년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성년후견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부모의 전문심리상담지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서비스계 ☎063-454-3122)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성년후견인 지원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063-454-3172)

<발달장애인 지원>

-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부담 완화 및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전문적 심리상담 지원(6개월, 16만원/월, 바우처 제공)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성년후견인 지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정 심판절차 비용 : 500천원/1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서비스 비용 지원 : 100천원/월)
- ▶ 적용시기 : 2013년(성년후견인제 2013년 7월 시행예정)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지원 확대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063-454-3174)

■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 확대 : 1급 중증장애인 → 1, 2급 중증장애인
- 지원시간 확대 : 장애아동지원(최대 62시간 → 최대 103시간, 성인과 동일)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지원 확대>

- ▶ 추진배경 : 2급 중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 1급 중증장애인에서 2급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 장애아동 지원시간 확대
 - 장애아동 지원등급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성인과 동일)
 - (기존 : 42/62시간 → 변경 : 42/62/83/103시간)
- ▶ 적용시기 : 2013년 시행예정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063-454-3174)

■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2013.1.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 ▶ 추진배경 : 국제화시대 상호주의 및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외국 장애인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등에 장애인 등록 허용 추진
 - 외국인도 장애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등록제도 개선권고(인권위, '08.7.15)
 - 외국인 지위·차별 개선 등 외국인 장애인 차별시정 과제 추진(국무조정실, '07.12.5)
 - 2010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 확대(법무부)
- ▶ 주요내용 :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시행
 - ① 국내인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② 등록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
- ▶ 시행일 : 2013. 1. 27일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063-454-3174)

■ 2013년도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확대

- 2012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551천원(부부881천원)
→ 2013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580천원(부부 928천원)
-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금액이 근로소득액이 430천원('12년기준)에서 450천원으로 확대되어 공제되며

■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집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 추진배경 :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2년 551천원(부부 881천원)
→ '13년 580천원(부부 928천원)
-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 확대 : '12년 430천원→ '13년 450천원
- 부가급여액 인상 : '12년 부가급여액 대비 2만원 인상
 - 기초 : (18~64세) 6만원→8만원 / (65세 이상) 15만원→17만원
 - 차상위: 5만원→7만원
 - 차상위 초과 : (18~64세) 0만원→2만원 / (65세 이상) 2만원→4만원

▶ 시행일 : 2013. 1. 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063-454-317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됩니다.

- 2013년 4월 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 제공하여야 하며,
-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 제공
-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 제공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사항>

▶ 교육 관련 편의제공 사항(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 교육보조인력 배치
-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 고용 관련 편의제공 사항(법 제11조, 시행령 제5조)

-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및 보조인 배치

▶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사항(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

-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요청시 7일 이내에 제공)
- *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 기기, 장애인용 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시 행 일 : 2013. 4. 11일부터

7. 건강 분야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

- 중증질환자의 고가의 항암제 및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 75세이상 어르신 틀니 확대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간암 및 위암질환자의 치료제 본인부담금이 종전 100%~50% 부담률에서 13년도부터 본인부담율 5% 하향 조정
 - 암, 심뇌혈관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 확인 등에 필수적인 초음파 검사가 종전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확대
 -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했던 75세이상 어르신의 완전틀니 혜택이 13년7월부터 50%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

<2013년 건강보험료 보장성 확대 항목>

- ▶ 추진배경 :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 주요내용
 - 간암치료제(넥사바) 본인부담 경감(기존 50%→ 5%)
 -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경감(기존 100%→ 5%)
 -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적용)
 - 75세이상 어르신 틀니 (완전틀니 → 부분틀니까지 확대) ※50% 본인부담
- ▶ 적용시기
 - 암치료제 본인부담 경감 : 2013. 1월부터
 -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 2013. 10월부터
 - 75세이상 어르신 부분틀니 확대 지원 : 2013. 7월부터

저소득 노인세대 장기요양 본인일부 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

■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감경대상기준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13년) 건강보험료 52,100원/월
- 감경대상자 ('12년) 28천명 → ('13년) 65천명
- 감경액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의 1/2 감경(시설 10%, 재가 7.5%)
* 감경예시(3등급자 방문요양 1일4시간 월20일 이용): (현행) 119,200원 → (변경) 59,610원

<2013년도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확대>

- ▶ 추진배경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 ▶ 주요내용
 - 노인돌봄서비스 차상위 판정기준 수준으로 감경 적용기준 변경
 - 감경기준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13년) 건강보험료 52,100원/월
 - 감경대상자 ('12년) 28천명 → ('13년) 65천명
 - 감경액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의 1/2 감경(시설 10%, 재가 7.5%)
 - * 감경예시(3등급자 방문요양 1일4시간 월20일 이용): (현행) 119,200원 → (변경) 59,610원
- ▶ 시행일 : 2013. 1. 1일부터

2013년 복지부 예산 주요 사업 내역

1. 기초생활보장 : ('12) 79,028 → ('13) 85,531억원 (6,503억원, 8.2%)

◇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개선』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 확대

□ 기초생활급여 : ('12) 30,321 → ('13) 33,108억원(2,787억원, 9.2%)

○ 수급자 : 생계 155→143만명, 주거 146→134만명, 교육 28.8→25.2만명
해산·장제 3,914명/34,239구(전년동)

-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1만명)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2만명)

* 처분이 곤란한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과도한 소득환산율을 인하(4.17→1.04%)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중위소득가구 기준으로 완화(133→228백만원)

○ 최저생계비 인상률 3.9 → 3.4%(4인가구 기준 1,496→1,546천원/월)

○ 소득 인정액 264(전체 수급자 가중평균) → 229천원(실제 수급자 가중평균)

○ 소규모 생활시설 생계급여 지원 단가 현실화(150→159천원)

* 100인 미만 시설기준을 세분화하여 30인미만 시설 지원기준 신설

○ 이행급여 확대(1,690명→4,564명)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및 자활참여자 등에서 일반시장 참여자 등으로 확대

○ 일반시장 수급자 중 취약계층(노인·장애인 2.8만가구)에 대해 근로 소득공제 지급(294억원 : 생계 237억원, 주거 57억원)

○ 장제급여 단가 현실화(500천원→750천원)

□ 의료급여 : ('12) 39,812 → ('13) 42,478억원(2,666억원, 6.7%)

- 수급자 : 167(기초 155, 타법 12) → 156만명(기초143, 타법 13)
- 진료비 미지급금 : 2,000 → 2,695억원('11년 미지급금 일부 반영)
-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 442 → 1,007억원('13년 보장성 확대 1/4반영)

* '13년 보장성 확대 : 초음파검사, 소아선천성질환 등

□ 자활사업 : ('12) 4,430 → ('13) 4,723억원(293억원, 6.6%)

- 지원 대상 : 70 → 76천명(자활근로 66→66천명, 성과중심자활 4→10천명)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 ('12) 374 → ('12) 435억원(61억원, 16.3%)

- 지원대상 : 1.8→3.2만가구(누적)

* 연 평균 지원 1.6만 가구(통장해지·일시중지 가구 등 제외)

□ 자활장려금 : ('12) 374 → ('13) 389억원(15억원, 4.0%)

- 자활근로사업 310→319억원(32,930명(전년동)), 자활기업 55→60억원(4,070명(전년동)), 장애인 2→3억원(340명(전년동)), 학생 7→7억원(800명(전년동))

□ 차상위계층 지원 : ('12) 1,546 → ('13) 2,107억원(561억원, 36.2%)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증가분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 **취약계층지원 : '12 11,880 → '13 13,827억원 (1,948억원 16.4%)**

- ◇ 안정적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 소득보장 및 자립·자활 지원』 강화
- ◇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정한 출발기회』 제공

□ 장애인연금 : ('12) 2,946 → ('13) 3,440억원(494억원, 16.8%)

- 지원대상 : 32.7만명(소득하위 56%*, 전년 동)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12년 단독 551천원/부부 881.6천원) 이하인 자
- 지원액 : 기초급여 9.4→9.7만원(A값 상승), 부가급여 계층별 2만원 인상*
 - * 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 (18~64세) 6만원 / 5만원 / 0만원 → 8만원 / 7만원 / 2만원
(65세~) 15만원 / 5만원 / 2만원 → 17만원 / 7만원 / 4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 ('12) 3,099 → ('13) 3,829억원(730억원, 23.6%)

- 지원 대상 : 55→52천명
 - * 수급자 대상확대(장애등급 1급→2급)
- 활동지원급여 : 평균 692→738.8천원/월
 - * 활동보조인 임금 3% 인상, 아동급여 및 추가급여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국회 증액(615억원) 내역 ◆

- 최종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 최종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551명) → 1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844명)
-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 최종증 수급자 중 가족구성원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추가급여 확대
-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정책연구 등(30억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12) 567 → ('13) 677억원(110억원, 19.4%)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 481→578억원(이용율 85→95% 반영)

* 지원기준 개선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37천명) → 150%이하(42천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 40→47억원(2.5→3천명)

○ 장애아동 부모 지원 : 6→7억원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신규) : 15억원(발달장애인 부모(2천명) 심리상담비 지원)

□ 장애인 일자리 : ('12) 311 → ('13) 415억원(104억원, 33.4%)

○ 일자리 10.8→11.5천명

- 장애인 행정도우미 3,500명(전년 동), 877→1,112천원/월

- 장애인 복지일자리 7,000→7,700명, 259→273천원/월

- 경로당 안마사 파견 330명(전년 동), 1,000천원/월(전년 동)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신규) : ('13) 6억원

○ 성년후견인(1,000명) 양성 2억원(교육 20시간, 강사료 20만원)

○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 1억원(성인발달장애인 438명, 후견인 선임비 월 10만원)

○ 성년후견 심판 절차비용 지원 3억원(성인발달장애인 870명, 절차비용 50만원)

* 민법 개정('13.7 시행)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성년후견인제도로 대체

□ 방과후 돌봄서비스 : ('12) 1,109 → ('13) 1,246억원(137억원, 12.4%)

○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확대 3,500→3,742개(월 395→420만원)

- 주5일수업제 관련 토요일운영 지원 확대 3,500→3,742개소(월15→20만원)
- 거점 및 특수목적형 센터 500개소(월 90만원, 전년 동), 아동복지 교사 2,700명(전년 동, 월 106→109만원)

□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 ('12) 462 → ('13) 576억원(114억원, 24.7%)

- 드림스타트센터 확대 : 181 → 211개소(신규 30개소: 서울 6, 지방 24)
- 연 지원액(전년 동, 서울/지방): 기존 2/3억원, 신규 1/1.5억원(6개월)

□ 입양아동가족지원 : ('12) 143 → ('13) 173억원(30억원, 21.2%)

- 입양아동 양육수당 112→135억원(지원대상 9,520→11,617명)
 - * 수급률 증가 반영 : ('12) 55% → ('13) 60%
 - 지원연령 및 단가 : 만 13세, 월15만원(전년 동)
-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수당 12→15억원
 - * 경증 55명/55만원, 중증 196명/63만원 → 경증 157명/55만원, 중증 149명/63만원
- 입양비용 지원 18→23억원
 - * 입양철회비용(81명, 36백만원), 입양숙려기간 아동보호비용(1,000명, 433백만원) 신규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 ('12) 88 → ('13) 96억원(8억원, 9.3%)

- 지원 대상* : 4.7 → 5.2만명 (자연증가)
 - * 요보호아동(3.4만명) + 기초수급자 아동(12~13세(1.3만명) → 12~14세(1.8만명))
- 지원내용 :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에서 1:1 매칭 지원
 - * 월평균 매칭지원금 : 2.3만원 → 요보호아동 2.3만원, 기초수급아동 2.9만원

3. **공적연금 : ('12) 124,415 → ('13) 135,539억원 (11,125억원, 8.9%)**

◇ 노후 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체제 강화

□ 연금급여 : ('12) 118,419 → ('13) 128,303억원(증 9,884억원, 8.3%)

○ 수급자 : 346 → 349만명(증 3만명)

* 노령 272→280만명, 장애 8→8만명, 유족 49→53만명, 반환일시금 17→8만명

□ 국민연금기금 운영비 : ('12) 4,070 → ('13) 4,107억원(증 37억원, 0.9%)

□ 공단 회관신축 및 매입 : ('12) 101 → ('13) 1,079억원(978억원, 964.6%)

○ 서울북부지역(종로중구지사) 자체 회관 확보(건물매입, 15층규모)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12) 300 → ('13) 300(전년 동)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13년 6천명)

○ 지원내용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대부(5백만원 한도)

□ 출산크레딧* 급여 : ('12) 0.04 → ('13) 0.08억원(증 0.04억원, 100.0%)

○ 대상자 47 → 74명, 국고 30%

* '08.1.1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4. 보육 분야 : '12) 30,999 → '13) 41,778억원 (10,779억원, 34.8%)

- ◇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기여하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 보육지원형태 다양화를 통해 보육 현실을 반영하고 보육품질 및 전달·관리체계 개선

□ 영유아보육료 지원 : ('12) 23,913 → ('13) 25,982억원(2,069억원, 8.7%)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소 계층 (현행 유지)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소 계층 (누리과정 확대)
 - * ('12) 만 5세 전 계층, 만 3~4세 소득하위 70% → ('13) 만 3~5세 전 계층
- 지원단가 : 0세 39.4만원, 1세 34.1만원, 2세 28.6만원, 3~5세 22만원
 - * 민간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시설보조금(기본보육료) 현행 유지 :
만0세 36.1만원, 만1세 17.4만원, 만2세 11.5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 ('12) 1,026 → ('13) 8,810억원(7,784억원, 758.7%)

- 지원대상 : 0~2세 차상위 → 0~5세 전 계층
- 지원단가 : 0세 20만원 · 1세 15만원 · 2세 10만원
→ 0세 20만원 · 1세 15만원 · 2~5세 10만원

□ 보육돌봄서비스 : ('12) 4,232 → ('13) 4,445억원(213억원, 5.0%)

- 국공립법인 인건비 : 2,673→2,873억원(단가 3%인상, 42천명(전년 동))

- 시간연장형 : 644→493억원(13→10천명)
- 영아·장애아 전담 등 : 880→1,046억원(11→11.5천명)
- 대체교사 : 35→33억원(526→500명)

□ **어린이집 지원 : ('12) 782 → ('13) 1,504억원(722억원, 92.3%)**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462→1,058억원
 - *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 : 192 → 152천명 / 월 10 → 12만원
 - ※ 3~4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대상자 감소
 -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23천명 / 월 5 → 7.5만원
- 교재교구비 : 102→86억원(21→18천개소, 1백만원/연(전년 동))
- 차량운영비 : 49억원(전년 동, 4.1천개소, 월 20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 : 169→300억원
 - 지원대상 : 1,000→1,500개
 - 월 평균 지원액 : 302→342만원
 - * '16년까지 국공립 및 공공형을 확대하여 전체 어린이집 아동의 30%(3,500개소)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
-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 10억원(신규)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신규) : ('13) 6억원**

- 어린이집 위생 및 안전점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전문가, 부모 등으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230개 시군구)

5. 노인 분야 : ('12) 39,040 → ('13) 42,931억원 (3,891억원, 10.0%)

◇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취약계층 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소득보장 및 건강 유지』 지원 강화

□ 기초노령연금 지급 : ('12) 29,665 → ('13) 32,097억원(2,432억원, 8.2%)

- 지급 대상 : 386→405만명(65세 이상 노인 70% 수준)
 - * 전체 대상자 중 94.3% 신청률 적용(65세이상 노인 중 66.0% 수급)
- 지급액 : 월 9.4→9.7만원(A값 상승)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 ('12) 4,879 → ('13) 5,412억원(533억원, 10.9%)

- 인정자 수혜대상 확대 35.7→38.9만명(자연증가 9천명, 기준완화 23천명)
 - * 3등급 점수 완화 : (현행) 53~75점 → (개선) 51점~75점

□ 노인일자리 운영 : ('12) 1,831 → ('13) 2,353억원(522억원, 28.5%)

- 일자리 수 22→23만명(1만명 증), 참여기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 *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 (현행) 7개월 → (개선) 9개월, 저소득 독거노인 3천명 : 12개월

□ 노인단체지원 : ('12) 372 → ('13) 405억원(33억원, 8.9%)

-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6개월) 270→293억원
 - * 난방비(월 30만원) : 277억원 , 냉방비(월5만원) : 16억원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42억원(전년 동)

○ 경로당 지원 광역센터 운영 30→23억원

○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12→13억원

□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 ('12) 1,027 → ('13) 1,182억원(155억원, 15.1%)**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3.1만명 → 3.2만명

* 지원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외 A, B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독거노인) : 14.2 → 17.2만명

○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운영 : 지역센터 33→43개, 수혜자 5.2→6.9만명

○ 노인돌봄인력 등 교육 및 노인건강관리(신규) : 5억원

□ **치매관리체계 구축 : ('12) 47 → ('13) 127억원(80억원, 170%)**

○ 중앙치매센터를 통한 국가치매관리사업 13억원, 치매전문병동
구축 90억원(30개소), 노인치매병원 BTL정부지급금 17억원(5개소)

6. 사회복지일반 : ('12) 5,611 → ('13) 6,598억원 (986억원, 17.6%)

◇ 『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력 확충, 지역단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 행복 e음 고도화 등 추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 ('12) 1,770 → ('13) 1,884억원(114억원 6.4%)**
(舊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보조+산모신생아도우미+가사간병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45→1,411억원(지역사회서비스일자리 975개 확대)
 - 산모신생아도우미 282→291억원(지원단가 572→589천원, 3%인상)
 - 가사간병도우미 143→182억원(월 서비스 시간 18,24시간→24,27시간, 단가 3% 인상)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12) 290 → ('13) 586억원(296억원, 102.4%)**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 1,800→2,799명(신규 999명)
 - 희망복지지원단 지원체계 운영(신규) 3억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 ('12) 142 → ('13) 166억원(24억원 17.1%)**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확대(19.5→17억원) 및 고도화(68→55억원)
 - * 온라인신청시스템 서비스 대상 및 통합자원·상담사례 대상 확대, 복지광장 지식관리시스템·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연계자료 검증시스템 등 고도화, 소득재산 이력 등 연계대상 확대
 - 범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40→51억원)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ISP(신규 5억원)
 - * 타부처 연계 : ('12) 11개부처 198개 사업 → ('13) 16개부처 293개 사업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확충(8.7→31억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업관리(5.7→5.3억원) 및 보안강화(신규 1.3억원)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 : ('12) 403 → ('13) 438억원(35억원 8.7%)**
 - 정원(300명) 기준 인건비(161→171억원) 및 시설관리 등 운영비(94→96억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6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147→173억원)
 - * '12년 보육서비스(이관사업) 2,995백만원 포함시(173→203억원)

7. 보건의료 : ('12) 15,842 → ('13) 19,337억원 (3,495억원, 22.1%)

- ◇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 제고
- ◇ 신약·고급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보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 ('12) 375 → ('13) 620억원(245억원, 65.3%)**

- 총 10개소에 대해 연차적('08~'14)으로 총 2,300억원 투입 예정

* 충북대(80억원), 대구가톨릭대(110억원), 영남대(70억원), 부산대(100억원), 경상대(100억원), 강원대(45억원), 제주대(115억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12) 104 → ('13) 114억원(10억원, 9.6%)**

- 인건비 34→52억원(단가 일부 인상, 70명(전년 동)), 자산취득 38→7억원, 사업비 19→16억원, 관리운영비 13→17억원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국가부담분) 22억원(신규)

*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 70%, 보건의료기관 30% 분담

□ **분만취약지 지원 : ('12) 22 → ('13) 40억원(18억원, 81.8%)**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대 : 7→11개소(신규 4개소)

-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20→38억원(5→9개소, 계속 2.5억원/개소, 신규 6.3억원/개소)

- 산부인과 외래 운영 및 분만이송체계 구축 2억원(2개소, 전년 동)

□ 국가예방접종실시 : ('12) 732 → ('13) 1,052억원(320억원, 43.7%)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615→737억원(백신 1종(뇌수막염) 추가 : 143억원)

- 민간병의원 접종(영유아) 본인부담 5천원 유지

* '13년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 확대 10종→11종(신규 : 뇌수막염)
: BCG(결핵),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수두, Td(디프테리아, 파상풍), Tdap(만11세
이상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종

○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신규) 169억원

** '13~'15년간(423억원) 65세 이상 노인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16년부터는
매년 65세가 되는 노인만 접종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12) 277 → ('13) 352억원(75억원, 27.1%)

○ 정신보건센터 확대 219→273억원(광역형 7→9개소, 표준형 149→159개소)

- 광역형 센터 27→35억원(7→9개소)

- 표준형 센터 114→151억원(149→159개소)

▪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114→124억원, 정신건강검진 사후
관리15억원(신규), 자살예방사업 15억원(신규)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11→25억원(42→100개소)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67→68억원

-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상담 2억원(신규)

○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등 33억원(전년 동)

○ 자살예방 관련 홍보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 25억원(전년 동)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사업(신규) 10억원

□ 국가결핵예방 : ('12) 391 → ('13) 392억원(1억, 0.3%)

- 전염성 결핵환자 진료비 본인부담(50%)지원 41→69억원(4.1→6.9만명), 고위험군 One-Stop 검진 9 → 9억원
- 의료기관 접촉자조사사업 25→10억원, 결핵퇴치 표준 실험실 기반 구축 및 운영(신규) 12억원
- 결핵 민간 공공협력 사업 110→100억원, 결핵 유행 관리 11→36억원,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 25→8억원

□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 ('12) 895 → ('13) 934억원(39억원, 4.3%)

- 사업 운영비 885→911억원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 10→23억원

* 기존 17개 내역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범위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3가지 사업영역으로 재편성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17개)	13년 통합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①금연사업 ②절주사업 ③신체활동사업 ④영양사업 ⑤비만사업 ⑥구강사업 ⑦심뇌혈관 예방사업 ⑧한방건강증진사업 ⑨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⑩임산부·영아 특화사업 (모유수유, 철분제지원 등) ⑪노인 특화사업 (치매예방관리) ⑫장애인 특화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 ⑬취약계층 특화사업 (방문 건강관리)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	보건소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지원	
산모건강관리	가임기여성건강증진지원(모유수유클리닉운영)	
	임산부아동건강관리(철분제·엽산제지원)	
구강건강관리	구강보건실(센터) 설치·운영	
	어린이구강건강관리	
	노인·구강건강관리(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노인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관리(치매노인사례관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한 의 약 건 강 증 진 지자체 보조	한의학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한방진료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홍보사업 지원(보건소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 ('12) 401 → ('13) 514억원(113억원, 28.2%)**

- 권역외상센터설치 240→320억원(신규 3개소 → 신규 4개소)
- 부산대병원 외상전문센터 80→60억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36→108억원(5→10개소)
- 권역외상센터 후보기관 운영지원 44→25억원(12→7개소)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신규) ('13) 100억원(순증)**

- **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을 배치하여 병동 내 모든 환자에게 보호자의 상주가 필요 없는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 10개 병원의 간호인력 추가고용 인건비(85억원) 및 관리운영비 지원 등(15억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12) 366 → ('13) 1,939억원(1,573억원, 429.8%)**
(지경부 및 교과부 예산이 통합되어 반영)

- 실험동물센터 : 87→405억원(건축비 14→204억원 장비비 63→184억원 운영비 10→17억원)
- 임상신약생산센터 : 176→324억원(건축비 126→165억원 장비비 40→142억원 운영비 10→17억원)
- 신약개발지원센터(교과부) : 65→641억원(건축비 14→255억원 장비비 41→328억원 운영비 10→18억원)
- 첨단의료기기센터(지경부) : 38→529억원(건축비 12→172억원 장비비 16→339억원 운영비 10→18억원)
- 첨단의료산업기반 기술 구축(R&D, 신규) 40억원

□ **제약 전문인력 유치·양성사업 : ('12) 4 → ('13) 49억원(45억원, 1,125%)**

- 제약산업 실무인재 양성 4→8억원(4개과정)
- 고급 제약기술 경영인력 양성 (6)→15억원(2→3개소)
* '12년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활성화 지원'에서 이관
- 해외전문가 유치·활용(신규) 26억원

□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신규) ('13) 200억원(순증)

-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M&A, 유망기술 취득 등을 지원하는 공공펀드 조성(총 규모 1,000억원)

* (조성방안) 정부 200억원, 국내외 전문투자운용사 및 투자자 800억원

** (지원조건) 업체당 평균 50~100억 투자, 투자기업과 1:1매칭(100%)

8. 건강보험 : ('12) 60,113 → ('13) 65,131억원 (5,018억원, 8.3%)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도모 및 전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 ('12) 54,065 → ('13) 58,284억원(4,219억원, 7.8%)

○ 일반회계 : ('12) 43,434 → ('13) 48,086억원(4,652억원, 10.7%)

* '13년 예상보험료수입 365,723억원의 14% 및 '13년 과징금 예상수입 156억원의 50%

○ 건강증진기금 : ('12) 10,631 → ('13) 10,198억원(△433억원, △4.1%)

* '13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 15,690억원의 65%

□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 ('12) 6,044억원 → ('13) 7,039억원(994억원,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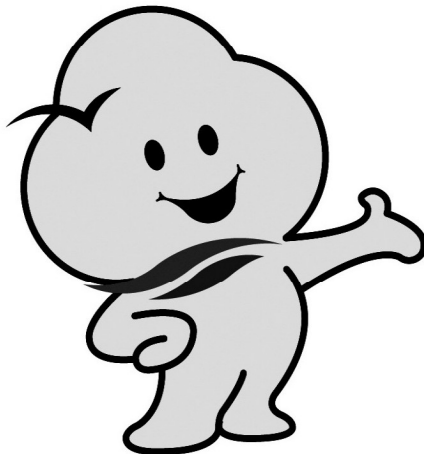
○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및 사립교직원 보험료의 20% 지원

* 보험료율 1.6%인상, 대상인원 및 보수월액 증가에 따라 공교부담금 지원 증가

2013 알기쉬운
사회복지서비스

기러잡미

사회복지관련 기관·시설
주소록



□ 기관 별 현황

1. 어린이집

1) 국 공립 · 법인어린이집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특성
1	개야도어린이집	개야도1길 47	465-6982	
2	개정어린이집	개정면 바르메길 4	451-5132	시간연장 21시까지 가능
3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칠성4길 103	465-1606	
4	꼬마동산어린이집	성산면 송호로 198	453-9199	
5	나운어린이집	나운동 45	462-7267	
6	늘푸른어린이집	칠성로 59	465-2171	
7	대아어린이집	대야면 대야관통로 138-8	451-6284	시간연장 22시간까지
8	문화어린이집	청소년회관로 47-4	463-6030	
9	미래어린이집	부골1길 7-6	451-8100	
10	미성어린이집	화흥길 63-5	466-7566	
11	방주어린이집	서흥길 32	462-7839	
12	백두산어린이집	신설로 46-6	463-6006	
13	벚엘어린이집	조촌동 837-3	452-1004	방과후, 시간연장 24시간까지
14	빈첸시오어린이집	옥산면 영의서원길 44-1	464-8215	장애전담
15	삼광어린이집	월명로 299	463-3337	
16	새싹어린이집	축동로 10	461-0409	
17	서해어린이집	나운3동 153-9	463-0191	
18	성모어린이집	나운동 767-3	467-0095	
19	소룡어린이집	소룡동 1537-3	467-2448	
20	순복음어린이집	나운1동 835-9	463-3124	
21	시온어린이집	임피면 읍내리 420	453-2104	방과후
22	열린터어린이집	신평안길 48	465-8215	장애아통합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어린이집특성
23	옥구어린이집	옥구읍 수레기길 23	464-8711	
24	옥봉어린이집	옥서면 옥봉초교길 12-3	471-2265	
25	우덕어린이집	대야면 산월리 408-1	451-2511	
26	우리어린이집	창성동 주공아파트 120 주민복지관 내	442-6388	방과후, 시간연장 22시까지
27	원광어린이집	문화2길 4-1	463-8811	방과후, 시간연장 21시30분까지
28	월명어린이집	월명1길 35	462-3044	
29	은적사 진실어린이집	부곡1길 17	462-4777	
30	이화어린이집	청소년회관로 47-8	464-6040	장애전담
31	주사랑어린이집	의료원로 99-8	465-1919	시간연장 21시30분까지
32	중앙어린이집	경암4길 24	446-0220	
33	즐거운어린이집	문화동 26	467-2678	영아전담
34	지성어린이집	회현면 광지산길 23	466-5955	
35	평화어린이집	서당길 59	443-0111	
36	행복한 새싹 어린이집	동안길 24-12	452-0162	
37	행복한진실어린이집	부곡안2길 12-5	465-9988	영아전담
38	호산나어린이집	서수면 가자길 23	453-9934	방과후
39	흥남어린이집	흥남2길 7	445-0092	
40	JC어린이집	삼화3길 22	462-7649	시간연장 21시30분까지
41	온누리어린이집	경포천로 34(미장동,미장휴먼시아파트)	451-0562	
42	YWCA어린이집	군산시 오룡로 9-1	466-3827	

2) 민간어린이집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특성
1	1.2.3 킨더가든어린이집	상신6길 12	463-5757	
2	고운나라어린이집	경암5길 77-13	442-6761	시간연장형
3	구암동산어린이집	영명길 22 (구암동)	442-3564	
4	군산키즈궁어린이집	진포3길 31 (동흥남동)	462-2213	
5	꼬마숲느티나무어린이집	미룡로41 관리동 (미룡동,미룡(2)주공아파트)	910-9499	
6	꼬마숲어린이집	수송동로 105 (수송동,수송2차오투그란데)	464-5780	
7	꼬마천사어린이집	칠성6길 83 (산북동)	468-4376	시간연장형
8	꿈꾸는어린이집	축동로 123-3	468-0300	
9	꿈초롱어린이집	미룡로 42 (미룡동)	471-9593	시간연장형
10	더채움어린이집	칠성안3길 42 칠성로41(미룡동)	463-0855	
11	도레미어린이집	삼학동 265-63	461-0935	
12	또래또몬테소리어린이집	하나운로 18 한울아파트단지내	465-2781	
13	리라어린이집	수송남로 31 제일오투그란데2단지	462-7117	시간연장형
14	리틀무지개어린이집	수송동로 79 수송현대아파트 관리동	463-5619	
15	리틀영재어린이집	칠성6길 99 (산북동)	465-6693	
16	메트로키즈어린이집	대명길 3 대명동 현대메트로타워	445-7953	
17	명지어린이집	삼학안2길 11	462-6287	
18	미룡새싹어린이집	신촌남길 24 (신관동)	471-0072	
19	배꽃어린이집	동아로 37 (산북동)	467-1718	
20	백합어린이집	진포1길 38-5	463-5900	
21	보덕어린이집	미원로 9 (오룡동)	462-3001	
22	빛누리어린이집	백도로 34-1	463-2389	
23	사과나무어린이집	하신재길 23-2	463-6643	
24	사임당어린이집	수송동로 100 수송 세영리첼아파트 관리동	462-3052	
25	산새소리어린이집	축동로 42 제일오투그란데 1단지 관리동	461-7174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어린이집특성
26	새봄어린이집	군산시 칠성4길 71 (산북동)	465-9611	시간연장형
27	색동어린이집	군산시 상나운1길 36 (나운동)	471-8433	
28	소담키즈어린이집	군산시 부골1길 45 (조촌동)	452-4636	
29	쉐르빌키즈어린이집	군산시 경포천로 66 삼성쉐르빌아파트 관리동	442-7955	
30	신나라어린이집	군산시 경기장로 137 군산시 경기장로 137(현대아파트)	452-0460	
31	썬데이어린이집	군산시 마지골길 31 (구암동)	446-0625	시간연장형
32	아리울어린이집	군산시 들땅리길 11-2 미장동	443-3698	
33	아이사랑어린이집	군산시 대명길 10-4 (대명동)	911-8810	
34	아이원어린이집	군산시 나운로 29 아이원 어린이집	466-6767	
35	아이캐슬어린이집	군산시 칠성3길 19 (미룡동)	465-3891	
36	아이캔어린이집	군산시 공단대로 54 송정씨미트 아파트 관리동	451-7976	
37	아이파크어린이집	군산시 수송동로 91 (수송동)	463-9711	
38	아해뜰어린이집	군산시 미룡로 12 관리동(미룡동, 미룡주공1단지아파트)	466-5004	
39	양운어린이집	군산시 서흥2길 74-3	462-8892	
40	에뜨렌어린이집	군산시 백토로 339-9	468-9593	
41	연두어린이집	군산시 칠성4길 41 (미룡동)	468-8541	
42	연세어린이집	군산시 하신안길 48 (나운동)	461-4422	
43	예든아이어린이집	군산시 신평길 38 (수송동)	463-3163	
44	예든어린이집	군산시 서흥안길 95-2	463-4160	
45	예뜰어린이집	군산시 서당길 19	445-9593	
46	오색어린이집	군산시 설림3길 17 설림안3길	467-5886	
47	옥스퍼드어린이집	군산시 미제4길 14-5	471-8900	
48	우리야기어린이집	군산시 경춘2길 9 (조촌동)	451-0283	
49	은하어린이집	군산시 소룡동 신도시씨티빌아파트 관리동	464-7979	
50	이삭몬테소리어린이집	군산시 문화안길 48 (문화동)	463-4906	영아전담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특성
51	일곱빛깔무지개어린이집	진포2길 10 (수송동)	465-6970	
52	작은새봄어린이집	칠성4길 73 (산북동)	465-6500	시간연장형
53	작은초록빛어린이집	나운안1길 24 현대4차A관리동 (나운동)	465-9653	
54	제이파크어린이집	해망로 606 (소룡동, 소룡제일아파트) 제이파크 관리동	468-9309	
55	제일어린이집	양안3길 23 (조촌동)	452-6451	시간연장형
56	중앙몬테소리어린이집	번영로 328 (사정동)	452-9192	
57	주니어세상어린이집	칠성안2길 75	471-4811	
58	지혜의뜰어린이집	황룡로 95 (미룡동 106-1)	443-7004	
59	창아어린이집	계산2길 87-12	465-9465	
60	칼라어린이집	나운3길 9 (나운동)	463-7667	
61	큰사랑어린이집	동리1길 53-1	465-1472	
62	키즈맘어린이집	수송동 한라비발디2단지 주민복지관	468-6700	
63	키즈킨더가든어린이집	상신6길 12 (나운동)	465-4101	
64	평안어린이집	축동안2길 48 (수송동)	471-1004	
65	푸르니어린이집	하신안길 63 (나운동)	468-8893	시간연장형
66	푸른하늘어린이집	축동3길 23 (수송동)	471-7108	
67	하나어린이집	상신5길 19-6	471-1106	
68	하늘빛어린이집	지곡동 은파코아루아파트 104동내	464-6284	
69	하버드어린이집	설림5길 76-18	461-3278	
70	한국어린이집	상신7길 14 (나운동)	465-6941	
71	한성필하우스어린이집	요죽길 76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 관리동	467-2749	
72	해가빛어린이집	진포안4길 17 (수송동)	911-4337	
73	해맑은어린이집	조촌1길 6 (경장동)	452-0121	시간연장형
74	해와달어린이집	나운4길 5 (나운동)	463-1400	시간연장형
75	해찬솔어린이집	서흥안2길 34 (문화동)	467-1220	
76	햇님어린이집	풍문안2길 33 (미원동)	445-0065	
77	행복이가득한수송어린이집	동메2길 37 (수송동)	465-9806	
78	효성몬테소리어린이집	의료원로 30 (지곡동)	465-6187	

3) 가정어린이집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특성
1	금빛아이어린이집	경포천로 66 104동 105호 (수송공원 삼성쉐르빌)	461-7000	
2	까꿍어린이집	설림안3길 32 1동107호(소룡동, 진흥아파트)	462-5295	
3	까르르어린이집	미룡로 41 203동 103호 (미룡동, 미룡주공2차아파트)	468-1565	
4	꼬꼬마어린이집	설림2길 33-1 102동 102호 (소룡동, 금강골드빌)	467-4795	
5	꼬꼬어린이집	하나운로 18 105동 104호 (나운동, 한울)	466-2129	
6	꼬마대통령어린이집	용둔길 12 101동 102호 (미룡동, 금광베네스타)	471-2119	
7	꼬마별어린이집	수송로 49 102동 104호 (나운동, 금호타운1차)	465-8916	
8	꼬마숲예꿈어린이집	용둔길 6 102동 102호 (미룡동, 금광베네스타)	467-9327	
9	꼬망어린이집	하나운로 44 202동 105호 (나운동, 롯데3차아파트)	468-9387	
10	꾸러기어린이집	의료원로 136 103동 105호 (나운동, 대우)	910-7858	
11	꿈나래어린이집	백도로 216 101동 103호 (나운동, 동신아파트)	468-6557	
12	꿈동산어린이집	계산로 78 103동 103호 (지곡동, 도현해나지오)	468-2181	
13	꿈별어린이집	수송로 71 201동 102호 (나운동, 금호타운2차)	464-7972	시간연장형
14	꿈사랑어린이집	축동로 6 104동 101호 (수송동, 지곡동신아파트)	465-5766	
15	꿈을주는몬테소리어린이집	의료원로 180 102동 102호 (나운동, 나운서호1차아파트)	468-6785	
16	나무와아이들어린이집	대명길 3 102동 202호 (대명동, 현대메트로타워)	446-3807	
17	나은어린이집	삼거리길 8 (옥서면)	462-7976	
18	다솜사랑어린이집	해망로 447 102동 107호 (소룡동, 성원상떼빌)	911-6266	
19	동화나라어린이집	하나운로 44 208동 103호 (나운동, 롯데3차아파트)	468-5564	
20	로뎀나무어린이집	용둔길 6 103동 101호 (미룡동, 금광베네스타)	070-8271-65 65	
21	리첼어린이집	수송동로 100 112동 102호 (수송동, 세영리첼)	462-9002	
22	맘스맘어린이집	신장원길 16-2	070-4248-06 06	
23	모하어린이집	백도로 128 303동 105호 (나운동, 현대3차아파트)	911-4750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어린이집특성
24	미래창조어린이집	설림2길 33 금강골드빌103동101호	468-8857	
25	미소어린이집	신지길 37 (지곡동)	461-4567	
26	별똥별어린이집	동흥남길 9 103동 104호	446-0179	
27	보듬아어린이집	궁밀길 55-10 103동 101호 (구암동, 구암휴먼시아)	911-5050	
28	보람어린이집	수송남로 31 510동 102호 (수송동, 제일오투그란데2단지아파트)	910-9669	시간연장형
29	비테에어린이집	미룡로 42 310동 104호 (미룡동, 미룡주공3차아파트)	471-9694	
30	뽀로로어린이집	칠성4길 20 201동 120호 (미룡동 미룡대명1차아파트)	471-0628	
31	뽀뽀뽀어린이집	수송로 49 103동 102호 (나운동, 금호타운1차)	461-0728	
32	사랑가득어린이집	하나운로 28 205동 108호(나운동, 세경)	466-6604	
33	사랑둥지어린이집	백도로 117 504동 108호 (나운동, 주공5단지아파트)	467-2556	시간연장형
34	사랑어린이집	문화로 208-8 102동 103호 (미장동, 현대파인빌1차아파트)	446-2879	
35	선한빛어린이집	미룡로 41 201동 101호 (미룡동, 미룡주공2차아파트)	910-5000	
36	세경코끼리어린이집	하나운로 28 203동 111호 (나운동, 세경)	468-9440	
37	세솔재능어린이집	풍문2길 35 102동 108호 (장재동, 현대세솔)	443-0368	
38	솔지어린이집	상지곡1길 43-4	471-1278	
39	수피아어린이집	백도로 117 512동 101호 (나운동, 주공5단지아파트)	911-4248	
40	숲속가베어린이집	미장안길 55 203동 107호 (미장동, 현대파인빌2차아파트)	442-0140	
41	신나는어린이집	군산시 축동로 42 304동 104호(군산수송동 제일오투그란데1단지)	468-7117	
42	아기별가베어린이집	나운로 77 103동 101호(나운동, 삼성)	465-4256	시간연장형
43	아기코끼리어린이집	수송동로 34 102동 104호 (수송동, 한라비발디1단지아파트)	465-3992	
44	아이꿈터어린이집	신평길 10 102동 107호(수송동, 동영)	911-8577	
45	아이맘어린이집	설림2길 33-1 101동 102호(금강골드빌아파트)	070-8148-1470	
46	아이숲어린이집	축동안길 37 103동 106호(수송동, 제일)	463-9630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어린이집특성
47	아이조아어린이집	동아로 160 105동 102호 (소룡동, 동아아파트)	464-8283	
48	아이팡팡어린이집	수송로 49 104동 104호 (나운동, 금호타운1차)	465-3390	
49	엄마사랑어린이집	수송동로 20 207동 105호 (수송동, 한라비발디2단지아파트)	467-6130	
50	엄마품어린이집	진포1길 10 102동 101호 (수송동, 현대아파트)	462-7278	
51	엔젤맘어린이집	설림길 61 나우하이츠아파트 106호 (소룡동)	467-7003	
52	예꼬어린이집	미룡로 42 307동 104호 (미룡동, 미룡주공3차아파트)	911-9182	
53	예쁜맘어린이집	수송안8길 7 (수송동)	445-3451	
54	예사랑몬테소리어린이집	나운로 29 207동 105호 (나운동, 현대2차아파트)	468-9779	
55	오렌지어린이집	의료원로 180 104동 101호 (나운동, 나운서호1차아파트)	471-6706	
56	오식도어린이집	분말길 29-11	471-6681	
57	온새미로어린이집	하나운로 45 나운동, 롯데아파트 105동 102호	910-2551	
58	올망졸망어린이집	조촌안5길 20 (조촌동)	451-7787	
59	옹달샘어린이집	나운로 133 102동 103호 (나운동, 청솔)	468-8212	
60	요술나라어린이집	소룡안3길 24 103동 106호 (산북동, 코오롱아파트)	465-4588	
61	요정의집어린이집	상지곡1길 20 (지곡동)	461-2275	
62	울타리어린이집	현충로 33 101-106 (나운동, 현대아파트)	465-0640	
63	유리바다어린이집	백도로 230 103동 102호(나운동, 우성)	463-7787	시간연장형
64	유리성어린이집	의료원로 137 101동 107호 (나운동, 영창)	466-2600	
65	은빛어린이집	부곡1길 39 3동 106호 (나운동, 유원아파트)	466-9340	
66	은파어린이집	은파순환길 149 (미룡동)	070-4405-1973	
67	이레몬테소리어린이집	군산시 백도로 242 301동 101호 (나운동, 롯데4차아파트)	467-6447	
68	자람터어린이집	구영6길 31, 101동103호 (월명동, 다원파크빌)	445-0113	
69	자연아이어린이집	하나운로 43 102동 106호 (나운동, 롯데1차아파트)	466-1440	
70	자연어린이집	진포2길 69-2	462-1235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어린이집특성
71	작은예뜰어린이집	동검다메길 34-4	446-7149	
72	잠언어린이집	평안길 46-6	465-8192	
73	재미난어린이집	백도로 117 주공5차관리사무소 1층 (나운동)	467-8333	
74	쟁재미어린이집	나운로 39 204동 107호 (현대아파트)	462-8321	
75	제일좋은어린이집	축동안길 37 102동 114호 (수송동, 제일)	468-7322	
76	조은몬테소리어린이집	해망로 447 103동 104호 (소룡동, 성원상떼빌)	468-6726	
77	조은어린이집	수송동로 100 101동 104호 (수송동, 세영리첼)	070-8682-21 92	
78	진솔한어린이집	백도로 117 505동 107호 (나운동, 나운주공5단지아파트)	471-5550	
79	천사어린이집	나운안1길 24 405동 104호 (나운동, 현대4차아파트)	465-6462	
80	챙거루어린이집	경포천로 66 107동 104호 (수송공원 삼성쉐르빌)	446-2209	시간연장형
81	키움어린이집	축동로 83 104동 101호 (나운동, 수송코아루아파트)	471-7894	
82	키즈별어린이집	서수송1길 14-3 나운동	468-9984	
83	키즈사랑어린이집	구영신창길 77 가동 106호 (금동, 동신)	443-5559	
84	토마토어린이집	의료원로 159 102동 108호 (나운동, 신일)	464-6757	
85	토토로어린이집	서당길 9 113동 108호(구암동, 현대)	445-1636	
86	튼튼어린이집	서당길 9 105동 103호(구암동, 현대)	445-0120	
87	파란나라어린이집	백도로 230 103동 107호 (나운동, 우성)	461-0858	시간연장형
88	포그니어린이집	동아로 160 107동 101호 (소룡동, 동아아파트)	911-8676	
89	포도나무어린이집	백도로 117 506동 107호 (나운동, 주공5단지아파트)	467-3005	
90	푸른나래어린이집	풍전3길 26 101동 103호 (소룡동, 그린서해맨션)	910-6885	
91	푸른솔어린이집	의료원로 180 102동 104호 (나운동, 나운서호1차아파트)	467-9367	시간연장형
92	피터팬어린이집	하나운로 28 206동 111호 (나운동, 세경)	471-7972	
93	하늘꿈어린이집	풍문2길 35 102동 101호 (장재동, 현대세솔)	445-7782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어린이집특성
94	하늘샘어린이집	의료원로 159 104동 106호 (나운동, 신일)	911-8044	
95	한마음어린이집	의료원로 147 105동 101호 (나운동, 영창)	461-3790	
96	해뜨는어린이집	미룡로 64 101동 106호 (미룡동, 은파리젠티빌파크)	468-3596	
97	해밀어린이집	서수송2길 23, 101-206 수송금호어울림아파트	911-5311	
98	해피동이어린이집	미룡로 42 301동102호 (미룡(3)주공아파트)	911-3880	
99	해피아이어린이집	해망로 606 203동 101호 (소룡동, 소룡제일아파트)	911-1400	
100	햇살가득어린이집	해망로 447, 성원상떼빌 아파트 관리동내	467-0704	
101	햇살나무어린이집	해망로 606 207동 110호 (소룡동, 소룡제일아파트)	910-2020	
102	행복나라어린이집	축동안길 37 102동 103호 (수송동제일아파트)	467-0364	
103	행복나무어린이집	수송동로 100 108동 101호 (수송동, 세영리첼)	468-4860	
104	행복어린이집	해망로 606 202동 103호 (소룡동 제이파크)	442-4098	
105	행복한아이들어린이집	수송동로 20 202동 102호 (수송동, 한라비발디2단지아파트)	468-0279	
106	현대어린이집	백도로 128 303동 101호 (나운동,현대아파트)	911-7998	
107	효승어린이집	양안로 120 102동 108호 (조촌동, 현대)	452-0369	

4) 공립유치원

연번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1	군산우리별	경암5길 77-20	442-6147	
2	군산바다	서흥안 2길	466-1860	
3	군산동초등	번영로 181	452-7818	
4	군산중앙초등	중앙로 91	442-4639	
5	군산초등	중앙로170	442-4519	
6	군산금광초등	대학로 100	465-9664	
7	군산서초등	중앙로 230	446-9229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8	군산남초등	삼학7길 4	466-2546	
9	군산풍문초등	풍마길 22	445-1938	
10	미룡초등	대학로 498-10	467-6963	
11	군산내흥초등	사옥 2길	443-5746	
12	소룡초등	설림길 55	465-7592	
13	군산수송초등	월명로 312	461-2951	
14	문창초등	공항로 520	465-6151	
15	문화초등	문화안길 51	465-1071	
16	해성초등	옥성남길 21	466-2775	
17	군산지곡초등	신지길 26	461-2254	
18	금암초등	서수면 황등서로 351	453-3226	
19	서수초등	서수면 항쟁로 199	453-9093	
20	임피초등	임피면 동현길 38	453-7543	
21	술산초등	임피면 술산길 54	453-7449	
22	나포초등	나포면 교동1길 23	453-1061	
23	창오초등	성산면 동군산로 393	453-7546	
24	성산초등	성산면 동군산로 39	453-6912	
25	개정초등	개정면 동정1길 5	452-7999	
26	발산초등	개정면 바르메길 43	451-6770	
27	대야초등	대야면 대야관통로 141-12	451-4824	
28	회현초등	회현면 오봉길 55	466-5513	
29	옥산초등	옥산면 여로2길 40	464-4018	
30	당북초등	옥산면 백석로 40	462-9033	
31	옥구초등	옥구읍 옥구로 50	464-9331	

연번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32	옥봉초등	옥서면 옥봉초교길 29	471-5718	
33	어청도초등	옥도면 어청도길 95-7	466-7022	
34	용문	미룡로 32-8	466-4184	
35	신시도	신시도2길 18-5	465-0270	
36	군산신흥초	백토로 129	467-2271	
37	군산아리울초	수송로 90	440-8884	
38	오식도초	오식도동 805-5	469-7605	
39	무녀도초	옥도면 무녀도2길 33	465-7011	

5) 사립유치원				
연번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1	반야	동산길 25	442-0954	
2	새나라	하신2길 19-5	461-7107	
3	개복	개복동 3	442-2404	
4	서해대학부속	서해대길 6	460-9187	
5	파란나무	상지곡안2길 30	468-0414	
6	해성	구명6길 55	445-8445	
7	성심	둔배미길 24	443-2465	
8	셋별	백룡4길 43	445-1004	
9	원광	조촌안1길 32	452-1692	
10	새싹	신촌남길 24	471-0071	
11	동아	동아로 160	465-6711	
12	해나라	한밭1길 22	461-5324	
13	즐거운	축동로 90	468-2020	
14	오렌지동화나라	상신5길 6-3	467-7373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15	호원대학부속	월명2길 35	462-6192	
16	군산유치원	신평길 16-13	462-3901	
17	초록빛유치원	나운5길 63-6	465-9655	
18	아이세상	하나운로 45	467-7977	
19	일곱빛깔무지개	진포2길 12	467-2377	
20	숲속	계산2길 10-7	462-0366	
21	푸른숲	신설1길 53	463-0075	
22	세움아이	용둔길 10	467-0033	
23	이른아침	부골 2길 13-2	731-1297	

2. 복지기관

1) 영유아복지					
① 영유아센터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시소와 그네 군산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아리랑로 36(삼학동)	445-5640 ~1	445-5600	www.seesawswing.org
2	드림스타트	문화로 47(수송동)	468-5591 ~2	450-6356	
2) 아동복지					
① 양육시설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구세군군산후생원	월명로 514	445-9331	445-9330	www.gs.or.kr
2	모세스영아원	쌍천로 82-13	452-4075	452-4076	cafe.daum.net/mose4075
3	삼성애육원	구영2길 15	445-5947	445-8857	happylog.naver.com /samsungwon
4	일맥원	군중길 23-6	462-2385	468-2385	cafe.daum.net/imagwon

② 공동생활가정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평안한집	하나운로48(나운동 롯데3차A 201/1004)	465-7431	471-7265	
2	평화의집	동아로 160(소룡동 동아A 105/409)	468-2283	468-2283	
3	행복의 뜰	축동로 188(삼학동 대우A 103/103)	461-7344	462-7345	
4	꽃동산	검다메안길 6-6 (조촌동)	452-1324	452-1323	
5	에벤에셀	서당길 21(구암동 현대A 111-202)	912-9700	912-9700	
6	신나는 집	풍문안1길 50 (미원동)	442-7634	442-7634	
7	해바라기	진포2길 53-5 A동 501호	070-8783-9 532	467-9532	
8	포도나무	옥구읍 가산1길 3-12	466-3888	466-3779	'13.12.31일까지 휴지
9	우림그룹홈	흥남1길 35	446-1218	445-1218	
10	살롬그룹홈	나운우회로 38	463-7001	468-9153	
11	참조은 집	공단대로 54 105/301 (조촌동 송정써미트)	453-9920		
③ 지역아동센터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1318HappyZone 행복스케치 지역아동센터	해망로407 (해망동)	442-1318	442-1318	
2	개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남로 1 (개정동)	451-3738	451-2738	
3	경암 지역아동센터	경암2길 10 (경암동)	445-0170	0303-0944- 1717	
4	구암 지역아동센터	서당길 56-6 (구암동)	442-0968	443-1494	
5	군산신나는 지역아동센터	중앙로 205 (중앙로1가)	443-3229	443-3229	
6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중정길 66-1 (신창동)	446-9544	445-9544	
7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하나운1길 30-8 (나운동)	070-7526-2 399	063-465 -2399	
8	푸른초장 지역아동센터	설림4길40-4 (소룡동)	462-8599		
9	꽃동산 지역아동센터	검다메안길 6-8 (조촌동)	452-1324	452-1323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 페이지
10	꿈꾸는세상 지역아동센터	칠성5길 36 (미룡동)	471-0834	463-0560	
11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풍전6길 17,301호 (소룡동)	070-8845-7 690	466-7690	
12	꿈터 지역아동센터	진포3길 55 (동흥남동)	464-4582	464-4581	
13	나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구암3.1로 219 (구암 서쪽A 102동 103호)	445-3458		
14	나운 지역아동센터	문화로 36 (나운동)	462-7277	466-7261	
15	늘빛 지역아동센터	해망로 392 (해망동) 제일신협 2층	442-6958	442-6958	
16	대야 지역아동센터	대야면 대야시장로 13-3	451-8028	451-9023	
17	발산 지역아동센터	개정면 신장산길 5	451-0909, 6691	451-0909	
18	백두산 지역아동센터	상신4길 15 (나운동)	463-6273	463-6273	
19	보은 지역아동센터	임피면 임피2길 73-3	453-9968	453-2546	
20	비전스쿨 지역아동센터	나포면 서왕길 6-3	453-9906	453-9916	
21	비전 지역아동센터	서흥길 32 (서흥남동)	461-5917	468-5917	
22	사랑의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칠성2길 46 (미룡동)	468-2227	468-2249	
23	사랑의지팡이 지역아동센터	하나운로5길	910-6064	462-6083	
24	생명샘 지역아동센터	경춘1길 12 (조춘동)	443-9008	443-9008	
25	서수 지역아동센터	서수면 청룡로 94-3	453-7691	453-7690	
26	세움터 지역아동센터	대학로 36-1 (중앙로1가)	446-4123	446-4134	
27	씨앗 지역아동센터	서수면 하금길 37-3	453-3474	453-0744	
28	아가페 지역아동센터	미원로 32, 3층 (삼학동 삼학대우 상가)	461-0650	462-0750	
29	아이소리 지역아동센터	경춘안2길26-1 (경암동)	442-0190	446-5247	
30	양문 지역아동센터	하신안길 57 (나운동)	442-3361	464-0220	
31	엘림 지역아동센터	백룡4길 43	442-1002	443-1007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32	열린학교 지역아동센터	풍문안1길 50 (미원동)	442-7634	442-7634	
33	예품 지역아동센터	월명로 429-1 (선양동)	070-4307-8 721	465-8721	
34	옥구 지역아동센터	옥구읍 옥구로 16	466-3888	466-3779	
35	옥서 지역아동센터	옥서면 옥봉리 옥봉 초교길12-9	471-0649	471-0649	
36	우리 지역아동센터	군중길 23-6 (문화동)	464-7939	464-7937	
37	유레카 지역아동센터	문화1길 87 (문화동)	446-1218	445-1218	
38	임마누엘 지역아동센터	하나운안1길 27-1 (나운동)	466-3116	466-3148	
39	제일 지역아동센터	월명로 373 (미원동)	465-7444	465-7444	
40	주성 지역아동센터	칠성5길 30 (미룡동)	471-0852	471-0852	
41	중미 지역아동센터	둔배미길6-2 (미원동)	442-4598	442-4596	
42	옥산지역아동센터	옥산면 옥산로 248	467-7942	467-7919	
43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동아로 143 (산북동)	070-4085-2 050	063-443 -2050	
44	풍성한 지역아동센터	나운우회로 38 (나운동)	468-9153	468-9153	
45	한아람 지역아동센터	신평안길64 (지곡동)	466-8215	466-8215	
46	한우리 지역아동센터	칠성5길 166 (소룡동)	465-1205	465-1205	
47	한일 지역아동센터	상나운1길14, (나운동, 한신맨션 108-109)	464-7258	462-3923	
48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서흥2길 79 (수송동)	467-1695	467-1696	
49	회현 지역아동센터	회현면 대위로 405	070-7750- 9400	464-5614	
50	흥남 지역아동센터	풍남길 23-1 (서흥남동)	446-9555	445-2881	
51	명산지역아동센터	명산길 8	462-4492	.	

④ 관련단체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월드비전전북지부 군산가정개발센터	수송동 804-1	443-3066	445-3068	
3) 청소년 복지					
① 청소년시설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동리2길 7(삼학동)	468-2870	468-2872	www.gunsan0924.or.kr
2	군산시청소년 수련관	청소년회관로 75 (송풍동)	461-4166	461-3888	youth.gunsan.go.kr
3	군산시청소년 문화의집	양안로 133 (조촌동)	451-7942	451-7943	www.ksyouth.net
4	군산시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회관로 75(송풍동)	463-1230	463-1266	cafe.daum.net /gunsan-say
5	Wee 센터	조촌동 757 군산교육지원청 별관 Wee센터	450-2681	451-0180	
6	가은누리대안학교	해망로 392 4층	070-8738 -1318	442-1318	
4) 노인 복지					
① 노인요양시설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행복한집	선림2길 34-10 (소룡동)	462-7214	462-7212	
2	보은의집	서수면 동군산로 1088-8	451-8778	451-8775	
3	보현노인전문요양원	설림길 30(소룡동)	463-3600	463-3650	
4	봉정요양원	쌍천로 82-3(개정동)	450-3915	450-3905	
5	성모전문요양원	서수면 외무장길 87-8	453-7501	453-7505	
6	시온의집	임피면 남상1길 33	453-2044	453-6044	
7	에덴의집	개정면 아산리 19	451-9496	451-9498	
8	정다운요양원	쌍천로 37 (개정동)	452-9747	452-9746	
9	군산동부노인요양원 사랑마을	나포면 서왕길 84-9	453-9902	453-9918	
10	군산소망요양원	나포면 미루매길 127	451-9950	452-9956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 페이지
11	나눔노인요양원	옥산면 대위로 117-22	465-9915	465-9913	
12	늘푸른요양원	옥구읍 상평향교길 76	462-0377	466-0335	
13	대광노인요양원	진포3길 24-19(수송동)	461-6679	466-6679	
14	로템요양원	소룡안길 28 (소룡동)	467-8046	467-8047	
15	미소의집	성산면 환동길 13	452-9182	452-9183	
16	베데스다요양원	서수면 신중용1길 23	453-9023	453-2974	
17	사랑으로	조촌안길 24-12 (조촌동)	452-7939	453-7939	
18	사랑의집	회현면 표산길 100	466-5911	468-5911	
19	사마리타군산요양원	개정면 총량1길 11	452-5552	452-3444	
20	우리들너서홈	경춘안1길 12 (조촌동)	442-7907	442-7906	
21	지극히작은자의집	대야면 보덕안정길 41	451-1346	451-1348	
22	한나의 집	상신3길 19-2(나운동)	462-8214	464-8213	
23	행복의집	옥산면 대려2길 16	465-3330	465-3220	
24	효도의 집	서수면 화등길 139-14	451-0884	453-4882	

② 재가노인복지시설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 페이지
1	군산원광노인복지센터	둔배미길 29(중앙로2가)	442-4226	442-4229	
2	보은노인복지센터	임피면 임피2길 73-3	453-9998	453-9994	
3	나운주간노인복지센터	문화로 36(나운동)	465-7260	465-7261	
4	사)한기장복지재단 새길노인복지센터	상신1길 11(나운동)	462-2376	462-2372	
5	동부노인복지센터	나포면 서왕길 84-9	453-9903	453-9904	
6	군산노인복지센터	둔배미길 29(중앙로2가)	445-7542	442-4229	
7	함께하는재가노인복지센터	서수면 화등길 139-14	453-0884	453-4882	
8	대야노인복지센터	대야면 석화로 63-8	451-8023	451-8029	
9	사마리타노인복지센터	개정면 총량1길 11	452-5552	452-3444	
10	씨앗노인복지센터	서수면 금암초교길 11-21	453-5377	453-0744	
11	군산동부노인요양원 사랑마을	나포면 서왕길 84-8	453-9902	453-9918	
12	아펜젤러 사랑의집	내초안길 12(내초동)	467-0397	467-0397	

③ 이용시설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둔배미길 29	442-4227	442-4229	www.esilver.or.kr
5) 여성복지					
① 여성복지시설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신광모자원	부곡로 19	462-7749	462-7741	www.mojawon.com
2	신광모자지립원	한밭1길 35	461-2572	461-2540	www.mojawon.com
3	은행의 쉼터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4	성가정의 집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② 직업훈련기관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군산시 백도로 119	468-0055 ~7	468-0058	www.kswork.or.kr
③ 상담기관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여성의전화	구영7길 8 (구월명동주민센터 2층)	445-2285 ~6	445-2286	
2	군산성폭력상담소	구영7길 8 (구월명동주민센터 1층)	442-1570	445-1377	gsung.hompee.com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대학로 36-1 신생화원 3층	442-1560 445-1530	442-1560	

6) 장애인복지

① 장애인복지관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칠성안3길 37	466-7981	466-7983	www.gs1004.or.kr

② 주간보호센터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칠성안3길 37	466-7981	466-7983	www.gs1004.or.kr
2	구세군목양원 주간보호시설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466-6088	466-6028	

③ 학교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명화학교	나운1동 상나운 1길 37	462-2159	461-2462	www.myounghwa.sc.kr
2	발달장애대안학교 산돌학교	월명동 2-1 YMCA 3층	446-4460	446-4461	

④ 지적장애거주시설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구세군군산목양원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466-6088	466-6028	
2	나포길벗공동체	나포면 철새로 1127-19	453-3993	453-4994	
3	나농의집	옥구읍 옥정길 101-7	464-9944	464-9944	cafe.daum.net/ksnanum
4	만유의집	서수면 하금길 50-11	453-6382	453-9983	

⑤ 그 룹 홈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해오름 1호	사정동 금호A 101/806	451-1460	452-0912	www.sunwelfare.com
2	해오름 2호	대야면 무지개A1002	452-0911	452-0912	www.sunwelfare.com

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	대야면 동중길 42-8	452-0911	452-0912	www.sunwelfare.com

⑦ 장애인연합회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 페이지
1	군산장애인연합회	군산창길 1 (금동)	463-1180	463-1340	
2	군산장애인부모회	미원로 73(삼학동)	471-6032	471-6033	
3	군산장애인복지회	대야면 내덕리 149	464-5018	451-5118	
4	전북지체장애인 협회 군산시지회	소룡2길 51	467-9081	467-6541	www.loveppd.com
5	전북신체장애인 연합회 군산지부	번영로 281 (공설운동장 내)	453-5348	453-5347	
6	전북시각장애인 연합회 군산지회	거석길 9 (명산동)	445-6361 ~2	445-6362	
7	대한정신보건 복지회	둔배미길 6-2 (금동)	445-5990	442-4596	
8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군산지부	구영2길 43(영화동)	462-0221	462-0224	
9	한국산재노동자 협회 전북지역 본부 군산지부	문화3길 20 (문화동)	471-8988	471-7091	cafe.daum.net/kapiwgs
10	한국교통장애인 연합회 전북지부 군산시지회	구영2길 43 (영화동)	465-1787	471-1787	
7) 지역 복지					
① 사회복지관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 페이지
1	군산나운종합 사회복지관	문화로 36 주공4단지 내	462-7260 ~1	465-7261	www.naun.or.kr
2	군산종합사회 복지관	칠성로 59	461-6555 ~6	465-1428	www.gssarang.or.kr
② 자원봉사기관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 페이지
1	군산시자원봉사 종합센터	문화동 899-22	451-1365	451-6365	nanum.gunsan.go.kr
2	여성자원봉사회	문화동 899-2	461-4456	461-4456	

③ 관련단체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YMCA	대학로 47	446-4122-3	446-4126	www.gsymca.or.kr
2	군산YMCA	오룡로 9-1	462-4491	465-7654	
3	가정을건강하게 하는시민의모임	팔마로 186	463-4623	443-5203	
4	군산시건강가정 지원센터	축동1길 15-2(수송동)	443-5300	443-5203	gunsanfc.familynet.or.kr
5	다운화가족 지원센터	축동1길 15-2(수송동)	443-0053	443-5203	
6	아름다운가게 명산점	대학로 67 예성빌딩 1층	445-1204	445-1207	www.beautifulstore.org
7	아름다운가게 나운점	축동로 94(나운동)	468-1201		
8	군산시사회복지 협의회	축동로 278(삼학동)	442-6663	442-6667	gswelfare.or.kr
9	군산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축동로 278(삼학동)	452-4334	467-4335	www.gswelfare.org
④ 군산시청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주민생활지원과	시청로 17 (조촌동 888, 군산시청)	450-4311	450-6497	www.gunsan.go.kr
2	복지지원과	시청로 17 (조촌동 888, 군산시청)	450-4314	450-4544	www.gunsan.go.kr
3	여성아동복지과	시청로 17 (조촌동 888, 군산시청)	450-4342	452-9477	www.gunsan.go.kr
⑤ 기타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교육지원청 (교육복지투자지원)	조촌로 20 (조촌동 757)	450-2628	452-5347	www.jbgse.go.kr
2	시민교육센터	중앙로 141	466-4617-8	466-4619	
8) 타 지역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동방전북아동 상담소	전주시 덕진구 인교6길 13-13	070-8769-3860	284-3341	www.jbeastern.or.kr
2	전북가정위탁 지원센터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 동로 483	276-2600 ~1	276-2602	www.jbfoster.or.kr
3	전북보육정보센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 양로 167	276-8080	276-0500	www.jbcare.or.kr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4	홀트 아동복지회 전북아동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중산2길 7	288-0880	222-0775	www.jbholt.or.kr
5	전북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익산시 인북로 377	852-1391	852-1398	iksan.goodneighbors.org
6	맑은집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익산시 용안면 현내1로 59	861-9950	861-9952	www.wonhome.or.kr
7	전북 여성긴급전화 1366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063-1366	224-1366	www.bar01366.or.kr
8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129		www.129.go.kr

3. 자활·취업기관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 지역자활센터	해망로204 한국빌딩 4층	463-9731	463-9258	
2	군산 한마음자활 센터	대학로 248 진성호내과 3층	446-4124	463-4195	
3	군산 고용센터	조촌로 62	450-0600	0505-130 -4089	www.work.go.kr/gunsan
4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동장산로 119(소룡동)	472-2500	472-2585	jb.korchamhrd.net

4. 도서관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시립도서관	축동로 79	461-1521	466-0367	lib.gunsan.go.kr
2	늘푸른도서관	하나운로 17	454-5980	454-5989	
3	설림도서관	설림길 25			2013. 5월 개관예정
4	임피채만식도서관	임피면 임피향교길 39	450-6582	453-3311	
5	구암작은도서관	구암 3.1로 245	445-1800	445-1800	
6	미성작은도서관	동아로 11	461-6178	461-6178	
7	월명작은도서관	구영7길 6	443-2642		
8	미룡작은도서관	미룡로 42	468-2241	468-2241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9	흥남작은도서관	풍문2길 135	445-2241		
10	나포작은도서관	나포면 교동2길 5	452-2242		
11	조촌작은도서관	양안로 133	462-0401		
12	나운작은도서관	대학로 330	464-8679		

5.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진료소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	군산시 보건소	수송동로 58	463-4000	463-1470	health.gunsan.go.kr
2	옥서 통합보건지소	옥서면 옥봉들 3길 10	471-1315	471-8130	
3	옥구읍 보건지소	옥구읍 옥구로 21	464-8777		
4	옥산면 보건지소	옥산면 여로2길 30	464-4181		
5	회현면 보건지소	회현면 광지산길 8	466-6211		
6	임피면 보건지소	임피면 남상2길 1-1	453-2190		
7	서수면 보건지소	서수면 탑천로 596-3	453-3101		
8	개정면 보건지소	개정면 바르메길 41	451-4130		
9	성산면 보건지소	성산면 송호로 220	453-0019		
10	나포면 보건지소	나포면 나포초교길 13	453-1103		
11	어청도 보건지소	옥도면 어청도길 98	466-0506		
12	선유도 보건지소	옥도면 선유북길 68	466-2348		
13	개야도 보건지소	개야도6길 22	466-7266		
14	군장산업단지지소	자유로 482(오식도동)	467-7979		
15	금성진료소	옥산면 배그매2길 31	466-6252		
16	금암진료소	서수면 청룡로 347	453-3963		
17	당북진료소	옥산면 외당원길 9-3	463-7631		
18	대광진료소	대야면 대광길 32-2	451-3249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
19	대차진료소	대야면 대차길 9	451-4149		
20	무녀도진료소	옥도면 무녀도동길 65	466-4161		
21	열대자진료소	신창안길 42(산북동)	466-2684		
22	비안도진료소	옥도면 비안도1길 6	461-2392		
23	상장곶진료소	서수면 상장곶길 16-3	453-7159		
24	성덕진료소	성산면 오성로 293	453-6581		
25	신당진료소	회현면 신당길 18	466-5963		
26	신시도진료소	옥도면 신시도1길 7-1	461-2746		
27	연도진료소	옥도면 연도2길 5-2	461-2274		
28	우포진료소	옥구읍 우포길 15	464-9305		
29	원나포진료소	나포면 원나포2길 11-1	453-1382		
30	월하산진료소	회현면 월하산2길 5	466-5879		
31	창오진료소	성산면 창오2길 6	453-2263		
32	술산진료소	임피면 술산길 16	453-3291		
33	하제진료소	옥서면 하제1길 72	471-2814		

6. 읍·면·동 주민센터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행 정 동
1	옥구읍 주민센터	옥구읍 옥구로 6	464-8544	450-4081	옥정리, 상평리, 이곡리, 수산리, 오곡리, 선제리, 어은리
2	옥산면 주민센터	옥산면 신성로 200	464-4301	450-4082	옥산리, 남내리, 쌍봉리, 당북리, 금성리
3	회현면 주민센터	1회현면 대정리 23	466-5151 ~3	450-4083	월연리, 금광리, 대정리, 세장리, 고사리, 학당리, 원우리, 증석리
4	임피면 주민센터	임피면 남상2길 1	453-2006 2301	450-4084	읍내리, 축산리, 미원리, 보석리, 술산리, 월하리, 영창리
5	서수면 주민센터	서수면 항쟁로 193	453-3301	450-4085	서수리, 축동리, 관원리, 마룡리, 화들리, 금암리
6	대야면 주민센터	대야면 석화로 7	451-3001	450-4086	산월리, 지경리, 북교리, 광교리, 접산리, 죽산리, 보덕리
7	개정면 주민센터	개정면 바르매길 42	451-5757	450-4087	아동리, 운회리, 아산리, 통사리, 발산리, 옥석리
8	성산면 주민센터	성산면 송호로 222	453-0301	450-4088	성덕리, 둔덕리, 고봉리, 도암리, 여방리, 대명리, 창오리, 산곡리
9	나포면 주민센터	나포면 나포초교길 9	453-1301	450-4089	나포리, 장상리, 옥곤리, 부곡리, 주곡리, 서포리
10	옥도면 주민센터	내항2길 125	442-0442	450-4090	개야도, 죽도, 연도, 어청도,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11	옥서면 주민센터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09	471-3377	471-2804	옥봉리, 선연리
12	해신동 주민센터	중앙로 224	446-7301	450-4092	해망동, 신흥동, 금동
13	월명동 주민센터	구영1길 138-2	446-7307 ~9	450-4093	월명동, 신창동, 중앙로1가동, 영화동, 장미동, 선양동, 둔율동, 창성동, 명산동, 송창동, 개북동
14	삼학동 주민센터	미원로 17	462-9306	450-4094	금광동, 오류동, 삼학동
15	신평동 주민센터	대학로 215	462-7305	450-4095	신평동, 송풍동, 문화동
16	중앙동 주민센터	신영 3길 11	446-7310	450-4098	중앙로2가동, 신영동, 영동, 축성동, 평화, 중동, 금암동
17	흥남동 주민센터	월명로 386	446-7314	450-4100	중앙로3가동, 대명동, 장재동, 미원동, 동흥남동, 서흥남동

연번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행 정 동
18	조촌동주민센터	조촌로 102	452-7315	450-4101	조촌동, 경장동
19	경암동주민센터	경암3길 56	446-7316	450-4102	경암동
20	구암동주민센터	세풍길 21	446-7317	450-4103	구암동, 내흥동
21	개정동주민센터	번영로 339-5	452-7318	450-4104	개정동, 사정동
22	수송동주민센터	동수송1길 7	462-7319	450-4105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23	나운1동주민센터	나운동 신설 3길 3	462-7320	450-4106	나운동
24	나운2동주민센터	나운3길 16	461-6630		나운동
25	나운3동주민센터	부곡1길 25	468-9508 ~10	450-4079	나운동, 미룡동, 신관동, 개사동
26	소룡동주민센터	설림 5길 83	462-7321	450-4108	소룡동, 오식도동, 비응도동
27	미성동주민센터	산북동 미성문화길 4-5	466-3001	450-4109	산북동, 개사동, 신관동, 내초동

